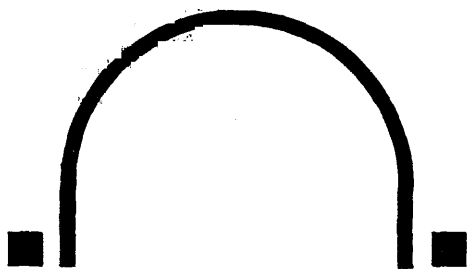


臺灣 · 中國間
交流關係法規集 (I) |



統 一 院

- 本 資料는 歷史的인 「南北基本合意書」採擇 以後 南北 交流協力の 本格化過程에서 提起될 수 있는 法的 問題點에 대한 對備策을 마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南北 交流·協力政策을 樹立하기위한 參考 資料로 提供코자 마련한 것입니다.
- 本 資料는 中華民國 行政院 大陸委員會가 1991年 6月 臺灣의 對中國 交流關聯法規를 總網羅하여 發行한 「大陸工作法規彙編」을 翻譯한 것으로 同 法規集은 總 8個編에 71個의 法令을 收錄하고 있습니다.
- 翻譯 및 編輯過程에서 不可避하게 많은 誤謬가 發見되리라 생각되나 利用者 여러분의 넓은 理解를 바라며 아무쪼록 有用한 資料로 널리 活用되었으면 합니다.

交 流 協 力 局

目 次

I. 基本法規

1. 中華民國憲法修正增補條文 11
2. 國家非常總動員時期國家安全法 16
3. 國家非常總動員時期國家安全法施行細則 20
4. 臺灣地區와大陸地區住民의關係에關한條例(草案) ... 37

II. 組織規定

1. 國家統一委員會設置要點 63
2. 行政院大陸委員會組織條例 65
3. 行政院大陸委員會諮問委員招聘及集會法 72
4. 行政院大陸委員會業務協調會報設置要點 74
5.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76
6. 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寄附及組織規定 85
7. 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組織規定 92

III. 出入國規定

1. 臺灣地區住民의大陸親知訪問規定 99
2. 臺灣住民의大陸親知訪問時親等制限緩和措置 102
3. 臺灣住民의大陸親知訪問回數及滯留期間緩和
措置 103
4. 大陸親知訪問에必要한具備書類와手續 104

5. 現段階公立學校教職員및從事者의大陸親知訪問 申請業務處理規定	108
6. 現段階公立學校및公立學術研究機關從事者(教育 部主管部分)의大陸親知訪問申請業務處理要項.....	110
7. 現段階中央研究院職員의大陸親知訪問申請業務 處理要領	114
8. 現段階大陸同胞의臺灣問病및葬禮參席申請業務 處理規定	117
9. 大陸同胞의臺灣定着年齡을75歲에서70歲로낮출 경우의審查基準	126
10. 大陸同胞의臺灣定着申請規定	127
11. 大陸滯留臺灣省籍의前職軍人및그眷屬의臺灣 歸還定着申請業務處理規定	130
12. 大陸滯留臺灣省籍의前職軍人·家族의臺灣歸還 定着時迎接및定着業務處理要點	136
13. 國軍退役혹은轉役한將校·士兵의死亡과遺留 財産및物品의處理法	141
14. 大陸滯留臺灣省籍同胞의臺灣親知訪問申請處理 規定	153
15. 現段階政府機關의技術者·勤勞者·環境美化員및 公營事業機關勤勞者의大陸地區親知訪問申請에 대한處理要點	158

16. 作戰·特殊任務遂行中逮捕·死亡前職軍人및 그 眷屬의臺灣移住定着申請業務處理規定·····	160
17. 臺灣地區各級民意代表의大陸地區親知訪問과一般 訪問申請要點·····	167
18. 臺灣地區各級民意代表의大陸地區親知訪問과一般 訪問申請作業規定·····	170
19. 現段階公務員의大陸親知의臺灣訪問申請處理作業 規定·····	172
20. 現段階公務員의大陸地區問病·葬禮參席申請作業 要點·····	176
21. 現段階公務員의問病·問喪參席目的의大陸訪問 申請處理規定·····	180
22. 臺灣訪問中인大陸同胞의原來組織離脫時이를許可 하는規定·····	182
23. 不法入國한大陸住民의送還處理要點·····	183
24. 臺灣地區住民이大陸地區에서送還될 경우의處理 要點·····	191

IV. 財務·經濟 規定

1. 民間外換의貸出및決濟에 관한法·····	199
2. 大陸地區物品管理法·····	203

3. 本人使用目的으로入國旅行客이搬入할수있는大陸土產品의制限量表	207
4. 外國人및華僑入國者가携帶한大陸物品의無料保管業務細則	210
5. 大陸撤收前國家行政機關의一切의債務에대한一律的인支拂保留를公布하는電文	212
6. 臺灣企業體職員의大陸展示會參加및視察에關聯한業務處理要點	215
7. 臺灣企業體職員의大陸展示會參加및視察에關聯한業務處理規定	218
8. 大陸地區로間接輸出하는貨物의管理法.....	221
9. 大陸地區로間接投資하거나技術合作을하는경우그事業者들에대한管理方法	223

V. 文教規定

1. 現段階國際會議나活動이大陸과關聯된境遇의業務處理要點	229
2. 現段階文教機構·民間團體人員의大陸地區派遣·訪問業務處理要點	232
3. 現段階文教機構·民間團體派遣人員의大陸地區訪問業務處理規定	234

4. 現段階宗教團體의派遣人員이大陸地區에서宗教 活動에從事할경우의業務에 관한規定·····	238
5. 現段階大陸人士의臺灣參觀및訪問申請業務處理 要點 ·····	242
6. 現段階大陸人士의臺灣參觀및訪問申請業務處理 規定 ·····	246
7. 現段階在海外大陸科學技術人士를臺灣에招聘, 科學技術研究發展作業에參與시키는業務處理 要點 ·····	254
8.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國外人材招聘歸國事務 處理要點 ·····	258
9.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特約講座招聘處理要點·····	263
10. 現段階大衆言論放送事業社의大陸地區探訪· 攝影· 프로그램製作具備報告業務處理規定·····	267
11. 現段階뉴스從事者의大陸探訪에 관한報告業務 實施要項 ·····	270
12. 現段階映畫事業社의大陸地區에서의攝影具備 報告業務實施要綱 ·····	273
13. 現段階텔레비전放送事業社및 프로그램供給事業 社의大陸地區에서의 프로그램製作具備報告業務 實施要項 ·····	276
14. 陷落地區歸還學生의學力審議및就學指導處理法·····	281

15. 陷落地區出版物·映畫필름·텔레비전放送프로
그림의本國自由地區搬入管理要點…………… 288
16. 陷落地區出版物審査業務熟知事項…………… 293
17. 大陸主要大衆言論放送社所屬의關係專門人士의
臺灣參觀訪問申請熟知事項 …………… 295

VI. 交通規定

1. 大陸地區로의郵便物郵送節次改善措置…………… 307
2. 大陸地區로보내는郵便物の處理要點…………… 309
3. 臺灣·大陸 住民間電報(間接通話)開放措置…………… 312
4. 臺灣·大陸住民間電報(間接通話)實施方法…………… 314
5. 外國商船·民間航空機의中華民國國際港口·空港
出入管制法 …………… 317

VII. 其他規定

1. 大陸民主化運動支援對策 …………… 323
2. 現段階民間團體의海外大陸學者·學生및民主化
人士支援實施條項 …………… 326
3. 行政院이民間團體에委託한大陸事務의處理要點… 327
4. 行政院大陸委員會와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가
調印한委託契約및附錄 …………… 329

VIII. 附 錄

1. 李登輝大總統就任式致辭「中華民族의新時代創立」
中大陸政策에 관한內容 349
2. 國家統一綱領 351

〈일러두기〉

1. 본 법규집은 현재 대륙관계업무(중국통일관계업무)에서 적용되는 법규를 편찬하여 만든 것으로 총 여덟 단원으로 나누어지는 바, 이는 基本法規, 組織規定, 出入國規定, 財務·經濟規定, 文教規定, 交通規定, 其他規定과 附錄 등이다.
2. 본 법규집에서 법규출처의 표기는 民國紀元 年月日, 公布機關의 名稱, 文書發行番號(發文字號)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3. 문서발행번호 다음에 단지 公文書式名稱만을 쓴 것, 예를 들면 「函」이라고만 쓴 것은 해당법규를 各目的事業主管機關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며 函이하에 「심사결정(核定)」 혹은 「公布」라고 쓴 것은 해당 법규의 公布 혹은 審査決定機關이 바로 주관기관이 된다는 뜻이다.
4. 條文의 수는 모든 「法」, 「條例」, 「施行細則」, 「細則」, 「辦法」, 「準則」, 「要點」 등에서 일률적으로 「全文은 모두 몇 條 條文(全文共○○條 條文)」이라고 표기하였다.
5. 본 법규집의 배열순서는 中央法規標準法 第2, 3條의 규정에 따랐으나, 찾아보기에 편리하도록 자주 찾아보는 법률은 간혹 앞순서에 배열하기도 하였다.
6. 본 법규집의 각종 법규는 모두 배열순서번호를 달지 않

았다.

7. 본 법규집은 몇차례 교정을 거쳤으나 아직도 많은 착오와 누락이 발견되리라 생각되는 바, 각계 諸賢들의 아낌없는 叱正과 指導鞭達을 바란다.

中華民國 80年 6月

行政院 大陸委員會 識

I. 基本法規

中華民國憲法修正增補條文

- 民國 80年(1991) 5月 1日 總統華總(1)義字
第2124號會公布
- 全文 10條 條文

국가통일에 대비하여 헌법 제27조제 1 항제 3호와 제174조제 1 항의 규정에 근거, 본 헌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증보한다.

제 1 조 : ①국민대회(國民大會) 대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헌법 제26조와 제135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自由地區¹⁾의 직할시와 縣市²⁾에서 각각 2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10만이 넘는 곳에서는 10만인당 1인씩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2. 자유지구의 平地山地族³⁾과 山地山地族⁴⁾중에서 각각 3인씩을 선출한다.
3.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중에서 20인을 선출한다.
4. 전국에서 구역을 가리지 않고 80인을 선출한다⁵⁾.

-
- 1) 대만 지역과 그 부속도서를 가리킴.
 - 2) 台灣의 각 현-우리나라의 도에 해당-에 속해있는 시
 - 3) 산지에 거주하지 않고 평지에 내려와서 사는 산지족
 - 4) 산지에 거주하는 산지족 즉, 대만 원주민
 - 5) 즉 전국구에 해당됨.

②전항(前項) 제 1 호의 직할시, 현시에서 선출한 인원과 제 3·4호의 각 정당 당선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인 곳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10인 이상인 곳에서는 각 10인당 여성 당선자 1인을 더 선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 ①立法院⁶⁾의 立法委員은 아래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헌법 제64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유지구 각 성(省)과 직할시에서 각각 2인씩을 선출한다. 단, 인구가 20만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10만인당 1인씩을 더 선출하고, 100만이 넘는 곳에서는 20만인당 1인씩을 더 선출한다.
2. 자유지구의 평지산지족과 산지산지족 중에서는 각각 3인씩을 선출한다.
3. 해외 거주 국민 중에서는 6인을 선출한다.
4. 전국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30인을 선출한다.

②전항 제 1 호의 각 성, 직할시에서 선출한 인원과 제 3·4 호의 각 정당 당선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인 곳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10인 이상인 곳에서는 각 10인당 여성 당선자 1인을 더 선출하도록 한다.

제 3 조 : ①監察院⁷⁾의 감찰위원은 성(省)·시(市) 의회에서

6) 국회에 해당됨.

7) 감사원에 해당됨.

아래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헌법 제91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유지구 대만성(臺灣省)에서 25인
2. 자유지구 각 직할시에서 10인
3. 해외 거주 국민 중에서 2인
4. 전국에서 구역을 가리지 않고 5인을 선출한다.

②전항 제 1 호 대만성과 제 2 호 각 직할시에서 선출한 인원과 제 4 호의 각 정당 당선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인 곳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10인 이상인 곳에서는 각 10인당 여성 당선자 1인을 더 선출하도록 한다.

③省의원이면서 검찰위원으로 선출되는 자는 2인이하로 하며, 시의원이면서 검찰위원으로 선출되는 자는 1인 이하로 한다.

제 4 조 : 국민대회 대표, 입법원 입법위원, 검찰원 검찰위원의 선거와 파면은 공무원선거파면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해외 거주 국민과 전국구의 대표수는 정당 비례 방식에 의해 정한다.

제 5 조 : ①국민대회 제 2 기 대표는 민국 80년(1991) 12월 31 일 이전에 선출하며 그 임기는 민국 81년(1992) 1월 1일부터 민국 85년(1996) 제 8대 총통 임기 만료 전, 헌법 제29 조에 규정된 국민대회 제 3기의 집회일까지로 하며 헌법 제

28조제 1 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가비상총동원시기 임시 조항의 증원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국민대회대표는 민국 82년(1993) 1월 31일 이전까지는 국민대회 제 2기 대표와 동등하게 그 직권을 행사한다.

③입법원 제 2기 입법위원 및 검찰원 제 2기 검찰위원은 민국 82년(1993) 1월 31일 이전에 선출하도록 하며, 모두 민국 82년(1993) 2월 1일부터 그 직권을 행사한다.

제 6 조 : 국민대회가 헌법 제27조제 1 항제 3 호의 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제 2기 국민대회대표를 선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총통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7 조 : 총통은 국가나 국민이 긴급 재난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번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명령을 발포하여 필요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헌법 제43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명령을 발포한 후 10일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입법원에서 동의하지 않을 시에 그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상실한다.

제 8 조 : 국가비상 총동원시기가 종료된 때에 그 시기에만 적용되었던 법률이 아직 수정 증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민국 81년(1992) 7월 31일까지 그 법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제 9 조 : ①총통은 국가 안전에 관계된 정부 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안전회의 혹은 총통 직속 국가안전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행정원에는 인사행정국(人事行政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 2항에서 언급한 기관의 조직은 모두 법률로써 정하며 입법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경우 그 본래의 조직 법규를 민국 82년(1993)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시킨다.

제10조 : 자유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계된 사항 그리고 기타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써 특별히 규정하도록 한다.

國家非常總動員時期國家安全法

- 民國76年(1987) 7月 1日 總統華總(1)義字第2360號會公布
- 民國76年(1987) 7月 14日 行政院臺76內字第15651號, 民國 76年(1987) 7月 15일부터 부터 施行
- 全文 10條 條文

제 1 조 : 국가비상총동원시기에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기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시킨다.

제 2 조 : ①국민의 집회와 결사에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산주의나 국토를 분열시키는 주장도 해서는 안된다.

②전항의 집회와 결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3 조 : ①국민의 출입국은 내무부(內政部) 경찰청(警政署) 출입국관리국(入出境管理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출입국을 할 수 없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출입국 신청을 하여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징역(有期徒刑)이상의 형을 받아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범죄 사실로 인해 수배중이거나 사법·군법기관에 의해 출국을 제한당하고 있는 자

2. 국가의 안전을 방해하였거나 사회의 안정을 훼손시켰다는 중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

3. 기타 법률에 의해 출국을 제한당하거나 금지당하고 있는 자

②전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의 출입국을 허가해 주지 않을 때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것에 불복할 경우의 구제방법에 관한 절차를 부기(附記)해주어야 한다. 내무부는 사회의 공정한 인사(人士)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제 1 항제 2 호의 불허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 4 조 : 필요한 경우 경찰기관은 아래에 열거한 사람, 물품,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1. 출입국 여객 및 그들이 휴대한 물품
2. 출입국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
3. 국경 내를 운행하는 선박, 항공기와 그 적재화물
4. 전 2 호에 열거한 운송수단의 선원, 비행기 승무원, 어민, 기타 직원들과 그들이 휴대한 물품

제 5 조 : ①해상방어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내무부가 지정한 해안과

산지 그리고 중요 군사시설 지역에 대하여 통제구역을 설치하고 그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 1 항의 통제구역에서는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건축을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 범위는 국방부가 내무부,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전항에서 건축의 제한이나 금지를 당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감면해주도록 한다.

제 6 조 : ①제 3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국하거나 입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혹은 과⁸⁾ 또는 병과(併科) 3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되는 검색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혹은 과 또는 병과 5천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7 조 : ①제 5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출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입국 통제구역을 무단히 출입하며, 통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고 떠나지 않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혹은 과 또는 병과 5천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8) 과 : 벌금형을 지칭함.

②제 5 조제 3 항의 건축 제한과 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제지를 하여도 따르지 않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혹은 과 또는 병과 5천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8 조 : ①현역군인이 아닌 자는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 현역군인의 범죄는 군법기관에 소추(追訴)하여 재판한다. 단, 육해공군의 형법과 그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죄를 범했을 경우와 형법 제61조에 열거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 계엄시기에 계엄지역 내에서 군사재판기관의 재판을 거친 비현역군인의 형사사건은 계엄 해제 후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군사재판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수사중인 사건을 해당 검찰관에게 이송하여 계속 조사하도록 하며 재판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게 한다.
2. 형사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법원에 상소하거나 항고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이나 비상상소(非常上訴)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심이나 비상상소를 청원할 수 있다.
3. 형사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검찰관에게 이송하여 집행을 지휘하도록 한다.

제 10 조 : 본 법의 시행세칙과 시행일자는 행정원에서 정한다.

國家非常總動員時期國家安全法施行細則

- 民國 76年(1987) 7月 3日 行政院臺76內字 第14636號會發布
- 民國 77年(1988) 11月 18日 行政院 臺77內字 第31221號會修正發布
- 全文 50條 條文

第 1 章 總 則

제 1 조 : 본 세칙은 국가비상총동원시기국가안전법(이하 본법 이라고 약칭) 제10조에 의거해 정해진 것이다.

제 2 조 : 본 법에서 칭하는 출입국이란 대만지구에의 출입국을 의미한다.

제 3 조 : 본 법 제 8 조제 2 항에서 현역군인이라고 칭한 것은 군사재판법 제 2 조와 제 3 조에 열거된 사람을 가리킨다.

第 2 章 出入國許可

제 4 조 : ①출입국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출입국 수속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고 출입국증을 발급받은 후 그 출입국증과 여권에 의거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 여권을 소지할 필

요가 없는 사람은 출입국증만 가지고도 출입국을 할 수 있다.

②외교여권, 공무(公務)여권을 가진 사람은 각각 그 여권만 가지고도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재출국이나 재입국을 하려는 자는 여권에 비자를 받은 후에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제 5 조 : 중화민국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출입국은 전조(前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화민국 입국비자가 찍힌 외국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제 6 조 : 임시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7일 이내에 출국하려는 국민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구비하여 출입국 수속을 하여야 한다. 즉 외교여권이나 공무여권, 또는 재입국비자가 첨부된 보통여권, 출입국증 등과 목적지 국가나 지역에 입국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비자, 그리고 비행기나 배의 탑승권 등이다.

제 7 조 : 입국을 신청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국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해외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기타 기관에 신청한다. 또 해외교포 사무위원회(僑務委員會)에 신청하면 출입국관리국에서 그것을 받아 심사한다.

제 8 조 : 입국을 신청하려는 국민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직업을 지닌 공민(公民) 혹은 출입국관리국

의 인가를 거친 해외 거주 국민 1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보증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해 주어야 한다.

제 9 조 :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마카오나 홍콩 등지에 거주하는 교포는 입국 후에 법에 따라 호적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 : ①국민이 출국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군인이나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직권에 따라 그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첩하여 심사하게 한다.
2. 前號 이외의 국민은 신청서를 직접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②전항 제 1 호에서 공무원이라 칭한 것은 정부기관이나 공립학교 또는 공영(公營)사업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제 11 조 : 본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 제 3 호에서 출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사법 · 군법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에서는 각각 그 사유를 출입국관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 본 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서 주민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공산당이나 기타 반란조직에 참가했거나 그 활동을 하는

자

2. 폭력, 테러조직에 가담했거나 그 활동을 하는 자
3. 내란죄, 외환죄(外患罪)에 연루된 중대 혐의가 있는 자
4. 대만지구 이외에서 중대한 범죄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범죄 습관이 있는 자
5. 함락지구⁹⁾에 가서 중공 반란조직을 도운 적이 있는 자
6. 함락지구를 떠난 후 자유지구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자 또는 이미 4년이 되었어도 아직 해당 지구 거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 또는 대만지구에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자. 다만, 규정에 따라 장례참석이나 문병 등의 이유로 대만에 오게 되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 본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인민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대만지구 외의 지역에서 비합법적인 조직에 참가했거나 그 활동을 하는 자
2. 내란죄, 외환죄에 연루된 중대 혐의가 있는 자
3. 중대한 경제 범죄나 혹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자
4. 무단히 함락지구로 다녀온 자

9) 대륙, 즉 중공을 지칭함.

제14조 : 내무부는 본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설치한 심사위원회에 7인내지 9인의 위원을 두며 그 조직은 내무부에서 정한다.

제15조 : 국민이 출국할 경우 출국 이전 4시간내지 48시간 이내에 항공회사나 선박회사를 통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출입국 허가증을 심사 발급한 후 본 법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출입국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 : ①예비군(後備軍人)이나 役齡男子¹⁰⁾ 그리고 징집대상 연령에 가까운 나이의 남자에 대한 출입국은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또한 관계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②전항에서 가리키는 징집대상 연령에 가까운 남자란 만 1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의 남자를 의미한다.

제18조 :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의 출국은 외국여권 비자법과 외국인 출입국 및 거류, 체류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징집대상 연령이 된 남자

第 3 章 出入國과 國境內의 安全檢査

第 1 節 出入國檢査

제19조 : ①본 법 제 4 조에서 정한 출입국 항공기와 그 수송 인원, 물품에 대한 검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항공기 : 기내를 검사하여야 한다. 출국하는 항공기는 여객이 모두 탑승한 후 화물 적재 목록과 점검한 인원 수가 부합하는지를 대조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난뒤 서명을 거친 후에 이륙을 허가한다.
2. 공항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사람과 그들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라야 출입이 가능하다.
3. 여객과 승무원 : 계기를 이용한 검색과 신체 수색을 실시한다. 부녀자의 신체에 대한 검색은 부녀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부녀자가 조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여객과 승무원의 휴대물품 : 스스로 열어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5. 여객이 탁송을 의뢰한 짐 : 검사를 거쳐야만 한다. 검사를 거친 화물이 적재된 후 탁송을 의뢰한 여객이 비행기에 타지 않았을 경우 그 짐을 다시 꺼내고 난 뒤에라야 이륙할 수 있다. 다만, 항공회사에서 안전을 보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항공으로 운송하는 수출품 : 항공기가 국경을 벗어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와 허가를 거치지 않은 통과여객은 국내인을 만나거나 물품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 : 본 법 제 4 조에서 정한 바 출입국 선박, 기타 운송 수단 및 그 탑승객과 적재된 물품에 대한 검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선박과 기타 운송 수단 : 운항 증명서와 선박 등록증을 조사하며 선박의 화물칸과 여객칸을 검사한다.

2. 여행객, 선원, 어민 그리고 그들의 짐과 휴대물품 : 전조(前條) 제 1 항제 2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검사한다.

3. 수입품을 실은 컨테이너 : 목적지에 도착되면 착륙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第 2 節 國境內의 船舶, 航空機 및

그 貨物에 對한 檢査

제21조 : 본 법 제 4 조에서 정한 바 국경내를 운항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타고있는 사람 및 적재된 물품에 대한 검사는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여행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신분증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2조 : 본 법 제4조에서 정한 바 국경내를 운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에 타고있는 사람 및 적재된 물품에 대한 검사는 본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여행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신분증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3조 : ①어항(漁港)과 해안을 드나드는 어선, 삼판선(sampan), 고무보트, 대나무배(뗏목) 그리고 해당기관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기타 수상(水上) 운송 수단에 대해서는 각각 신호를 대조해보고 관련 증빙서류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선체와 그 선체에 실린 물품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언급한 수상 운송 수단은 각각 적(籍)을 둔 항구나 지정된 장소에서 출입해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을 둔 항구나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출입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 대만지구의 국경내에 있는 강(河), 하천(溪), 호수(湖), 저수지(潭), 댐 등을 운행하는 선박, 삼판선, 고무보트, 대나무배, 유람선 및 기타 수상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第 4 章 統制區域 出入에 對한 許可

第 1 節 海岸統制區域

제25조 : 본 법 제 5 조제 1 항에서 정한 바 해안 통제구역은 해안 방위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거해서 국방부가 내무부와 협의하여 공고한다. 그 구역은 대만지구 해안의 최저 해수면(海水面)이 만조선까지 이르렀을 때로부터 계산하여 300m 이내의 지역과 근해의 모래밭까지로 한다.

제26조 : ①전조(前條)에서의 해안통제구역은 그 성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해안경상(經常)통제구역 : 해안 방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통제를 실시하는 지역
2. 해안특정(特定)통제구역 : 규정된 시간에 한해 주민들이 관광유람이나 낚시질 또는 기타 정당한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지역

② 전항의 통제구역에는 검문초소를 설치하며 해안방위부대가 검문과 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7조 : 해안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해당 군사기관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나 조사를 거쳐 확실히 통제구역 내를 출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한다.

제28조 : 해안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자 중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 규정된 개방 시간 내에 해안특정통제구역을 출입하는 자
2. 해안통제구역 내에 호적을 두고 있거나 법에 따라 사용

- 하는 토지, 양식장, 공장 등이 해안통제구역 내에 있는 자. 이들은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3. 해당 지역 어민이 해안통제구역 내의 해안을 출입하여 고기를 잡거나 양식을 하고 또 해산물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4. 공적인 사유로 인해 해안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주관기관의 증빙서류와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5. 사법, 군법기관 혹은 치안단위의 요원이 공적인 사유로 인해 해안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근무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직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입후보자와 그들의 선거운동원, 선전차량의 운전사는 공직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그들의 선거구가 있는 해안통제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7. 불가항력적이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안통제구역을 출입할 필요가 있는 자는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第 2 節 山地統制區域

제29조 : 본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바 산지통제구역은 산지의 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가 내무부와

협의해 대만지구 각 산지행정구역 내의 산지를 획정 공고한다.

제30조 : ①전조에서의 산지통제구역은 그 성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산지경상통제구역 : 산지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제를 실시하는 지역
2. 산지특정통제구역 : 인민들이 관광유람, 기타 정당한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 통제하는 지역

②전항의 통제구역에는 검문초소를 설치하며 지방 경찰기관에서 검문과 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1조 : ①산지경상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대만성 정부 경찰청(警務處)이나 해당 경찰국, 경찰서(警察分局)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나 조사를 거쳐 확실히 통제구역 내를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한다.

②산지특정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만성 정부 경찰청이나 해당 경찰국, 경찰서(警察分局), 지서(分駐所), 파출소 혹은 지정된 장소나 경찰국 업무를 대행하는 검문초소 등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 ①산지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중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 산지족(山地族) 신분을 지니고 있는 자는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2. 산지통제구역에 호적을 두고 있는 평지국민 혹은 법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나 공장이 산지통제구역 내에 있는 자는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그들이 호적을 두고 있거나 일을 하는 산지통제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3.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지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주관기관의 증빙서류와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4. 사법, 군법기관 혹은 치안기관의 요원이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지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근무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직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입후보자와 그들의 선거운동원, 선전차량의 운전사는 공직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그들의 선거구가 있는 산지 통제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6. 불가항력적이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지 통제구역을 출입할 필요가 있는 자는 신분증 검사를 거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第 3 節 重要 軍事施設 統制區域

제33조 : 본 법 제 5 조제 1 항에서 정한 바 중요 군사시설 통

제구역은 군사시설 안전의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가 내무부와 협의해 중요 군사시설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해서 공고한다.

제34조 : 전조에서의 중요 군사시설 통제구역은 그 성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

1. 군용비행장
2. 전시대비 비행기 활주로
3. 미사일기지
4. 영구성(永久性)을 띤 국방시설
5. 위험성이 있는 군사훈련장 또는 시험장
6.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군사공장, 창고와 기름저장탱크
7. 고정적 위치에 있는 군용의 중요 통신, 전자시설

제35조 : 전조의 통제구역 내에 있는 중요 군사시설 소재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군사기관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된 시간 이외에 전시 대비 비행기 활주로나 군사훈련장 또는 시험장을 출입하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第 5 章 統制區域內的 建築 禁止와 建築 制限

제36조 : 지형(地形)이나 지모(地貌)를 변경하여 작전의 효능이나 중요 군사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국방부는 내무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건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37조 : 해안 통제구역에서의 건축 금지란 모든 건축물의 건조(建造)를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 제한이란 본래 있는 건물의 증축이나 改修를 제한하거나 건물의 높이나 면적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8조 : 해안 통제구역에 간척지를 개발하거나 광물, 흙, 돌, 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그 구역 내의 나무들을 잘라내는 행위가 구역 내에 있는 군사훈련장이나 시험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또 본래의 작전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군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 산지통제구역의 건축에 대한 관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사적으로 확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건축 금지와 건축 제한을 실시한다.

제40조 : 산지통제구역 내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본래 있는 검문 초소의 검사나 통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혹은 본래의 작전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 해당 경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1조 : 중요 군사시설 통제구역에서의 건축 금지란 모든 건

물의 건조, 각종 야적물의 방치, 공중가설물(전선 등)의 가설 등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 제한이란 본래 있던 건물에 대한 증축이나 改修를 제한하거나 또는 건물이나 야적물, 공중가설물의 높이와 면적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2조 : 중요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전신(電信), 전력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요 군사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군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 : 직할시나 현(市)의 건축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건축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건축허가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우선 해당 군사, 경찰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본래 있던 건물을 본래의 높이와 면적대로 증축하거나 개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 6 章 軍事裁判機關이 司法機關에 移送한 案件의 處理

제44조 : 본 법 제9조제1호에서의 군사재판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형사 안건은 계엄이 해제되는 날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 중이거나 재의(再議)중인 안건은 해당 검찰관에게

이송한다.

2. 초심 혹은 항고 중인 안건중 아직 재판을 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원에 이송한다.
3. 재심을 청구하였거나 재심이 시작된 안건중 아직 재판을 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해당 법원으로 이송한다.
4. 비상재판을 청구한 안건은 대법원(最高法院) 검찰청(檢察廳) 검찰총장(檢察長)에게 이송하며 이미 비상재판을 청구했으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은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제45조 : ①계엄 해제 후 본 법 제9조제2호의 형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재심이나 비상상소를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계엄 해제 후 군사 검찰관이 본 법 제9조제2호의 형사확정 재판에 재심이나 비상상소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해당 검찰관이나 대법원, 검찰청 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 : ①본 법 제9조제3호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 중인 경우 계엄 해제일에 해당 검찰관에게 이송하여 집행을 지휘하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 중인 죄수(受刑人)를 이송할

때에는 형행(刑行) 누진처우에 관계된 서류도 함께 이송한다. 죄수를 이첩받은 감옥에서는 죄수를 원래의 급수(級數)에 따라 배치하며 감옥형행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 군사재판기관에서 본 법 제8조제2항 단서조항의 형사 안건을 재판할 경우, 계엄 해제일에 그 군사재판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형사재판이 이미 확정되었지만 재심이나 비상상소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 7 章 附 則

제48조 : 본 세칙에서 정한 사항들의 업무 규정과 양식은 중앙 주판기관에서 정한다.

제49조 : ①본 세칙에 의해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비용을 받아야 한다. 그 액수는 중앙 주판기관에서 정한다.

②전항에서 언급한 비용의 수납은 예산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50조 : ①본 세칙은 국가비상총동원시기국가안전법 시행일로부터 함께 시행된다.

②본 세칙의 수정 조문(條文)은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臺灣地區와大陸地區住民의 關係에關한 條例 (草案)

- 民國 79年(1990) 11月 1日 行政院 제2205次 院會를 通過하고 立法院에 보내어 審議中
- 全文 78條 條文

第 1 章 總 則

제 1 조 : ①국가 통일 전에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의 안정과 민중의 복지를 도모하며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에 관한 것을 규범화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다.

②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조 : 본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대만지구 : 대만, 팽호(澎湖), 금문(金門), 마조(馬祖)와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기타 지역을 가리킨다.
2. 대륙지구 : 대만지구 이외의 중화민국 영토를 가리킨다.
3. 대만지구 주민 : 대만지구에 호적을 두고있는 주민
4. 대륙지구 주민 : 대륙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거나 혹은 대만지구에서 대륙으로 가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제 3 조 : 대륙지구 주민에 관한 본 조례의 규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륙지구 주민에게도 적용된다.

제 4 조 : ①행정원은 기구를 설립·지정하거나 혹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에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②전항에서 언급한 위탁사무의 처리 방법은 행정원에서 정한다.

③공무원이 제 1 항의 기관이나 민간단체로 전임되었을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근속 연수는 공직으로 복귀시 공무원 근속 연수로 합산 한다. 그 방법은 고시원(考試院)이 행정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 대륙지구에서 제작한 문서는 행정원이 설립·지정한 기관이나 同院이 위탁한 민간단체의 검증을 거쳐야 진정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第 2 章 行 政

제 6 조 : ①대만지구 주민이 대륙지구에 들어갈 때에는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만지구 주민이 허가를 거쳐 대륙지구에 들어갈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제 1 항의 허가방법은 내무부가 초안을 잡아 행정원에서 서

면으로 요청하면 행정원에서는 그것을 심사하여 확정지은 후 공포(公布)한다.

제 7 조 : ①대륙지구 주민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대만지구에 들어오거나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도 할 수 없고 정착하여 거주할 수도 없다.

②전항의 허가 방법은 내무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초안을 잡고 행정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행정원에서 심사 확정 후 공포한다.

제 8 조 : ①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 주민 중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의 시작이나 종료에 관계없이 치안기관에서 강제 출국을 집행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
2. 허가를 받고 입국했지만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자
3. 범죄 행위의 사실이 인정되는 자
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은 본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 주민에게도 적용된다.

제 9 조 : ①대만지구 주민이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 주민의 입국을 보증했는데 피보증인이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이 피보증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것에 협

조해야 하며 강제출국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전항의 피보증인을 강제 출국시키기 전에 주관기관에서 는 보증인의 출국을 제한해야 한다.

③제 1 항의 경비는 강제 출국시키는 기관에서 증빙서류의 복사본과 계산서를 구비하여 보증인에게 보내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기한을 넘기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집행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 대륙지구 주민이 허가를 받은 후 대만지구에 들어왔 을 경우 대만지구에 호적을 둔지 만 5년이 안되었을 때에 는 공직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군인이나 공무원, 교직원, 공영사업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을 조직할 수도 없다. 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 허가를 거친 후 대만지구에 정착 거주하는 대륙지구 주민이 대륙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인정 방법은 교육부(教育部)가 행정원에 서면으로 요청, 행정원의 심사 확정을 거친 후 공포한다.

제12조 : 허가를 거친 후 대만지구에 정착 거주하는 대륙지구 주민이 대륙지구에서 전문직이나 기술업무에 종사했었던 경우 考試院에 심사를 신청하여 취업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한다.

②전항에서 심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를 받아야하는 부

문은 考試院이 관계되는 院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 ①대륙지구에 소득원을 갖고 있는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의 경우 대만지구 소득과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한다. 다만, 대륙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액 중에서 공제해주도록 한다.

②전항의 공제 액수는 대륙에서의 소득 합산을 원인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증가된 납세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4조 : 대만지구에 소득원이 있는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납세액을 소득원천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또 그 공제납세의 의무가 있는 자가 급여를 받을 때에는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도록 하며 결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15조 : 각종 퇴직(退休, 退職, 退伍)¹¹⁾ 급여를 매월 수령하는 퇴직군인이나 공무원, 교직원 또는 공영사업기관의 직원들 중 허가를 거친 후 대륙지구로 가 그곳에 정착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신청에 의거해 원래 정해진 퇴직 때까지의 근무 연한과 그 달(퇴직한 달)의 동직(同職)호봉이나 동직급 현직인원의 월급여를 참고해 마땅히 받아야하는 1차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표준으로 삼는다. 그리고나서

11) 退休라함은 정년퇴직이나 은퇴의 경우를, 退職이라함은 직장에서 사직하는 것을 말하며, 退伍는 주로 군대에서 제대, 퇴역하는 경우를 지칭함.

이미 수령한 월 퇴직급여를 공제한 후 1차로 그 나머지 액수를 지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1차 퇴직급여의 반에 미달되는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하는 1차 퇴직급여의 반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제16조 : ① 각종 월 급여를 받는 군인, 공무원, 교직원 또는 공영사업기관의 직원이 재직 기간 중에 사망했을 경우 혹은 공법(公法)상 각종 월 퇴직금, 부양금을 받는 사람들이 수령기간 중에 사망했을 경우 대륙지구에 거주하는 유족이나 법정 수혜자(受益人)는 아래 규정을 따른다. 즉 해당 급여 수령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를 받은 후 대만지구에 들어와 보험사망급여, 1차 위로금의 수령을 서면으로 해당기관에 신청한다.

② 전항의 신청은 대만지구에 사망자의 유족이나 법정 수혜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대륙지구의 유족이나 법정 수혜인이 제 1 항에서 언급한 보험사망급여, 1차위로금, 퇴직금 잔여분, 위문금을 수령할 경우 그 총액은 1인당 대만돈¹²⁾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전 3항에서의 수령 요건과 절차, 액수는 근로자보험조례에서 정한 사망급여, 농민건강보험조례에서 정한 장례보조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망보상의 규정에 준한다.

12) 新臺幣 : NT(New Taiwan)로 표기. 대만돈 NT 1元은 우리나라 30원에 해당

⑤민국38년(1949) 10월 25일 이후부터 본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대륙지구의 유족이나 법정 수혜자 혹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험사망급여, 위로금, 퇴직금, 퇴직금 잔여분 혹은 조위금은 그 권리인이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즉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 허가를 받은 후 대만지구에 들어와 제 1 항과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수속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제 17조 : ①행정원 퇴역군인지도위원회(行政院國軍退除役官兵轉導委員會)에서 정착을 도와주고 있는 영민¹³⁾이 허가를 받은 후 대륙지구으로 가 정착 거주하는 경우 본래의 부양급여를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급 방법은 행정원 퇴역군인지도위원회에서 기초하여 행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 심사를 받은 뒤에 공포한다.

제 18조 : 대만지구과 대륙지구 주민 사이의 통신왕래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부(交通部)는 행정원의 심사를 거쳐 전부 혹은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국민이 긴급재난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을 경우
2.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13) 榮民 : 영예군인의 준말. 국민당 출신으로 대만에 와 정착한 퇴직군인

제19조 : ①중화민국의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운송수단은 주 관 기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륙지구를 운항할 수 없다.

②전항의 허가 방법은 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초 하고 행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 공포 한다.

제20조 : ②허가를 받지 않은 대륙의 민간 항공기가 대북(臺北)의 비행 정보구역 출입통제지역에 들어왔을 경우 항공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그 비행기가 통제구역을 떠나도록 경고하거나 혹은 필요한 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제구역은 국방부가 공고한다.

제21조 : ①허가를 받지 않은 대륙의 선박이 대만지구의 금지 수역(水域) 또는 제한 수역에 들어왔을 경우 주관 기관에 서는 그 선박을 수역 밖으로 쫓아낼 수 있으며 또는 선박 이나 물품을 억류할 수 있다. 또한 그 선박의 승무원들을 보호 조치(留署)할 수도 있고 필요한 방위 조치를 취할 수 도 있다.

②전항의 억류 대상이 되는 선박과 물품, 승무원에 대해서 는 주관 기관이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 다.

1. 억류한 선박과 물품은 몰수하거나 혹은 송환한다.

2. 억류한 승무원은 조사를 거친 뒤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강제 출국 시킨다.

③제 1 항의 금지수역, 제한수역은 국방부가 공고한다.

④본 조례 시행 전에 억류한 선박과 물품, 승무원에 대하여 주관 기관에서 이미 처리하였으면 그에 따른다.

제22조 :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관은 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그곳에서 어떠한 직책도 담당할 수 없다. 또한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관과 연합하여 법인이나 단체, 기타 기관들을 설립할 수 없으며 연맹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제23조 : ①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관은 대륙지구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 합작을 할 수 없다. 또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관과 무역을 하거나 다른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안전이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經濟部)가 허가를 해주도록 한다.

1.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관이 국외나 국외의 회사, 사업체를 경유하여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관과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 노무(勞務), 혹은 기타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관이 국외에 있는

회사나 사업체를 통하여 대륙지구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 합작을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 회사나 사업체를 둔 대륙 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관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 합작을 하는 경우

②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미 투자나 기술 합작, 무역, 기타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제부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어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 2항의 허가 방법은 경제부가 기초하여 서면으로 행정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에 공포한다.

제24조 : ①대만지구의 금융보험기관과 대만지구 이외의 국가에 설립한 지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륙지구의 법인이나 단체, 기타 기관 또는 대륙지구 이외의 국가나 지구에 설립된 지사와 업무상의 직접적인 왕래를 할 수 없다.

②전항의 허가 방법은 재무부(財政部)가 기초하여 서면으로 행정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뒤에 공포한다.

제25조 : ①대륙지구의 출판물, 광고, 영화, 비디오프로그램, 라디오TV프로그램, 희극, 무용, 음악 등에 대하여 주관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그것들의 대만에서의 발행이나 제

작, 상영, 상연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대만지구
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②전항의 제한, 금지 방법은 행정원 신문국(新聞局)이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 초안을 잡고 서면으로 행정원에 요청하
여 심사를 거친 뒤에 공포한다.

제26조 : 대륙지구에서 발행된 화폐는 대만지구에 들여올 수
없다. 다만, 들여올 때 세관에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27조 : 대륙지구의 골동품(中華古物)을 주관 기관의 허가를
거친 뒤에 들여와 공개적으로 진열, 전시한 경우에는 반드
시 다시 가지고 나가도록 한다.

제28조 :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
물품의 검사, 검역, 관리와 처리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第 3 章 民 事

제29조 : ①대만지구 주민과 대륙지구 주민 사이의 민사사건
은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대만지구의 법률
을 적용하도록 한다.

②대륙지구 주민끼리의 민사사건 또는 대륙지구 주민과 외
국인 사이의 민사사건은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

에는 대륙지구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③본 장에서 칭하는 행위지, 계약지, 호적등기지, 발생지, 이행지, 소재지, 소송지, 중재지는 대만지구나 대륙지구를 가리킨다.

제30조 :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는 경우 대륙지구 내 각 지방의 규정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가 호적을 두고 있는 지방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는 경우 대륙지구에 그 법률에 관계된 명문(明文) 규정이 없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시켜야 될 때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시킨다.

제32조 :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 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는 경우 그 규정이 대만지구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될 때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시킨다.

제33조 : 민사법률관계의 행위지나 사실발생지가 대륙지구와 대만지구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및 대만지구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만지구를 행위지 혹은 사실발생지로 삼는다.

제34조 : ①대륙지구 주민의 행위 능력은 대륙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미성년자이면서 이미 결혼한 자의 대만지구에서의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대륙지구 법인, 단체, 기타 기관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은 그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 ①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가 적용되는 곳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행위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의 방식에 따르는 것도 역시 유효하다.

②물권(物權)의 법률행위는 그 방식을 물(物)의 소재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③유가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하는 법률행위는 행위지의 규정에 따라 그 방식을 정한다.

제36조 : ①채무의 계약은 계약지의 규정에 따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대로 하도록 한다.

②전항에서 계약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행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지나 중재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37조 : 대륙지구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거나(無因管理) 부당이득 혹은 기타 법률사실들로 인하여 생긴 채무는 대륙지구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38조 :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侵權行爲)는 손해 발생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대만지구의 법률이 그 권리 침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 ①물권은 물(物)의 소재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②권리가 표시가 되는 물권은 권리성립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물(物)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물권의 취득과 상실은 그 원인 사실이 완성되었을 때 物의 소재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선박의 물권은 선적등기지(船籍登記地)의 규정에 따른다. 항공기의 물권은 항공기등기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 ①결혼이나 쌍방합의이혼의 방식과 기타 요건은 행위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혼 사유의 판결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따른다.

제41조 : 부부 중의 한 사람이 대만지구 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이 대륙지구 주민인 경우 그 결혼이나 이혼의 효력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따른다.

제42조 : 대만지구 주민과 대륙지구 주민이 대륙지구에서 결혼했을 경우 그 부부의 재산권은 대륙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3조 : ①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자녀를 인지·입적시킬 때의 성립 요건은 각 해당 입적인이 피입적인을 입적시킬 때 호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②입적의 효력은 입적인이 호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 ①입양의 성립과 종료는 각 해당 입양자가 피입양자를 입양시킬 때 호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②입양의 효력은 입양자가 호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 부모 중의 한 사람이 대만지구 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이 대륙지구 주민인 경우 그들과 자녀사이의 법률적인 문제는 아버지가 호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데릴사위인 경우¹⁴⁾어머니가 호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 감호(監護)를 받는 사람이 대륙지구 주민인 경우 그 감호는 해당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감호를 받는 사람이 대만지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에 따른다.

제47조 : 부양(扶養)의 의무는 부양의무인이 호적을 둔 곳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 피상속인(被繼承人)이 대륙지구 주민인 경우 상속에 관해서는 해당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만지구에 있는 유산에 대해서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9조 : 대륙지구 주민의 유언장에 대한 성립, 철회의 요건과 효력은 해당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유언장에

14) 성은 어머니 성을 따름.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50조 : 대륙지구 주민의 기부행위에 대한 성립, 철회의 요건과 효력은 해당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부하는 재산이 대만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51조 : ①본 조례 시행전 대만지구 주민과 대륙지구 주민 사이, 대륙지구의 주민 상호간 또는 대륙지구 주민과 외국인 사이에 대륙지구에서 성립된 민사법률관계와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 또는 의무가 대만지구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

②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그 권리의 행사나 이전을 따로 법령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2조 : ①부부 중의 한 사람이 대만지구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이 대륙지구에 있어 동거할 수 없는 경우 한 사람이 민국 74년(1985) 6월 4일 이전에 중혼(重婚)했을 때에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민국 74년(1985) 6월 5일 이후 민국 76년(1987) 11월 1일 이전에 중혼했을 때에는 나중에 한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 부부 쌍방이 모두 중혼했을 때에는 나중에 혼인한 날부터 본래의 혼인관계는 소멸된다.

제53조 : 대만지구 주민이 대륙지구 주민을 자녀로 입양할 경우 민법 제1079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 경우에 해당될 때에 법원에서는 입양을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

1. 이미 자녀나 양자녀(養子女)가 있는 경우
2. 동시에 2인 이상의 양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3. 행정원이 설립했거나 지정한 기관 혹은 행정원이 위탁한 민간단체에서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54조 : ①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 주민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를 거친 후 대만지구에 들어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상속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륙지구 상속인이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 허가를 받은 뒤 대만지구에 들어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상속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5조 : ①피상속인의 대만지구에 있는 유산을 대만지구 주민이 법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 그 소득 재산 총액은 1인당 대만돈(新臺幣)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부분은

대만지구의 다른 동등한 자격의 상속자에게 귀속된다. 대만 지구에 동등한 자격의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의 상속자에게 귀속되고, 대만지구에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②유언을 한 사람이 자신의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대륙 지구의 주민이나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관에 물려줄 경우, 그 총액은 대만돈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륙지구 주민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표시되는 권리를 상속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돈으로 환산하도록 한다.

제56조 : ①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은 경우 또 상속인이 유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판기관에서 그 유산을 관리한다.

②전항의 유산 사건에 있어서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해당기관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대로 한다.

③제 1 항의 유산관리방법은 국방부와 행정원 퇴역군인지도 위원회에서 각각 행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심사 후에 공포한다.

제57조 :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에서 부동산으로 표시되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는 대만지구 주민이 대륙 지구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 한한다.

제58조 : 허가를 거치지 않은 대륙지구의 법인이나 단체, 기타 기관은 대만지구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 : 허가를 거치지 않은 대륙지구의 법인이나 단체, 기타 기관이 그 명의를 가지고 대만지구에서 다른 사람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하는 해당인은 대륙지구의 해당 법인이나 단체, 기타 기관과 연대 책임을 진다.

제60조 : 대륙지구 주민, 법인이나 단체, 기타 기관은 대만지구 법인이나 단체, 기타 기관의 주주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주관 기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1조 : 외국회사의 주식 지분 중 20% 이상을 대륙지구 주민, 법인이나 단체, 기타 기관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회사는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시켜야 한다.

제62조 : ①대륙지구에서 작성된 민사확정재판, 민사중재재판은 대만지구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법원에 재정인가(裁定認可)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법원의 재정인가를 받은 재판이나 판정이 支給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第 4 章 刑 事

제63조 : 대륙지구나 대륙의 선박,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범

죄는 대륙지구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을지라도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형(刑)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는 있다.

제64조 : 배우자 중의 한 사람이 대만지구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이 대륙지구에 있는 경우 민국 76년(1987) 11월 1일 이전에 중혼했거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동거하고 있을 때에는 소추(訴追)와 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한다. 상혼(相婚)이나 동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65조 :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 이외의 지구에서 내란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했거나 반란조직이나 집회에 참여한 경우, 또 반도(叛徒)에게 유리한 선전을 했을 경우에 허가를 거쳐 대만지구에 들어온 뒤 사실대로 신고를 하면 소추와 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한다. 대만지구에 들어와 주관 기관이 주최를 허가한 회의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특별안건(專案) 허가를 거쳐 신고가 면제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第 5 章 罰 則

제66조 : ① 대륙지구 주민이 비합법적으로 대만지구에 들어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30일 미만의 科(벌금) 혹은 병과(併科) 대만돈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제67조 : ①중화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혹은 기타 운송수단의 소유자나 업자, 선장이나 기장, 기타 운송수단의 운전사가 제19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륙지구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科 혹은 併科 대만돈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대륙지구를 운항하게 된 것이 선장이나 기장, 기타 운송수단의 운전사의 결정이었을 경우에는 선장이나 기장, 운전사를 처벌하도록 한다.

②전항에서 대륙지구를 운행한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운송수단의 소유자나 업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항에서 정해진 벌금을 해당 법인에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러한 위반사항의 발생에 대하여 충분한 방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 1 항의 상황에서 해당 기관에서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운송수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운항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 관계 면허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선장이나 기장 또는 운전사의 면허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제68조 : ①제24조의 규정을 어기고 허가를 거치지 않고서 직접 왕래한 경우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구류, 科 혹은 併科 대만돈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 결정에 참여한 사람을 처벌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해당 금융보험기관에도 전항에서 규정한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전 2 항의 규정은 중화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69조 : ①대만지구 주민을 모집하여 허가를 거치지 않고 대륙지구에 들어가게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科 혹은 併科 대만돈 1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자연인의 대리인·고용인 혹은 기타 직원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법인이나 자연인에게도 전항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나 자연인이 그러한 위반사항의 발생에 대하여 충분한 방지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0조 : 제23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나 기술합작, 무역이나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대만돈 3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투자나 기술합작 기타 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제71조 : ①제25조의 규정에서 내린 제한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만돈 2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출판물과 광고, 영화, 비디오프로그램, 라디오TV 프로그램 등은 소유자가 누구이든간에 압류, 몰수하도록 한다.

제72조 :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만돈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만돈 2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 : 대만지구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대륙지구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대만돈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브로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대만돈 2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 제 6 조제 1 항이나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만돈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거친 후 대륙지구에 들어간 대만지구 주민이 국가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하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대만돈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대만돈 2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 ①제18조의 규정에서 내린 제한명령을 어긴 경우 대만돈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통신기기들은 압류, 몰수하도록 한다.

제76조 :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고를 거치지 않은 화폐는 세관에서 몰수한다.

제77조 : 본 조례에 정해진 벌금은 해당기관에서 집행하도록 한다. 납부기한을 통지했는데도 기한을 넘기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집행법에 따라 집행한다.

第 6 章 附 則

제78조 : 본 조례의 시행세칙과 시행일은 행정원에서 정한다.

II. 組織規定

國家統一委員會設置要點

- 民國 79年(1990) 9月 21日總統 華總第15717號
- 全文 8條 條文

제 1 조 : 총통은 자유·민주의 원칙하에 국가통일을 촉진시키고 국가통일을 위한 국정방침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임무편성 방식으로 「국가통일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약칭함)를 특별히 설치한다.

제 2 조 : 본 위원회의 주임은 총통이 맡는다. 부주임위원은 3인을 두되 부총통 및 행정원장외에 총통이 임명한 다른 1인으로 한다.

제 3 조 : 본 위원회는 25인에서 31인의 위원을 두는데, 총통이 초빙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 본 위원회는 주임위원의 주재하에 2개월에 한 차례 모임을 갖는다.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주임위원이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其他 부주임위원이 주재한다.

제 5 조 : 본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에는 관련인사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 본 위원회에는 연구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고 주임
위원이 초빙 임명한다.

제 7 조 : 본 위원회의 참모사무는 총통부에서 파견하는 인원이
처리한다.

제 8 조 : 본 위원회의 사업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行政院大陸委員會組織條例

- 民國 80年(1991) 1月 28日總統 華總(1)義字
第0554號令 公布
- 全文 22條 條文

제 1 조 : 행정원은 대륙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행정원 대륙위원회(이하 본회라 약칭함)를 설치한다.

제 2 조 : 본회는 성(省) 정부가 본회의 주관 사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 3 조 : 본회는 중간 관여단체가 권리를 위임받아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각종 업무교류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 4 조 : 본회는 아래의 각 처(處)를 둔다.

1. 기획처
2. 문교처
3. 경제처
4. 법정(法政)처
5. 홍콩·마카오(港澳)처
6. 연락처
7. 비서처

제 5 조 : 기획처는 아래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1. 대륙정책의 연구 및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대륙정세의 연구와 판단에 관한 사항
3. 중국대륙을 연구하는 외국기구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대륙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자원이용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사항
6. 대륙사무에 관한 기타 기획 사항

제 6 조 : 문교처는 아래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1.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학술·문화·교육·체육, 大衆 언론방송 등의 교류에 관한 심의 협조 및 관련 사항
2. 대륙의 정책·문교업무에 관한 건의 및 입안 사항
3. 대륙사무의 기타 문교에 관한 사항

제 7 조 : 경제처는 아래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1.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재산세, 금융, 무역, 교통, 농림수산, 환경보호 등 교류사항에 관한 심의, 협조 및 연계 사항
2. 대륙의 경제정책 업무에 관한 건의 및 입안 사항
3. 대륙사무의 기타 경제에 관한 사항

제 8 조 : 법정처는 아래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1.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법무·내정(內政)·위생 및 노동업무에 관한 연구, 입안, 심의, 협조, 연계 및 처리 사

항

2.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에 관한 법규의 연구입안, 심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대륙의 법제(法制)문제에 관한 연구 사항
4. 본 회 및 대륙사무의 기타 법제에 관한 사항

제9조 : 홍콩·마카오처는 아래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1. 홍콩과 마카오 지구의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기획에 관련된 사항
2. 홍콩과 마카오 지구의 관련 사무 처리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홍콩과 마카오 지구 동포에 관한 연계 및 복무에 관련된 사항
4. 홍콩과 마카오 지구의 사무에 관한 기타 사항

제10조 : 연락처는 아래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1. 대륙정책의 안내·지도, 뉴스보도에 관련된 사항
2. 외국에 체류하는 중국대륙의 주민 및 그 단체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대륙에 관련된 자료에 관한 자문 및 복무 사항
4. 대륙사무에 관한 기타 연락 사항

제11조 : 비서처는 아래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1. 의사(議事) 및 업무통제에 관한 사항
2. 사무 및 출납에 관한 사항

3. 문서, 인감증명서 및 분류, 보관 공문서(鑑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무의 기획 및 추진을 자문하고 소프트웨어 응용 체계의 발전 및 하드웨어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처나 실(室)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 : ①본 회의는 주임위원 1인을 두는데 주임위원은 제 1 등문관(特任)으로서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하여 처리한다. 부주임위원 2인내지 3인은 본 회의 업무를 돕고 그 직무는 제 2 등 문관(簡任) 제14등급에 따르며 그 가운데 1인은 제 1 등 문관이어야 한다.

②본 회의는 위원 17인내지 27인을 두는데 행정원장이 파견 겸임케하거나 초빙겸임하게 한다.

제13조 : ①본 회의의 위원회의는 주임위원이 소집하며 매월 한 차례 개최한다. 주임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

②관련되는 대륙정책 및 중요한 대륙업무 시행은 위원회의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 본 회의는 주임비서 1인, 처장 7인, 참사 3인내지 5인을 두고 직무는 제 2 등 문관 제12등급에 해당된다. 연구위원 6인내지 14인은 직무상 제 2 등 문관 제10등급내지 제 12등급에 해당된다. 부처장(副處長) 7인은 직무상 제 2 등 문관 제11등급에 해당된다. 전문위원 7인내지 11인은 직무

상 제 2 등 문관 제 10 등 급 내지 제 11 등 급에 해당된다. 과장 36 인 내지 40 인은 직무상 제 3 등 문관(薦任) 제 9 등 급에 해당된다. 비서 7 인 내지 8 인은 직무상 제 3 등 문관 제 8 등 급 내지 제 9 등 급에 해당되고 그 가운데 3 인 또는 4 인은 직무상 제 2 등 문관 제 10 등 급 내지 제 11 등 급에 해당된다. 전문 요원(專員) 58 인 내지 66 인, 분석사(分析師) 1 인 내지 3 인은 직무상 제 3 등 문관 제 7 등 급 내지 제 9 등 급에 해당된다. 설계사 2 인 내지 4 인은 직무상 제 3 등 문관 제 6 등 급 내지 제 8 등 급에 해당된다. 과원(科員) 81 인 내지 96 인은 직무상 제 4 등 문관(委任) 제 5 등 급에 해당되고 그 가운데 41 인 내지 48 인은 직무상 제 3 등 문관 제 6 등 급 내지 제 7 등 급에 해당된다. 보조 설계사 1 인 내지 2 인은 직무상 제 4 등 문관 제 3 등 급 내지 제 5 등 급에 해당된다. 사무원 6 인 내지 8 인은 직무상 제 4 등 문관 제 3 등 급 내지 제 4 등 급에 해당된다. 서기 6 인 내지 8 인은 직무상 제 4 등 문관 제 1 등 급 내지 제 3 등 급에 해당된다.

제 15 조 : ① 본 회는 인사실을 설치하여 주임 1 인을 두는데, 주임은 직무상 제 2 등 문관 제 10 등 급 내지 제 11 등 급에 해당되며 법에 따라 인사관리를 처리한다.

② 전항(前項)에서 필요한 업무인원은 본 조례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파견하여 충당한다.

제 16 조 : ① 본 회는 회계실을 설치하여 회계주임 1 인을 두는

데 회계주임은 직무상 제 2 등 문관 제10등급내지 제11등급에 해당된다. 법에 따라 회계, 세계(歲計) 및 통계사항을 처리한다.

②전항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인원은 본 조례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파견하여 충당한다.

제17조 :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열거한 관등, 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의 직무가 적용되는 직무계통은 공무원임용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하며 관련있는 직무계통에서 선발하여 임용한다.

제18조 : 본 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행정원에 보고 요청하여 심사비준을 거친 후에 연구원, 부연구원, 보조연구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19조 : 본 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학자, 전문가를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無級職으로서 초빙 및 집회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 본 회는 업무의 필요를 위해서 각종 協調會報를 설치하고 관계있는 部·會의 副首長, 司, 處¹⁾의 長을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無給職으로서 각 協調會報설치를 위해 필요한 업무인원은 본 조례가 정한 인원수

1) 部는 내무부, 문교부 등의 部에 해당하며 會는 중앙행정기구의 위원회에 그리고 司·處는 우리나라의 局·處에 해당함.

내에서 파견하여 임용한다.

제21조 : 본 회의 회의규칙이나 사무세칙은 본 회의 입안하여
행정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2조 :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行政院大陸委員會諮問委員招聘 및 集會法

- 民國 80年(1991) 5月 10日行政院 大陸委員會(80) 陸法字 第0999號令 公布
- 全文 10條 條文

제 1 조 : 본 법은 행정원대륙위원회(이하 본회라 약칭함)조직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

제 2 조 : 본 회는 대륙사무에 관련된 의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함)를 둔다.

제 3 조 : 위원회는 주임위원 1인을 두는데 본 회의 주임위원이 겸임한다. 부주임위원 1인은 본 회의 주임위원이 본 회의 부주임위원 중 1인을 파견하여 겸임케 한다.

제 4 조 : 위원회는 15인에서 23인의 위원을 두는데 주임위원이 대륙의 사무 및 양안²⁾의 민간교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전문가를 초빙한다. 임기는 1년이고 임기가 끝나면 계속 초빙할 수 있다.

제 5 조 : 위원회는 집행비서 1인을 두는데 집행비서는 주임위원의 命을 받아 일상사무를 총괄관리한다. 간사는 1인 내지

2) 兩岸 : 대만과 중국 본토를 의미함.

2인을 두는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다. 이들은 모두 본 회의 현직 인원 가운데에서 파견하여 겸임하게 한다.

제 6 조 : 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가 관장하는 사항 또는 본 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제 7 조 : 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의 회의를 소집·개최한다.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주임위원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주임위원이 유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주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 8 조 : 위원회의 개회시에는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본회 인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 위원회의 위원, 집행비서 및 간사는 모두 無給職이다. 단, 위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0 조 :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行政院大陸委員會業務協調會報設置要點

○ 民國 80年(1991) 1月 28日 行政院 大陸委員會
行政院 大陸委員會 第3次 委員會議 通過

1. 행정원 대륙위원회(이하 본회라 약칭함)는 각 部處·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원대륙위원회조직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협조회보(이하 회보라 약칭함)를 설치한다.
2. 회보는 본회 부주임위원을 소집인으로 하여 각 部處·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副首長, 局(處)장을 위원으로 초빙하여 구성한다. 이들은 모두 無給職이다.
3. 회보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各 部處나 위원회를 초월한 대륙업무에 관한 협조와 관련 사항
 - (2)대륙정책 사업계획 또는 방안에 관한 연구·논의 사항
 - (3)대륙사업 범규의 제(수)정에 관한 초보적 심의 사항
 - (4)기타 대륙사업에 관련된 사항
4. 회보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소집인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할 수 있는데, 모

두 관련 인사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5. 회보는 집행비서 1인과 부집행비서 1인내지 2인을 두어 소집인이 회보의 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협조한다. 필요한 업무인원은 본 회에 편성된 인원수 내에서 파견하여 임명한다.

6. 회보의 결의사항은 본 회 주임위원의 결재나 위원회의에 제안보고하고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된다.

7. 본 요점은 행정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고 그 수정도 또한 동일하다.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및監督準則

- 民國 80年(1991) 5月 10日行政院 大陸委員會
(80)陸法字 第1002號令 公布
- 全文 26條 條文

제 1 조 : 행정원 대륙위원회(이하 본회라 약칭함)는 대륙사무 재단법인(이하 재단법인이라 약칭함)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본 준칙을 정한다.

제 2 조 : 본 준칙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은 주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양 지구 주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사람과 일정한 재산을 기부, 설립허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된 재단법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은 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 이외에는 본 준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 재단법인은 자신의 특정 명칭앞에 「재단법인」 명의를 덧붙여야 한다.

제 5 조 : ① 재단법인 설립기금 및 재산총액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에 충분한 금액에 달해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은 신대만화폐(新臺幣 NT) 일천만원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③재단법인은 기금이자 및 법인성립 후의 기증과 소득으로 각 항의 업무를 처리해야하며 이사회 결의와 본 회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기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 6 조 : ① 재단법인은 이사와 아울러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이사 상호간에 배우자 및 삼촌이내의 친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그 인원수는 이사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국인을 이사로 총당할 경우 그 인원수는 이사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 7 조 : ①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문건을 4부 작성하여 본 회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유언에 의한 기부로 재단을 설립하는 자는 유언 집행인이 신청을 제출한다.

1. 신청서(재단법인의 명칭, 본사 및 지사의 소재지, 재산 총액, 목적사업의 항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
2. 기부규정 또는 유언장 사본
3. 기부재산 세부목록상의 기부재산이 현금일 때에는 금융기관의 예금증명 또는 기타 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른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건물 소유권 또는 기타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 정부기관 또는 단체 기부 설립자는 정부기관의 비준문서나 해당 단체의 기부를 결의한 회의기록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5. 업무계획 설명서
 6. 기부인 명부 (단, 유언에 의한 기증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 기부인 회의기록 (단, 기부인이 2인 이하일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8. 재단법인이 등기설립 비준을 얻었을 때에 기부인이 기부할 재산을 재단법인의 소유로 이전할 것을 동의하는 승락서
 9. 기타 본회가 지정한 문건
- ②전항의 신청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기각하여야 한다. 단, 보완, 수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정한 기간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 ①기부 규정은 아래 규정을 명기 하여야한다.

1. 설립목적
2. 조직, 명칭 및 본사와 지사의 소재지
3. 기부인의 성명, 기부한 기금, 재산 및 그 관리방법
4. 재단법인의 업무 및 관리방법
5. 이사의 정원, 임기 및 선임, 해임 사항, 감사설치의 경우 그 인원수, 임기 및 선임, 해임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해산 후 잉여재산의 귀속

8.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②유언에 의한 기부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전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유언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유언 집행인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 9 조 : ①재단법인이 허가를 받아 설립된 후 설립인 또는 유언 집행인은 30일 이내에 기부규정에 의하거나 유언에서 선임한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가 성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문건을 4부 작성하여 본 회에 보고하여 심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성립 회의기록
2. 이사 명부, 감사를 두는 경우 그 명부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직업, 신분증통일번호, 학력, 경력 및 주소
3. 이사의 부임 동의서 : 이사장, 감사를 두는 경우 그들의 부임 동의서
4. 이사의 호적등본, 국내에 적(籍)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 증명 서류(감사를 두는 경우 그의 호적등본 또는 신분 증명 서류, 이사에 準하여 처리한다)
5. 재단법인 및 이사의 인감대장(감사를 두는 경우 그의 인감대장)
6. 기부인 또는 유언 집행인의 인계대장

②전항의 제 6 호의 대장에는 재단법인 설립서류, 재산 및 기타 관련사항이 포함된다.

제10조 : 재단법인이 전 조(條)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서류 심사를 받은 30일 이내에 이사는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 ①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재단법인 등기증서를 구비하여 본 회로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부인 또는 유언 집행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한 재산 전부를 재단법인에 귀속시켜야 하고 아울러 본 회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최소한 3개월에 1회 회의를 소집·개최하고 회의 후에는 이사회의 기록을 회의 후 15일 이내에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 ①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정한 이사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1. 규정의 변경
2.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설정
3. 재단법인의 해산 또는 목적의 변경

③전항 사항에 관한 토론은 회의 10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아울러 본 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 사람을 파견 참석하게 해야 한다.

④제 2 항의 결의사항은 본 회에 보고한 후에 법에 따라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14조 : 본회의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립허가 사항
2. 조직 및 시설상황
3. 당해년도 중대 조치
4. 재산의 보관·운용상황
5. 재무상황
6. 공익효과
7. 기타 사항

제15조 : 재단법인은 인사, 회계 및 재무감사 제도의 수립 사실을 본 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 ①재단법인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회계연도의 업무계획, 목표 및 예산서를 구비·검토 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업무집행 보고서 및 회계년도 결산서를 검토·구비하여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본 회의는 재단법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업무와 재무보고 제출을 통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원을 파

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7조 : ①재단법인은 설립등기 후에 이사, 감사 기부규정, 조직, 재산 등 설립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계 서류를 검토 첨부하여 본 회에 보고하고 관할 법원에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전항에서 갱신발급받아 취득한 재단법인의 등기증서는 본 회에 보고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③재단법인이 감사를 둘 경우에 제 1 항의 설립허가사항의 변경은 먼저 監事의 監査를 받고 監査意見書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 : 재단법인 및 이사, 감사는 관계 법령과 기부규정에서 정한 바의 목적 및 관리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재단법인의 재산 및 업무를 처리한다.

제19조 : ①재단법인이 다음 각호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본회는 그것을 바로 잡고 기한을 한정해 개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기고도 개선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본회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설립허가 조건, 기부규정 또는 유언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대만지구의 안전과 사회안정에 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의 경우

3. 경영방침과 설립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수취한 사업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5. 이사 및 직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6. 이사회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7. 재무수지가 법적인 증빙서류와 맞지 않거나 회의기록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8.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 회의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9. 업무나 재무에 대한 보고가 부실한 경우
10. 경비의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11. 기타 본 준칙을 위반한 경우

②재단법인이 계속해서 2년이상 업무활동을 중단한경우 전항 제 1 호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 1 항제 4 호의 수취경비 표준은 재단법인이 표준을 정하여 본 회에 보고하여 심사 후에 정한다.

제20조 : 재단법인의 목적 또는 그 행위가 법령,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본 회의 법원에 법인의 해산을 선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 재단법인의 목적 또는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 회의 법원에 그 조직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 재단법인의 이사가 기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회의 법원에 그 행위가 무효임을 선고하도

록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 ①재단법인은 해산 후에 즉시 결산을 해야 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를 청산한 뒤에는 그 잉여재산의 귀속은 기부규정이나 유언의 규정에 따른다. 단, 어떠한 자연인이나 영리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

②전항의 법률, 기부규정 또는 유언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나머지 재산은 본사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4조 : 본 준칙에 따르지 않고 설립허가를 신청한 재단법인이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만약 법령, 공공질서를 어기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본 회는 주관기관이 사안에 따라 그 법인을 처리하는 데 있어 협조해야 한다.

제25조 : ①본 준칙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본 준칙에 따라 감독하고 본 준칙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준칙이 시행된 후에 보완·수정을 받아야 한다. 단, 기금 및 재산의 액수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전항의 보완·수정 기간은 본 회가 정하고, 기한을 넘기고도 보완·수정하지 않으면 본회는 원래의 허가기관과 협조하여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26조 : 본 준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寄附財組織規定

- 民國79年(1990) 11月 21日 第1會 理事監查會
第1次會議 通過
- 全文 25條 條文

第1章 總 則

제1조 : 본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이하 본 회라 줄여 부름)라 칭한다.

제2조 : 본 회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와 관련된 사무를 협조·처리하고 아울러 양 지구 주민의 권익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 봉사를 할 때에는 봉사비용을 첨가할 수 있다.

제3조 : 본 회는 전조에서 정한 주목적을 달성하고 정부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서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출입국 안건의 접수, 이첩 안건의 심사 및 관련 증명서의 검인, 발급, 보완발급 등의 사무
2. 대륙지구 문서의 검증, 신분관계의 증명, 소송문서의 송달협조 및 양 지구 범죄자의 송환 등의 사무

3. 대륙지구의 경제·무역·정보자료의 수집·공포및 간접 무역, 투자, 분쟁 협조·처리 등의 사무
4. 양 지구 주민의 문화관계 교류 사업
5. 대만지구 주민의 대륙지구 체류기간 중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의 협조
6. 양 지구 주민의 왕래에 관련된 자문봉사의 사무
7. 기타 정부가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항

제 4 조 : 본 회의 본부는 대북시(臺北市)에 두고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해외 및 대륙지구에 지부를 설치한다.

제 5 조 : ①본 회의 기금원은 53인이 함께 기부한 신대만화폐(新臺幣 NT) 6억 7천만원으로 한다.

②본 회 경비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1. 기금운용 이자
2. 위탁 수익
3. 정부 또는 민간의 기증
4. 본장 제 2 조의 단서조항에서 받은 비용

第 2 章 組 織

제 6 조 : 본 회의는 이사회를 두는데 이사회는 본 회의 정책결정 기구로서 기금의 모금, 보관, 운용, 비서장의 임면, 사업방침의 심사 확정, 업무계획 및 예산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여 처리한다.

제 7 조 : ①본 회 이사회는 이사 43인으로 구성된다. 제 1 차 이사회는 기부인에서 선발 초빙한다.

②본 회는 이사장 1인을 두는데 이사장은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한다. 부이사장은 1인내지 2인을 두는데 이사장의 업무처리를 돕는다. 모두 이사들 가운데에서 뽑는다.

③본 회는 명예 이사장 1인을 두는데 이사회가 덕망이 높은 인사를 정중히 초빙하여 맡게 한다. 명예이사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는 모두 무급직이다. 단, 교통비를 참작,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 부이사장, 이사가 임기중에 사직이나 다른 원인으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임기는 원래의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 ①매 회 이사회는 임기가 끝나기 1개월 전에 차기 이사를 추천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신임 이사회는 전임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 성립하고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선출한다.

제 10 조 : 이사회는 3개월마다 한 차례 회의를 소집·개최한다.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사고

로 결석할 때에는 부이사장이 대리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결석할 때에는 이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대리한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할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2조 : 이사가 유고로 인해 전조에 정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단, 각각의 이사는 이사 한 사람만의 위임을 받는다.

제13조 : ①본 회의는 비서장 1인을 두며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해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비서장은 이사회의 명을 받아 본 회의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 : 본 회의는 부비서장 1인내지 3인을 둔다. 비서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동의하여 임명한다. 해임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5조 : ①본 회의는 아래의 각처를 두어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한다.

1. 비서처
2. 문화사무처

3. 무역사무처
4. 법률사무처
5. 여행사무처
6. 종합사무처

②각 처에는 처장 1인을 두고 업무의 寡多를 보아 부처장 1인내지 2인, 전문요원, 組圓, 사무원, 고용인 약간명을 둘 수 있고 아울러 처 아래 과(科)로 나누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본 회는 필요한 경우에 인사실과 회계실을 둘 수 있다. 본 회가 해외 및 대륙지구에 설립한 지사에는 주임 각 1인을 두고 업무의 寡多를 보아 부주임 1인내지 2인을 둘 수 있으며 나머지 인원의 배치는 전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③제 2 항과 3항에서 정한 사업인원은 비서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직무와 인원의 분배는 직무표와 편성표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 본 회는 감사 6인을 두는데 기부인이 선발하여 초빙한다. 감사는 기금을 관리하고 예금을 감사하며 재무상황을 감독 및 결산장부 감사 등의 일을 한다.

제17조 : 감사의 임기, 결원, 급여 및 차기 감사의 추대 등은 모두 본 규정에서 이사에 관련된 규정을 準用한다.

제18조 : 본 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비서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동의한 고문 약간명을 초빙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를 겸임하는 비서장 외의

나머지 이사는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할 수 없다.

第 3 章 基金의 管理

제20조 :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와 동일하다.

제21조 : 본 회의 비서장은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업무회계 및 예산초안을 입안하여 이사회에 보고,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 : 본 회 기금의 보관 및 운용에 관해서는 회계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보관 및 운용보고서와 전년도 결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 통과를 거친 후에 감사에게 보내서 감사를 요청한다.

제23조 : 본 회의 회계년도에 집행한 업무 및 기금의 대차대조표는 모두 법에 따라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第 4 章 附 則

제24조 : ①본 회가 사정의 변경으로 기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에 따라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친 후에 해산할 수 있다.

②본 회는 해산 이후에 법에 의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잉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25조 : ①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본 규정은 민국 79년(1990년) 11월 21일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정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시행한다.

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組織規定

- 民國 80年(1991) 2月 26日理事長 審查・決定
- 全文 16條 條文

제 1 조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에 관련된 사무를 협조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양 지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이하 본 회라 약칭함)를 특별히 설립한다. 이에 기부규정에 따라 본조직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 ①본회는 기부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정부가 위탁한 양안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래의 각 처를 둔다.

1. 문화사무처
2. 무역사무처
3. 법률사무처
4. 여행사무처
5. 종합사무처
6. 비서처

②본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인사실과 회계실을 둘 수 있다.

제 3 조 : 본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해외 및 대륙지구에서 지

부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조직 및 인원의 편성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 본 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고문 약간명을 초빙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고문은 無給職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교통비를 참작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제 5 조 : 문화사무처는 아래 사항을 관장하여 처리한다.

1. 양안의 교육, 문화 및 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2. 양안의 학술, 과학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양안의 뉴스, 체육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대륙지구의 교육, 문화의 정보자료 수집 및 자문봉사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위탁사항,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기타 문화사무와 관련된 사항

제 6 조 : 무역사무처는 아래 사항을 관장하여 처리한다.

1. 양안의 무역교류에 관한 사항
2. 양안의 무역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륙지구에서의 상공업자의 무역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도에 관련된 사항
4. 대륙지구 무역정보자료의 수집 및 자문봉사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위탁사항,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기타 무역사무와 관련된 사항

제 7 조 : 법률사무처는 아래 사항을 관장 하여 처리한다.

1. 양안의 문서 검증 및 신분 증명에 관한 사항
2. 양안의 민사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양안 사이의 문서 송달, 수탁 조사 및 기타 사법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대륙지구의 관련 법규, 판례의 수집 및 자문봉사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위탁사항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사항

제 8 조 : 여행사무처는 아래의 사항을 관장하여 처리한다.

1. 양안 주민의 대만 및 대륙지구 출입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양안의 친지방문 여행의 지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대륙지구에 체류하는 대만지구 주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대륙여행 정보 자료의 수집 및 자문봉사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위탁사항,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기타 여행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 9 조 : 종합사무처는 아래의 사항을 관장하여 처리한다.

1. 대륙자료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출판, 발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획연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뉴스의 취급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컴퓨터시스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부의 위탁사항,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종합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10조 : 비서처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관장하여 처리한다.

1. 의사(議事) 및 업무통제에 관한 사항
2. 서무 및 출납에 관한 사항
3. 문서, 官印 및 자료분류화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련 사항

제11조 : 각 처에는 처장 1인을 두고 업무의 多寡를 보아 부처장 1인내지 2인을 둘 수 있다. 각 처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과(科)(組)를 나누어 일을 처리하고 과(조)장, 3급 전임요원, 2급 전임요원, 1급 전임요원, 조원, 사무원, 고용인을 둔다.

제12조 : 인사실에는 주임, 3급 전임요원, 2급 전임요원, 1급 전임요원, 조원, 사무원, 고용인을 둘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 회계실에는 주임, 3급 전임요원, 2급 전임요원, 1급 전임요원, 조원, 사무원, 고용인을 둘 수 있고 규정에 따라 회계, 통계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 ①각 단위에 소속한 인원의 편제는 비서장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정한다.

②각 처(실)에 소속한 인원의 임용은 비서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초빙하여 임명한다.

제15조 : 본 회에 소속한 인원의 직무등급, 봉급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 본 조직규정은 이사장이 조사하여 결정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하며 그 수정도 동일하다.

Ⅲ. 出 入 國 規 定

臺灣地區住民의大陸親知訪問規定

1. 현역군인 및 현직 공직자를 제외하고 대륙에 삼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륙으로 친지방문을 갈 수 있다.
2. 대륙의 친지방문은 매년 한 차례로 제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회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다.
3. 친지방문 3친등의 범위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친지방문 3친등 범위표〉

	血 親	인척(血親의 배우자)	인 척(배 우 자 의 血 親)	인척(배우자 血親의 배우자)
1친등(親 等 : 1촌 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부모. 양자·양녀의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또는 처의부모. 남편 전처의 아들, 부인 전남편의 아들. 남편 전처의 딸, 부인 전남편의 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의 부모, 처의부모. 남편 전처의 며느리, 사위, 부인 전남편의 며느리, 사위.
2친등(2 촌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조부모. 계외조부모. 손녀사위. 부인. 외손녀사위, 외손자며느리. 형제의 처. 자매의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또는 처의 조부모. 남편 또는 처의 외조부모. 남편의 형제, 처의 형제, 남편의 자매, 처의자매. 남편 전처의 손자, 손녀, 부인 전남편의 손자, 손녀. 부인 전처의 외손자, 외손녀, 부인 전남편의 외손자, 외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의 조부모, 처의 조부모. 남편의 외조부모 처의 외조부모. 남편 형제의 처부인 형제의 처. 남편 자매의 남편, 부인 자매의 남편. 남편 전처의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남편 전처의 외손자며느리, 외손녀사위. 부인 전남편의 외손자며느리, 외손녀사위.

<p>3친동(3촌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증손자, 증손녀. · 외증손자, 외증손녀. · 백부, 숙부, 고모. · 삼촌, 이모. · 조카, 조카딸. · 생질, 생질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증조부모. · 계외증조부모. · 증손자며느리, 증손녀사위. · 외증손자며느리, 외증손녀사위. · 백숙모, 고모부. · 외숙모, 이모부. · 조카며느리, 조카사위. · 외조카며느리, 외조카사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의 증조부모, 처의 외증조부모. · 남편의 외증조부모, 처의 외증조부모. · 남편의 고모, 백숙부, 처의 고모, 백숙부. · 남편의 외삼촌, 이모, 처의 외삼촌, 이모. · 남편의 조카딸, 처의 조카딸, 남편의 조카처의 조카. · 남편의 외조카, 처의 외조카. · 남편 친척의 증손자, 증손녀, 부인 전남편의 증손자, 증손녀. · 남편 친척의 외증손자, 외증손녀, 부인 전남편의 외증손자, 외증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의 증조부모, 처의 증조부모. · 남편의 외증조부모, 처의 외증조부모. · 남편의 백숙모, 고모부, 처의 백숙모, 고모부. · 남편의 외숙모, 이모부, 처의 외숙모, 이모부. · 남편의 조카며느리, 조카사위, 처의 조카며느리, 조카사위. · 남편의 외조카며느리, 외조카사위, 처의 외조카며느리, 외조카사위. · 남편 친척의 증손자며느리, 증손녀사위, 부인 전남편의 증손자며느리, 증손녀사위. · 남편 친척의 외증손자며느리, 외증손녀사위.
--	---	--	---

臺灣住民의大陸親知訪問時親等制限緩和措置

○ 民國 78年(1989) 8月 1日 行政院 臺77濟字
第21840號

1. 국민이 대륙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는 데 있어 친등의 제한을 3친등에서 4친등으로 완화한다.
2. 친지방문의 시간 및 횟수에 관한 1년 1회, 일회 3개월 체류 규정은 그대로 둔다.
3. 대륙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홍콩비자를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입국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臺灣住民의大陸親知訪問回數및 滯留期間緩和措置

○ 民國 79年(1990) 5月 26日 行政院 大陸工作會報
台79陸行字 第561號函

대만인의 대륙친지 방문횟수 및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완화한다.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체류기간은 매년 2년을 넘
지 못한다.」

大陸親知訪問에必要한具備書類와手續

1. 「출국후 제3국경유 대륙 친지 방문 登記表」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에서 받아올 수 있다.
2. 홍콩·마카오지역 出入國 申請書 1부를 작성해야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면 반명합판 사진 4장
 - (2) 국민신분증 사본심사(임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음)
 - (3) 국민신분증 사본 1부
 - (4) 호적사무소가 6개월이내에 심사, 발급한 호적등본 1부
(기혼자는 배우자의 호적등본, 미성년자 또는 미혼자는 부모의 호적등본, 共同事業所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호적등본 제출)
 - (5) 출입국증 발급비용 : 대만돈 NT1,000元(약 27,000원)
 - (6) 출입국증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주소를 명기한 회신용 봉투 첨부이상이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가 출입국 관리국을 대신하여 접수하는 서류이다. 이미 출국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본조의 수속을 할 필요가 없으며 登記만 하면 된다.
3. 각항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수속을 하면 본 회에 접수·등기된 날로부터 5근무일째 되는 날에 출입국관리국이 출

입국증을 심사·발급할 수 있는데 台北市 博愛路 172-1 號 안내센터 제18호 창구에서 출입국증을 수령하며 高雄市 에서 신청한 자는 中正4路 253號 6樓 출입국관리국 高雄 사무처에서 우송해 주기를 기다린다.

附註 : 민국 80년(1991) 5월 30일 내무부(內政部) 台80內警字 第932034號函 :

현행규정에 따라 대륙 친척을 방문하려는 자의 출입국 신청·등기 및 서류의 구비·보고를 민국80년(1991) 7 월 1일부터 간소화한다. 근무 책임기관·학교가 경찰 청 출입국 관리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심사·처리하도록 하며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의 접수·전달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접수번호 :

접수처리인 번호 · 성명 :

중화민국 대만 지역(① 출입)국 신청서 년 월 일											
개	성명	영문성명② (정자기입)					신 ③ <input type="checkbox"/> 일반인 분 <input type="checkbox"/>				
	原別 名名	성 <input type="checkbox"/> 男 별 <input type="checkbox"/> 女	본 적	省 (市)	縣 (市)	국민신분증 통일번호					
인	出年 生月 生日	前 民 國	年	月	日	연 령	병 ④ <input type="checkbox"/> 예비군 역 <input type="checkbox"/> 국민병	<input type="checkbox"/> 징집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면제	학 ⑤ 력		
	직 업	⑥ <input type="checkbox"/> 학원 및 직 <input type="checkbox"/> 관 및 부					여번() MFA 권호() OM				
자	현 및 주 소 화	⑦					혼상 <input type="checkbox"/> 未婚 <input type="checkbox"/> 既婚 인황 <input type="checkbox"/> 離婚 <input type="checkbox"/> 鰥 <input type="checkbox"/> 寡				
	호주 적소	縣 ⑧ (市)	市鄉 區鎮	村 里	隣	街 路	段	者 再	號之		
		심사이첩기관	적십자회	목적지	홍	공	取證(출입국증수령)방식 직 접 우 편				
⑨ 신청 및 출 입 고 사 항	大 陸 親 友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주	소
⑩ 대 만 친 지 상 황	관	계	성	명	출생년월일	생존여부	동행여부	현 주소			
	父										
	母										
	배우자										
	子 女										
이상 기입한 각항의 자료는 모두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으로 국가이익에 위배 되는 언행은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만약 위반했을 시엔 국법의 제재를 받겠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신청인 인장 대리신청인 </div>											
1.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최근 3개월內 에 찍은 정면 반명합판 탈모사진 4장을 사용할 것.					대행여행사 등록 번호						
2. 사진뒤에 성명, 출생일을 명기할 것.					회사 및 책임자 직 인						
3. 사진 한장은 폴로 부치고, 석장은 살짝 부칠 것.											
4. 동행하는 자녀는 따로 신청서를 기입하여 함께 제출·신청할 것. (사진붙이는 곳)											
							군번		주둔지		

	심사 이첩기관의 검사기록	출입국 관리국의 처리의견
중 화 민 국		
년	심사이첩 기관 인장	국민신분증 사본 앞면 붙일 것.
월 일		국민신분증 사본 뒷면 붙일것.

現段階公立學校教職員및從事者의 大陸親知訪問申請業務處理規定

○ 民國 78年(1989) 4月 19日 行政院 大陸業務會報台78
陸行字第142號函

1. 각급 공립학교의 교사나 직원 또는 잡급직 직원의 대륙지구 친지방문 신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①공립학교 교사나 직원 또는 잡급직 직원중 아래의 신분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륙지구 친지방문을 신청하도록 한다.
 - 가. 현역 군인 또는 현직 경찰관
 - 나. 군인·경찰학교의 교사나 직원 또는 잡급직 직원
 - 다. 대학·전문학교의 총학장, 독립단과대의 학장
 - 라.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방기밀과 관계되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
- ② 전향 제라호에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은 위탁기관에서 정한다.
3. 공립학교 교사나 직원 또는 잡급직 직원의 대륙지구 친지방문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친지방문자는 대륙에 체류하는 동안 공무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친지방문이외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여 따

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신청
수속하도록 한다.

5. 공립 학술연구기관 종사자의 대륙지구 친지방문신청은 본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6.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7. 본 규정의 처리 요항은 각 주관 기관이 따로 정한다.

現段階公立學校및公立學術研究機關 從事者(教育部主管部分)의大陸親知 訪問申請業務處理要項

○ 民國 78年(1989) 5月 1日 教育部台78
人字 第19496號函

1. 공립 각급 학교 및 공립 학술연구기관의 교직원·종사자들의 대륙지구 친지방문 신청업무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현단계공립학교직원및종사자의대륙친지방문신청업무처리 규정」(이하 본 업무규정으로 간략하게 칭함)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실시요항(이하 본 요항으로 간략하게 칭함)을 정한다.
2. 본 요항은 국립, 省(市)立 및 縣(市)立 각급 학교와 국립 중국의약연구소(國立中國醫藥研究所)에 적용된다.
3. ①본 업무규정 제 2 조에서 칭한 「관계 법령에 따라 대륙지구 친지방문을 신청하는」자는 다음과 같다.
 - 가. 중등이하 학교의 교장
 - 나. 각급 학교 교사나 직원(인사과나 경리과 직원 및 초빙 고용계약자 포함),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 기술자, 잡급직 직원
 - 다. 각급 학교의 軍籍이 없는 교련 교관

- ② 국립중국의약연구소 종사자중 소장을 제외한자는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 친지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4. 업무규정 제 2 조 제라호에서 말한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방기밀과 관계되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신청한 대륙지구 친지방문을 제한할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받은 학교(기관) 및 본인에게 수시로 통지한다. 위탁을 받았으나 통지를 받지 못한 자의 대륙지구 친지방문 신청안건은 근무기관이나 학교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알아 본 후에 처리해야 한다.
 5. 각급 공립학교와 국립중국의약연구소에서 겸직하고 있는 자는 대륙지구 친지방문 신청시 원래의 신분예 따라 인정 처리한다.
 6. 공립학교 교직원·종사자의 대륙지구 친지방문 신청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문병·장례참석일 경우에는 수시로 처리하며 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국립중국의약연구소 종사자의 대륙지구 친지방문 신청은 여름·겨울방학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관련 휴가신청 규정에 따른다.
 7. 공립학교 교직원·종사자 및 국립중국의약연구소 종사자의 대륙 친지방문 신청 안건은 교장이 소속 주관교육행정기관에 보고하며 기타 종사자는 근무하는 학교 또는 근무 기관이 중화민국 적십자회총회에 공문을 발송, 내무부(內政部)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으로 넘겨 심사·처리하도록 한다. 동시에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 각급 주관교육행정기관에도 부차적으로 통지한다. 규정에 따라 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중요한 임무를 아직 끝내지 못했거나 대리할 사람이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송달된다.

8. 학교 교직원·종사자 및 국립중국의약연구소 종사자의 대륙지구 친지방문, 문병, 장례참석의 범위와 신청조건, 필요한 서류 및 신청횟수, 체류연장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함락지구로 들어간 때에는 일반인의 관계 규정을 적용시켜 처리한다.
9. 기타 사유로 출국을 신청함에 있어 대륙지구 친지방문, 문병, 장례참석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출국전에 근무하는 학교나 기관에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고 내무부(內政部)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이첩, 등기되어 있는 것이면 대륙지구 친지방문, 문병, 장례참석을 하러 제3지역을 거쳐 대륙으로 가도록 한다. 원래 신청한 출국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입국후 30일 이내에 출국전에 했던 순서대로 보충하여 서류를 구비해 보고한다.
10. 업무규정 제4조에서 칭한 「공무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정부의 현행 「공무원근무법」 및 「국가기밀 보호법」에 열거한 각항의 보안유지 규정에 의거하며 직무상으로 알게 되었거나 기타(경로를 통해) 알게 된 기밀을

포함한다.

11. 교육부는 여름·겨울방학 전에 친척방문자의 의사에 따라 사전좌담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안내를 해주어야 하며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문의를 접수해야 한다.
12. 공립 유치원의 교직원·종사자는 본 요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본 요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정부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附註：민국80년(1991) 5월 30일 내무부 台80內警字

第932034號函：

현행규정에 따라 대륙 친척방문을 하려는 사람이 출입국 신청·등기와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한 안건은 민국 80년(1991) 7월 1일부터 간소화된다. 즉, 근무 책임기관, 학교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심사 처리하며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의 접수·전달을 거칠 필요가 없다.

現段階中央研究院職員의大陸 親知訪問申請業務處理要項

○ 民國 78年(1989) 5月 3日 中央研究院(78)台
人字第50324號函 審查決定

1. 본 요항은 행정원의 대륙업무회보(大陸業務會報)에 민국 78년(1989) 4월 19일 공포된 「현단계공립학교직원및종사자의대륙친지방문신청업무처리규정」 제 5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
2. 본원의 각 연구소, 처(處), 총무처의 각조(組), 실(室) 및 전산센터 종사자중 친지방문 규정에 합당한 專任연구자(초빙 인원으로서 본원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자), 직원(인사과와 경리과 직원 포함), 초빙고용계약자,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기술자·잡급직 직원 그리고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방기밀과 관계된 연구에 종사하는 자와 위탁기관이 인정하여 제한하는 자 이외의 사람들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대륙지구 친지방문을 신청하도록 한다.
3. 본원 직원이 대륙지구 친지방문을 신청할 경우에는(문병, 장례참석 포함)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勤務所·處·組·室 및 전산센터의 심사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본원에서 중화민국 적십자회총회에 공문을 발

송, 내무부(內務部)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이첩하여 심사·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출국전에 규정에 따라 휴가신청 수속을 해야 하며 본인이 근무규정에 따라 갖게 되는 휴가(休暇) 또는 공적인 일로 인한 휴가(事暇)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신청한다. 장례 참석 휴가는 休暇·事暇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다.

4. 대륙지구 친지방문(문병, 장례참석을 포함)의 범위, 조건, 횟수, 구비서류와 체류연장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함락지구로 들어간 경우의 처리는 정부 주관 기관에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인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5. 各所·處는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방기밀과 관계된 연구에 종사하는 자의 대륙지구 친지방문 안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送達할 수 없다. 위탁기관이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원(所·處) 및 본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6. 各所·處·組·室 및 전산센터 종사자들이 동시에 대륙지구의 친지를 방문할 경우 그 인원 수는 각 기관에서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公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친지방문자는 대륙지구 체류기간동안 정부의 현행「공무원 근무법」 및 「국가기밀보호법」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기밀(직무상으로 알게된 기밀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알게된 기밀을 포함한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8. 기타 사유로 출국을 신청했을 경우 대륙지구 친지방문(문병 또는 장례참석 포함)의 규정에 부합되고 출국전에 本院에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였으며 내무부(內政部)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이첩·등기된 경우라면 제3지역을 통하여 대륙지구로 친척방문을 할 수 있다. 원래 신청한 출국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후 30일이내에 이전에 했던 절차대로 보충 보고한다.
9. 본 요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0. 본 요항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모두 정부의 관계 법령에 의거해 처리한다.
11. 본 요항은 원장이 심사·결정한 후 시행한다.

附註 : 民國80年(1991) 5월 30일 내무부(內政部) 台80內警字第932034號函:

현행 규정에 따른 대륙 친척방문자의 출입국 신청·등기 및 서류 구비 보고는 民國80年(1991) 7월 1일부터 간소화된다. 즉, 근무 책임기관, 학교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공문을 발송·심사, 처리하며 중화민국 적십자회총회가 대신하여 접수·전달할 필요가 없다.

現段階大陸同胞의臺灣問病및 葬禮參席申請業務處理規定

- 民國78年(1989) 5月 11日 行政院 大陸業務會報台78陸行字第202號函
- 民國79年(1990) 6月 15日 行政院 大陸業務會報台79陸行字第687號函修正

I. 申請對象

1. 대륙동포의 대만에 있는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래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문병 또는 장례참석을 위하여 대만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병을 앓거나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할 경우
 - 나. 부모, 배우자가 중병을 앓거나 중상을 입었고 나이가 80세가 넘어 행동이 곤란한 경우
 - 다.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합당한 문병, 장례 참석 대상중 그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II. 申請方式

1. 國 內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 홍콩 지역을 경유하여 대만에 와야 한다. 신청절차는 대만에 있는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하여 내무부(內政部)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으로 송달하며 대만에 있는 기타 親友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또는 문병 대상의 위탁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엔 수리되지 않는다.

2. 해외 및 홍콩지역

가. 신청인이 이미 홍콩지역에 도착한 경우는 홍콩 金鐘道 89號 奔達센타 東座4樓의 홍콩 중화여행사에 신청해야 하며(또는九龍 何文田 自由道 2號 홍콩九龍 救濟위원회內 대륙동포의 대만방문 안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국에 이첩·심사를 통해 여행증이 발급되면 대만에 있는 친지에게 전해 주거나 중화여행사에 보내어 전달한다.

나. 신청인이 해외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는 우리측 해외 공관 또는 외무부(外交部)가 지정한 해외 주재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국에 이첩되어 심사를 통해 여행증이 발급되면 대만에 있는 친숙에게 전해

주거나 또는 해외 주재 공관이나 기관에 보내어 전달한다.

Ⅲ. 具備書類

1. 여행증 신청서 1부(반명함판 사진 4장 첨부)
2. 보증서 1부
3. 기한내에 대만을 떠난다는 신청인의 서약서 1부
4. 공립의원 또는 보사부가 승인한 의원에서 작성한 진단서 또는 사망 증명서
5. 문병, 장례참석 대상의 호적등본 등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 자매 관계를 증명할 만한 서류
6. 제 3 지역의 재입국 비자, 제 3 지역의 거류증 또는 홍콩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이 대륙에 있어서 제 3 지역의 재입국 비자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홍콩에 도착한 후, 홍콩정부가 발급한 회항증명서(홍콩에 다시 돌아온다는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중화여행사에 대만방문 여행증을 신청한다.)
7. 증명서 발급비 NT 200 元

Ⅳ. 其他規定

1. 대륙에 문병하러 가는 경우는 대륙의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신청하도록 제한한다.

2. 장례참석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1회 신청하도록 제한한다.
3. 신청인이 「국가비상총동원시기의 국가보안법시행세칙」 제12조제 1 호부터 4호(1. 공산당 또는 기타 반란조직에 참가했거나 활동한자 2. 폭력이나 테러조직에 참가했거나 활동한 자 3. 내란죄, 外患罪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4. 대만지역 밖에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나 상습적인 범죄자)까지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입국 검사시에는 문병, 장례참석 여행증외에 귀국 탑승권 및 제 3 지역의 유효한 재입국 비자등 (그 유효기간은 2개월이상이어야 한다)도 검사해야 한다. 증빙서류가 불완전하거나 탑승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비행기로 돌려 보낸다.
5. 신청인이 소지한 중공 여권 또는 통행증 및 제 3 지역의 유효한 재입국 비자는 입국시에 出入國管理局 공항사무처에 맡겨 보관하며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출국시에 돌려 받는다.
6. 신청인은 입국후 3일내에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등기수속을 해야한다.
7. 신청인의 대만 체류기간은 2개월로 제한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市·縣

(市)의 경찰국에 신청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이첩·심사되어 체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8. 입국 검역은 보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신청인·대리신청인·보증인은 서약서의 사항 및 보증책임항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
10. 본 업무규정중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검토하여 수정한다.

附註 : 민국80년(1991) 2월 8일 行政院 大륙위원회(80)

陸法字第0241號函 :

「현단계대륙동포의대만문병및장례참석신청업무처리 규정」에서 칭한 「父母」의 의미에는 「계부·계모」도 포함된다.

접수번호 :

접수처리인 번호, 성명 :

대륙 동포의 대만 문명 여행증 신청서 年 月 日										
장래참석										
개 인 자 료	성명				영문성명(정자기입)					
	原別 名名	성 별	본 적	省 (市)	縣 (市)	신분증명번호				
	出年 月日 生日	年 月 日		연 령	학 력	거주지 <input type="checkbox"/> 중국대륙 <input type="checkbox"/>				
	직업	협작기 관 및 직무			취 단 과 직					
	혈 소					전 화				
주 후 소					전 화					
신 청 및 참 고 사 항	신사 청유	<input type="checkbox"/> 문명 <input type="checkbox"/> 문상	<input type="checkbox"/> 1차 신청 <input type="checkbox"/> 再次신청	경제 유3 하지 는역	<input type="checkbox"/> 홍콩 우송	대 만 친 속 數	필요없을 것을 (우시 회 부 접 부)			
	문 상 기 본 · 문 명 자 료 대 상	관 계	성 명	出 生 年 月 日	본 적	학 력	신 분			
		직 업	근 기 부 관		직 위					
		주 적 소	縣 (市)	市 鄉 區 鎮	村 理	隣 街 路	段 巷 再 號 之	전 화		
	대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연 령	본 적	주 소 및 전 화				
친 속 상 황	관 계	성 명	出 生 年 月 日	생 존 여 부	동 행 여 부	대 만 방 문 여 부	현 주 소			
	父									
	母									
	배 우 자									
子 女										
뒷면의 附註 사항을 상세히 읽을것. 신 청 인 대 리 신 청 인 인 장										
· 같은 종류의 최근 3개월 내의 반명합판 정면 탈모사진 4장사 용할 것. · 사진 뒷면에 성명·출생 일시 明註할 것. · 사진 1장은 풀로 부칠 것. 3장은 살 짝 부칠 것. (사진 붙이는 곳)			대리여행사		회사 및 책임자 직인					
			등록 번호							

附註	출입국관리국의 처리의견	이첩·심사기관의 의견 기입 및 인장
<p>신청인이 아래의 국가 비상 총동원시기 국가 안전법 시행세칙 제2 조제1호에서 4호까지 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허가 하지 않는다.</p> <p>1. 공산당이나 기타 반 란조직에 참가했거 나 활동한 자.</p> <p>2. 폭력 또는 테러조직 에 참가했거나 활 동한 자.</p> <p>3. 내란죄에 관련되었 거나 外患罪의 중 대혐의가 있는 자.</p> <p>4. 대만지역 밖에서 중 대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습범죄자.</p>		

대륙동포의 대만방문 문병
장례참석 서약서

본인은 문병
장례참석 의 목적으로 대만방문을 신청하며, 대

만체류기간은 2개월로 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기한내에
대만을 떠나고자 합니다. 대만에 있는 동안 법령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한이 넘었는데도 대만을 떠나지 않을 경
우 주관기관의 송환·출국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출입국 관리국 앞

서 약 인 :

대륙주소 :

대만의 親友

및 그 주소 :

중화민국 년 월 일

大陸同胞의臺灣定着年齡을75歲 에서70歲로낮출경우의審査基準

○ 民國 78年(1989) 11月 10日 行政院 大陸業務會報台78
陸行字第666號函

1. 대만에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이 있는 대륙동포의 대만정착 연령은 만75세를 원칙으로 하나 아래 열거한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0세로 낮출 수 있다.
가. 대륙에 의탁할 데가 없고 봉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나. 대만의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중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다. 원래 대만에 호적이 있었으나 대륙이 함락되기 전에 대만에서 대륙으로 간 경우
2. 본 기준에 의거해 대만정착을 신청하는 경우 대만 또는 대륙지구의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본 기준에 의거해 대만정착을 신청하는 자가 국가안전법 시행세칙 제12조제 1 호에서 4호까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단, 중국공산당 및 그 외곽조직이나 주변정파에 참가했거나 중공 黨·政·軍기구의 직무를 담당했더라도 제 3 지역에 도착한 후 원래 참가했던 조직을 떠났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자는 허가할 수 있다.

大陸同胞의臺灣定着申請規定

○ 民國 80年(1991) 5月 8日 行政院 大陸委員會(80)
陸法字第0961號函 修正

1. 申請對象

대륙동포중 현재 연령이 75세를 넘었거나 혹은 12세 미만 이고 대만에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는자는 대만정착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아래 열거한 경우중 하나에 해당 되고 대만지구 또는 대륙지구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출 수 있다.

가. 대륙에 의탁할 자가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나. 대만의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중병에 걸렸으나 돌 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다. 원래 호적이 대만에 있었으나 대륙함락전에 대만에서 대륙으로 간 경우

2. 申請方式

① 신청인의 연령이 현재 70세를 넘은 경우에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신청한다

가. 대륙에 있는 경우

홍콩지역을 경유해서 대만에 와야 하며 대만에 있는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국대륙재난동포구제총회」에 대신 신청하면 내무부(內政部)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이 심사·처리한다. 대만에 있는 親友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만에 있는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의 위탁서를 따로 첨부해야 한다.

(i) 입국 신청서 1부 (사진 4장 포함)

(ii) 대륙 거주민 신분증 또는 홍콩, 마카오 통행증 사본

(iii) 위탁대상의 입국보증서 1부

(iv) 대만에 있는 친족의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

나. 홍콩·마카오 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홍콩九龍 救濟委員會」(九龍 何文田 自由道 2號)에 신청하며 출입국관리국에 이첩·심사되어 처리된다

(i) 입국 신청서 1부(사진 4장 포함)

(ii) 홍콩·마카오 통행증 사본

(iii) 위탁대상의 입국보증서 1부

(iv) 대만에 있는 친족의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

다. 홍콩·마카오 이외의 기타 지역에 도착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측 해외주재 공관 또는

외무부의 대리기구에 신청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이첩

· 심사된다

(i) 입국신청서 1부(사진 4장 포함)

(ii) 중공 여권

(iii) 해외에 이르게된 경과 설명서

(iv) 의탁대상의 입국보증서 1부

(v) 대만에 있는 친족의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

- ② 신청인의 현재 연령이 12세미만인 경우 대륙을 떠나 홍콩, 마카오 또는 기타 자유지역에 도착한 후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大陸滯留臺灣省籍의前職軍人및그眷屬 의臺灣歸還定着申請業務處理規定

- 民國78年(1989年) 4月 18日 行政院 大陸業務會報台78陸行字第139號函
- 民國79年(1989) 11月 10日 行政院 大陸業務會報台78陸行字第665號函 修正

I. 申請對象

1. 대만성 광복초기에 국군에 지원한 대만성적의 동포중 현재 대륙에 체류,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대만에로의 귀환, 정착을 원할 경우 신청을 하면 대만省, 台北市, 高雄市 정부가 이를 심사 국방부의 재심, 결정을 거쳐 귀환허가여부를 결정한다.
2. 신청인과 동반하여 대만에 귀환, 정착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로 제한한다.

II. 申請方式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는 대만에 있는 친속이 출입국 관리국에 대리로 신청해야 하며 홍콩을 경유하여 대만으로 와야 한다. 이미 홍콩에 도착한 경우에는 홍콩 金鐘道 89號 奔達센터 東座 4樓 홍콩중화여행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九龍 何文田 自由道 2號 홍콩九龍 구제위원회內 대

륙동포 대만방문 안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출입국 관리국에 이첩, 심사되어 처리 된다.

Ⅲ. 具備書類

1. 대만 귀환 신청서 1부(반명합판 사진 4장)
2. 보증서 1부
3.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
4. 중국공산당 및 그 외곽조직, 주변정파에 참가했거나 중공 黨·政·軍 기관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자수해야 하며 제 3 지역에서 원래 참여했던 조직의 탈퇴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선언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증명서 발급비 NT 200元

Ⅳ. 關係 規定

1. 「국가비상총동원시기의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제 1호에서 제 4호까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2. 중국공산당 및 그 외곽조직에 참여하고 있고 중공 黨·政·軍기관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 보고하여야 하며 제 3 지역에서 그 조직을 탈퇴함을 선언하면 「반란처벌조례」의 자수규정에 준하

여 그 조례의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대히 처리한다.

3. 대만에 문병·장례참석하러 오는 경우는 일반 대륙동포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신청서중 「당파 조직에 참가」欄은 사실대로 써 넣어야 하며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기입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조사하여 발각되면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5. 입국후 15일이내에 입국증 副本을 가지고 거주지 호적사무소에 가서 호적설정 수속을 해야 한다.
6. 대만 귀환, 정착신청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먼저 대만을 한 차례 방문하여 상황을 조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체류기간은 3개월로 제한한다. 대만에 체류하는 동안 호적을 재설정하여 정착하는 수속을 하지 않은 자가 대륙에 돌아간 후에 대만에 정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륙에 돌아간 후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7. 본 업무규정 중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수정한다.

첨부 1.

접수번호

접수처리인 번호, 성명 :

대륙 체류 대만성적의 前군인 및 그 권속의 대만귀환 신청서										
年 月 日										
개	성명	原別 名名							성별	
	본적	省 (市)	縣 (市)	신분증명 번호						
인	출생일	연령		학력	직업					
	현직기관 및 직무				참당판 가단직					
자	현주소						전화			
	대만주소						전화			
신청 및 참고 사항	신사 청유	정착거주	<input type="checkbox"/> 1차 신청 <input type="checkbox"/> 再次 신청		수령 방식	<input type="checkbox"/> 우송 <input type="checkbox"/> 대만의 親友가 수령함				
	대만의 親友	관계	성명	연령	본적	주소 및 전화				
	대신청 리인	관계	성명	연령	본적	주소 및 전화				
대륙 친속 상황	관계	성명	出生年月日	생존여부	동행여부	이전의 대만방문경험		현 주소		
	父									
	母									
	배우자									
	子 女									
※ 주의사항 신청인이 아래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못한다. (1) 공산당이나 기타 반란조직에 참여했거나 그 활동을 한자 (2) 폭력 또는 테러조직에 참가했거나 그 활동을 한자 (3) 내란죄, 외환죄의 중대한 혐의로 받고 있 는 자										
· 전항 제1호의 경우, 자수했고 공산당 또는 기 타 관련 조직을 이탈한다고 선언한 자는 입국 할 수 있으나, 자수 및 선언을 하지 않은자는 입국후 의법 처리한다.										

신청인

(인장)

대리 신청인

(인장)

첨부 3.

선 언 서

본인은 원래 조직에 참가했으나 이에 이탈할 것을 선언하며, 입국후 중화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중화민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자수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항공경찰국

基隆항만사무 경찰서

高雄항만사무 경찰서 앞

선 언 인

중화민국 년 월 일

註 : 1. 중국공산당 및 그 외곽조직, 주변 정파에 참가했거나 공산당 정부나 군사기관에서 직무를 담당했었지만 자수를 한 경우 반란처벌조례 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불기소나 감형 혹은 형면제 처분을 해주도록 한다.

2. 본 선언서는 선언인이 한가지 양식으로 2부를 기입하여 1부는 출입국관리국에 보내고 1부는 항공경찰국이나 항만사무경찰서에 보낸다.

大陸滯留臺灣省籍의前職軍人·家族의 臺灣歸還定着時迎接및定着業務處理要點

○ 民國七八年(1989) 3月 27日 行政院 大陸工作會報
臺78 陸行字 第139號 書翰

I. 目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현단계 대륙정책의 요구에 부합하여, 대륙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 省籍의 전직 군인과 가족이 대만으로 귀환하여 정착하는데 있어서 적시에 필요한 영접 업무와 정착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로써 그들로 하여금 두터운 동포애와 민주·자유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하고자 함이다.

II. 根 據

1. 행정원 대륙공작회가 보고한 민국(民國) 77년(1988) 12월 24일 「대륙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 省籍의 전직 군인과 가족이 대만으로 귀환하여 정착하는 사업 협조회(滯留大陸臺籍前國軍人員及眷屬返臺定居作業協調會)」의 결의
2. 「대륙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 省籍의 전직 군인과 가족이 대만으로 귀환하여 정착할 때의 신청 사업 규정」

III. 본 요점의 영접 업무와 정착 사업은 민국(民國)78년

(1989) 1월 12일 대륙공작회가 협의회의에 행한 보고 결정에 의거하여 성(省), 시(市) 정부가 주관하고,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중국대륙재난동포구제총회」(大陸同胞來臺服務處; 대륙 동포의 대만 방문 업무처)가 협력하며, 관계 사업의 요점과 분업 관계는 첨부된 표와 같다.

IV. 본 사업의 요점 중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상황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정 보충한다.

대륙체류 대만성적의 전직군인·가족의 대만귀환·정착
시 영접 및 정착업무 사업의 분장표

항 목	업 무 요 점	주 관 부 서	협조부서	비 고
1. 접수 신청과 신분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성명, 연령, 신분, 군복무시 부서, 직급, 입대 년월 일 등의 복무자료를 조사한다. 2. 개인의 대륙에서의 신분, 주소, 가족 등의 상황과 안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다. 3. 개인의 대만에 있는 교우관계, 주소, 전화, 직업 등의 자료를 조사한다. 4. 전직 군인이었는지의 사실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내무부(출입국 관리국 포함)행정원 보도회(輔導會)와 省, 市 정부에통보한다. 	1에서 3까지는 내무부, 대만 省정부, 대북(臺北)시, 고웅(高雄)시정부 4는 국방부		
2. 출입국심사와 영접 업무 및 위문과 정착을 준비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업무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입국을 심의 결정한다. 2. 관계기관에 통보할 사항 (1) 대륙동포 대만방문 복무처는 홍콩지역과 입국전의 업무사항 처리를 준비한다. 			

	<p>(2) 대만성 각 현(縣)·市정부, 臺北市, 고웅(高雄) 시 정부는 비행기(혹은 선박) 영접과 기타 접대사무 처리를 준비한다.</p> <p>(3) 보도회는 영접업무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p>	<p>1. 내무부</p> <p>2. (1) 대륙동포 대만방문 복무처(大陸同胞來臺服務處)</p> <p>(2)省·市정부</p> <p>(3)행정원 보도회(輔導會)</p>		
<p>3. 대만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홍콩에도 착한 이후의 영접업무</p>	<p>1. 대만으로 돌아가는 출입국 증명서 수속과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일 등의 처리를 돕는다.</p> <p>2. 숙식문제를 대신 처리하며 환전 등을 안내한다.</p> <p>3. 홍콩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대행해준다.</p> <p>4. 국가 상황에 대한 자료와 안내 책자를 제공한다.</p> <p>5. 대만 방문을 식별해 주는 증명을 제공한다.</p> <p>6. 비행장 업무와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p>	<p>대륙동포 대만방문 복무처(大陸同胞來臺服務處)</p>	<p>출입국 관리국</p>	<p>소요되는 예산 구 총(대륙재난동포구제총회)이 배정한다.</p>

<p>4. 대만으 로 귀환 하는 사 람 들 이 입 국 한 이 후 의 영접업무</p>	<p>1. 입국 심사, 입국 통관, 화 물 검사 등의 수속을 돕는 다. 또한 정부를 대표하여 위문금 2만원(New Taiwan Dollar, 한화 약 54만원 상 당)을 지급한다.</p> <p>2.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비행 기(혹은 선박)를 마중토록 하고 만일 친구가 없어서 이를 마중할수 없다면 숙식 을 적절히 제공하고 교통수 단을 지원하여 목적지까지 보내주도록 한다.</p> <p>3. 輔導會 각 현·시 영민 복 무처는 사람을 보내어 위문 하고 적당한 안내와 연락을 제공한다.</p>	<p>1. 대륙동포 대만 방문 복무처(大 陸同胞來台服務 處)</p> <p>2. 대만성 정부, 각 현·시정부, 臺北市, 高雄市 정부</p> <p>3. 행정원 보도회</p>		
<p>5. 대만으 로 귀환 하여 거 처를 정 한 후의 정착 배 려</p>	<p>호적 설정 수속을 마친 후, 현행 부조(扶助)와 복지 법 규에 의거해 처리한다.</p>	<p>정부 대북시 정부 고웅시 정부</p>		

退役 혹은轉役한國軍將校·士兵의 死亡과 遺留 財産및物品의處理法

- 民國七十年(1981) 9月 23日 行政院
台70防字 第13613號 書翰 決定
- 民國七十一年(1982) 3月 3日 行政
院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 補壹字 第
3449號令修正發表(71)
- 本 處理法은 國軍退除役死亡處理法
및 遺留財産處理法의 併合修正임
- 全文은 16條 條文

제 1 조 : 행정원 퇴역군인보도위원회(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 ; 이하 본회라 약칭함)는 퇴역 혹은 전역한 군인(이하 榮民이라 약칭함)의 사망과 유류 재산 및 물품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 본 처리법에서 말하는 사망과 유류 재산 및 물품이란 국군 퇴·전역 장교 사병 보도조례(輔導條例) 제 2 조에 열거된 본會 輔導 정착을 거친 독신 榮民과 그들의 유류 재산 및 물품에 한정한다. 유족이 있는 榮民은 그 유족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정착시킨 기관이 협조한다.

제 3 조 : ①榮民이 사망했을 때에는 마땅히 정착기관이 상황

을 참작하여 빈소를 설치하여 장례를 치른다. 호적 말소를 위해서는 「이미 X년 X월 X일에 호적에서 말소한다.」라는 스탬프와 인수받아 처리하는 사람의 도장을 찍은 사망진단서(격식은 첨부서류 1과 같음), 사망통지서(격식은 첨부서류 2와 같음), 留物의 명세서(첨부서류 3과 같음)를 동봉하여 계통보고 혹은 본 회에 이첩보고하여 제명한다. 만일 유류 재산과 물품이 많고 잡다하여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먼저 보고하여 제명하고 난 후에 유물 처리를 보고한다.

②전항에서 칭하는 사망진단서는 치료병원이 발급한다. 그러나 사고 사망자(자살, 타살 혹은 자동차에 치어 사망하였거나 익사한 경우 등)는 마땅히 해당 관할법원 검찰청에 보고하여 검시를 요청, 사체검시사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 4 조 : 사망한 榮民이 조사를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족이 있는 사람이면 사망 통지서를 그 유족에게 통지하여 장례와 뒷일을 처리하게 한다.

제 5 조 : 사망한 榮民이 공공보험(公保), 노동보험(榮民), 생명보험(人壽保險) 혹은 기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시사망증명서와 호적등본을 동봉하여 그 정착기관과 보험기관에 보내서 위로금과 사망에 따른 급여 혹은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 ①사망한 榮民의 시신은 규정에 따라 殮(殮)하여 입 관하여야 하는데 정착기관과 유산으로 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화장한다.

②전항(項)의 매장(화장) 허가의 신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화장하는 자는 유골을 납골 단지에 넣고 성명, 본적, 출생년월일 및 사망일을 새겨서 부근의 군인 공동묘지 납골당(혹은 기관이 자체에서 설립한 납골당)으로 보내어 보존해야 한다. 매장하는 자는 묘비를 세우고 성명, 본적, 출생년월일 및 사망일을 새겨야 하며 또한 정착기관이 기록을 작성하여 계통보고 혹은 본 회에 이첩보고하고 등록하여 비치해 둔다.

제 7 조 : ①榮民이 사망한 후에 그의 유류 재산과 물품은 정착기관이 정리를 책임진다. 또한 사망인이 생전에 보고한 대만에 있는 유산 계승자 혹은 유언으로 지정한 계승자에게 통지하여 보증인을 세워서 모두 수령하게 한다. 정착기관은 또한 그 유산 계승자 혹은 유언으로 지정한 계승자의 성명, 연령, 직업, 신분증 번호, 주소 등과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수령한 재산과 물품의 이름, 수량 등을 상세히 열거한 리스트를 인수증과 함께 本 會로 보내어 대조 보관하며 동시에 그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참조를 위해 비치해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류 재산과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는 관계 증명을 갖추어 정착기관에 제출하여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 ①榮民이 사망하였는데 만약 계승자 혹은 유언으로 지정한 계승자가 대만에 없을 때 그가 남긴 재산과 물품은 정착기관이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장례비를 지불하는 외에는 모두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현금 : 정착기관이 즉시 본 회로 보내어 검사·수령한 후에 다시 본 회가 일괄하여 황금을 구매·봉합해서 은행 보관 전용함에 넣어 보관하며 또한 장부를 만들어 상세히登記한다.
2. 보험이익 : 각종 보험으로 얻어지는 보험 이익은 대만에 다른 수익인(受益人)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정착기관이 대신 수령한 후 즉시 본 회로 보내어 검사·수령한 다음 현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위로금 : 수령하게 되는 위로금은 정착기관이 대신 청구하여 수령한 다음 즉시 본 회로 보내어 검사·수령한 후 현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국군동포저축회(同胞儲蓄會)가 대신 처리한 榮民저축예금은 정착기관이 통장을 보내 본 회가 수령한 후 현금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그러나 군인 저축 규정에 의거해 저축된 예금은 군인 저축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유물

- 가. 금은괴(金銀塊), 현금, 외국화폐 및 금·은 혹은 기타 패물은 일률적으로 정착기관이 면밀히 봉합하여 전문 배달 혹은 가격표시 우편물로 본 회에 보내어 검사·수령하게 하고 등기한 후 상자에 넣어 봉합하여 보관한다.
- 나. 사진, 훈장, 일기와 같이 기념성이 있는 물품은 일률적으로 면밀히 봉합하여 우편으로 본 회에 보관한다.
- 다. 기타 가치가 있는 물품은 일률적으로 정착기관의 매각을 통해 얻어진 대금은 본 회로 보내 현금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 라. 매각할 방법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 혹은 잡동사니 물품은 정착기관이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해야 하며, 또한 그 결과를 우편으로 본 회에 보내 참조를 위해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6. 기타 재물 : 예금통장, 예금증서를 포괄하는 각종 유가증권 등의 재물은 이상의 각 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遺留 부동산은 본 회가 법원에 유산 관리인 임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한 후에 다시 관계 증명서류를 동봉하여 관할 토지 행정기관에 유산 관리인 등기를 신청한다. 또한 법원에 청구하고 나서 공시최고(公示催告) 기한이 만료된 후에, 채권자가 채권을 표명한다거나 증여받을 사람이 증여받기를 원한다는 성명이 없을 시에 본 회는 재산

대리 관리 행사에 들어가며 그 수익은 현금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②榮民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합법적 수속을 취득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거나 혹은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정착기관이 아래의 방식에 의거해 처리한다.

1. 건축 개량물인 경우 만일 건물세 납부 혹은 수도 전기 납부 증빙서류가 있다면 본 회는 법원에 유산 관리인임을 지정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시최고 기한 만료를 기다린 후에 토지 소유권자에게 통지하여 15일 이내에 지상물(地上物)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혹은 그 건축 개량물 구조가 미미하여 자산가치를 감정해 보건대 사법(司法) 비용을 지불하기에도 부족하다면 토지 소유권자에게 통지하여 보상을 타협한 후에 토지를 반환한다. 만일 토지 소유권자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본 회는 계속 협조 처리할 방법을 세우는 외에 본 회는 재산 대리 관리 행사에 들어가며 그 수익은 현금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2. 농작물인 경우 만일 토지의 사용에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토지 소유권자와 상의하여 지상물에 대해 정부 규정 가격에 의거해 보상토록 한 후에 토지를 반환한다. 토지 소유권자가 보상을 거절할 때에는 前號의 후반부 규정에 비추어 처리한다. 그것이 합부로 개간한 토지에 속한

다면 지상물의 자산 가치 상황을 살펴 토지 소유권자와 보상을 협상한 후에 토지를 반환한다.

3. 전2호의 건축 개량물 혹은 농작물이 그 사용했던 토지가 공지(公地)일 때에는 먼저 토지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보상을 협상한 후에 토지를 반환한다. 만일 토지 관리기관이 통지를 받은 후 일개월 이내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지상물은 본 회가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4. 공유토지를 불하받았는데 아직 지가(地價)를 완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遺留 지상재배물 처리를 완료한 후에 토지를 반환한다. 그것이 타인이 불하받은 공유토지를 양도받은 경우일 때 법에 의거해 그 불하낸 것을 취소토록 서면으로 청구한다.
5.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는 관계 법률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 9 조 : 榮民이 사망한 후에 남긴 재물이 필요한 장례비로 지불되는 외에 남는 것이 있을 때, 정착기관 혹은 그 친구가 祭祀를 원한다면 남는 일부분의 금액을 참작하여 정착기관이 제사기금 보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은행기금은 은행에 전용 구좌를 두어 원금은 남기고 이자만 지급하는 2년 만기 이상의 저축예금으로 하고 제사지낼 사람이 봄·가을 명절날에(청명절 혹은 중추절 등) 정착기관과 협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제사를 집행한다. 제사후에는 구입

영수증을 정착기관으로 보내고 매년 연말에 본 회로 결산 보고한다.

제10조 : ① 榮民이 실종된 경우 그 소유 재산은 본 회가 비송사건법(非訟事件法) 제49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본 회를 재산 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 관리는 遺留 재산 및 물품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 榮民의 유산은 법에 의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 본 회가 보관하는 榮民의 遺留 재산 및 물품은 일체 지출하거나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 ①본 회는 보관하는 遺留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대륙 광복 이후에 각 해당 사망 榮民의 원적(原籍)와 유산 계승자, 혹은 유언으로 지정한 계승자나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 소재지에 일정 기간 공고해야 하고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보증인을 내세워서 수령토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遺留재산 및 물품은 일정 기간의 공고를 통하여 기한이 만료되어도 수령하는 사람이 없을 때 본 회가 법정 절차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14조 : ①본 회의 輔導와 정착을 거치지 않은 榮民이 사망한 후에 그의 장례에 대해서는 유족이 처리하며 유족이 없

는 경우에는 그 친구가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본 회의 각 지역 사무기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친구가 없는 경우는 본 회의 각 지역 사무기구가 처리한다.

②본 회의 輔導와 정착을 거치지 않은 榮民이 사망한 후에 만일 대만에 계승자나 유언으로 지정한 계승자 혹은 증여 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의 遺留재산 및 물품을 친구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처리인이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 본 회가 관할구역의 경찰기관 혹은 예속 관할구역 사령부 혹은 그 친구나 이웃의 통지에 근거해 처리할 때에는 제 8 조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 15조 : 본 회의 輔導와 정착을 거친 의민(義民 ; 국민당 정부에 협력한 反共 민간인), 반공 귀순義士 및 대륙에 거주하는 榮民동포(大陸榮胞) 등이 사망하였을 때 그 遺留재산 및 물품은 본 법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제 16조 :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1.

사 망 진 단 서

字第

호(號)

1. 성 명	2. 출생별		
3. 출생 년 월 일	민국(전) 년 월 일(만 세)		
4. 본 적			
5. 국민신분증 혹은 호구 명부 자호 (字號)	자(字)	호(號)의	
6. 현 주 소			
7. 혼 인 상 황	미혼 : 기혼 : 홀아비 : 과부 : 이혼 : 불명 :		
8. 직 업	업무	직위	
9. 사 망 일	민국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10. 사 망 장 소			
11. 사 망 원 인			
		병 명	사망전 발병기간
1.	사망의 직접 원인	갑	
	상기 사인을 야기한 요인 및 병증(病症)	을 병	
2.	기타 신체 상황		
서명			
(서명 및 도장)			
원 장			
字第 號증서			
의 사			
중화민국 년 월 일 주소			

설명 : 사망원인은 반드시 위생기관이 정한 국제분류표에 의거해 질병명칭을 분별해 기입할 것.

출생별이란 장남·삼녀(三女)와 같이 남녀 출생 서열을 가리킨다.

첨부 2.

대만에 있는 친속			사 망 구 분					성 명	국 군 퇴 역 군 인
주 상 세 소 한	자 호 字 號	국 민 신 분 증 號	관 사 망 자 와 의 계	매 장 장 소	사 망 원 인	입 원 날 자	안 치 부 서		
									사 망 통 지 서
			성 명						
				附 記	입 관 시 상 황	치 료 과 정	소 재 지		본 적
	직 업								
			성 별						직 업
			본 적						자 호 字 號 대

첨부 3.

				사 망 유 물 명 칭	성 명	국 군 퇴 역 군 인 사 망 유 물 정 리 부	년 월 일
				수 량	연 령		
				처 리 상 황			
				비 고	본 적		

大陸滯留臺灣省籍同胞의臺灣 親知訪問申請 處理規定

○ 民國80年(1991) 5月 9日 行政院
大陸委員會(80) 陸法字 第0986號
書翰 修正

I. 申請條件

1. 民國 38년(1949) 이전에 대륙에 가서 정착하여 현재까지 아직 대륙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 省籍 동포는 직계 가족, 배우자 및 친형제, 자매 등의 친지를 방문하러 대만에 돌아오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民國 38년(1949) 이전에 공비(公費)로 대륙에 파견 유학하여 현재까지 대륙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 省籍 유학생이 대만으로 친지를 방문하러 오는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이 대만으로 친지 방문하러 올 때 동행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로 제한한다.

II. 申請方式

1. 國 內

신청인이 아직 대륙에 있다면 홍콩지구를 경유하여 대만

에 와야 한다. 대만에 있는 직계 가족, 배우자 및 친형제, 자매가 대신 신청하는데 내무부 경찰서(警察署) 출입국관리국(入出境管理局)으로 보내 처리한다. 기타 대만에 있는 친구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직계가족, 배우자 및 친형제, 자매의 위탁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조건의 제 2항에서 정한 사람일 경우에는 대만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2. 해외 및 홍콩 지구

①신청인이 이미 홍콩지구에 도착해 있는 경우는 홍콩 금중도(金鐘道) 89호 동좌(東座) 사층(四層) 홍콩 중화 여행사를 거쳐 신청하여 (또는 구룡 하문전(何文田) 자유도(自由道) 2號 港9 구제(救濟)위원회內 대륙동포 대만방문사무처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출입국 관리국에 이첩 여행증을 심사 발급받은 후 대만에 있는 친속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중화 여행사로 보내 다시 송부토록 한다.

②신청인이 이미 해외지구에 도착해 있는 경우는 외국주재 영·대사관 혹은 외무부의 권한위임기구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 신청서를 이첩 여행증을 심사 발급받아 대만에 있는 친속에게 전해 주거나 혹은 외국주재 영·대사관으로 보내 다시 송부토록 한다.

Ⅲ. 具備書類

1. 여행증 신청서 1부(2인치 반명함판 사진 4장)
2. 보증서 1부
3. 신청인이 기한내에 대만을 출국한다는 서약서 1부
4. 신청인과 방문하는 친지의 호적등본 등 신분과 친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과 동반하는 가족 관계 증명 서류
6. 제 3지역 재입국 비자나 제 3지역 거류증 혹은 홍콩 신분증 복사본(신청인이 대륙에 있으면서 아직 제 3지역 재입국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홍콩에 도착한 후에 홍콩 정부가 발급하는 홍콩으로 귀환한다는 증빙서류에 의거해 중화 여행사에서 대만에 올 수 있는 여행증을 수령한다.)
7. 중국 공산당과 그 외곽 조직, 주변 정파에 참가하고 있거나 혹은 중공 당·정·군(黨·政·軍) 기구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는 참가하고 있는 조직을 이탈한다는 선언서(宣言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증명서 수속 비용 : 대만돈(NT) 200원

Ⅳ. 其他規定

1. 대만에 친지 방문하러 오는 것은 매년 한 차례로 한정하고 매회 대만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

로 한정한다. 단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유효 기한 만료 10일 전에 증명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시·현(시) 경찰국에 보내 체류 기한을 1회 연장해야 한다. 연장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2. 「국가비상총동원시기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의 제1호에서 4호까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거나 원래 대만에 살았지만 범죄 행위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도주하여 대륙에 가 있는 자는 방문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중국 공산당과 그 외곽 조직, 주변 정파에 참가하고 있거나 혹은 중공 당·정·군(黨·政·軍) 기구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가 만약 사실에 근거하여 그 조직을 이탈하겠다는 선언서를 작성한다면 반란평정(懲治)조례 자수(自首)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 신청인 입국 검사시에는 대만 친지 방문 여행증을 검사하는 외에 또 귀환 비행기표와 제3지역으로의 유효한 재입국 비자 등(유효 기한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검사하며 증빙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귀환 비행기표가 없다면 원래 비행기로 돌려 보내도록 한다.
5. 신청인이 소지한 중공 여권이나 통행증, 제3지역으로의 유효한 재입국 비자는 입국시에 출입국관리국 공항사무처에 제출 보관 했다가(영수증을 발급한다) 출국시에 돌려

준다.

6. 신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경찰 파출소에 등
기 수속을 해야 한다.
7. 본 규정 중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검토하여 수정한다.

現段階政府機關의技術者,勤勞者,環境美化員 및公營事業機關勤勞者의大陸地區親知訪問 申請處理要點

○ 民國 79年(1990) 2月 2日 行政院大陸
工作會報 臺79 陸行字 第082號書翰

1. ①각급 정부 기관의 기술자, 근로자, 환경 미화원 및 공영 사업기구 근로자의 대륙 지구로의 친지 방문 신청은 본 요점에 의거해 처리한다.
②前項의 정부 기관 및 공영사업 기구에는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 각급 군사단위, 각급 경찰기관 그리고 국가 안전국, 법무부 조사국과 소속 각급 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① 제 1조의 규정에 의거 대륙 지구로 친지 방문 신청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래에 열거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 가. 각급 정부기관 혹은 공영사업 기구에서 사무관리규칙 제328조 규정을 적용하는 編制내의 비생산직 기술자 및 보통근로자, 임시 고용된 기술자와 근로자
 - 나. 각급 환경보호기관 및 향·진사무소(鄉·鎮·市公所)의 환경 미화원
 - 다. 경제부 소속 사업기구中 분류직위(分類職位) 5직등

이하의 직원 및 평가직위인(評價職位人) 혹은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근로직급 人員(고용원 관리규칙으로 고용된 人員은 포함되지 아니함)

라. 교통부 소속 사업기구의 人員과 사환

마. 기타 노동기준법을 적용하는 기구에서 노동자 신분을 가진 근로직급 人員

②省(市) 이하 사업 기구의 근로직급 人員은 前項의 第 4, 5號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 2조에서 열거한 사람이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무부서에서는 그 사람의 대륙지구 친지방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륙지구의 친지방문시 친지의 범위와 회수 제한 및 체류기간 등은 모두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5. 친지를 방문하는 사람은 대륙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공무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6. 본 요점을 위반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처리한다.

作戰·特殊任務遂行中逮捕·死亡한前職軍人 및그眷屬의臺灣移住定着申請業務處理規定

○ 民國 79年(1990) 5月 16日 行政院
臺79 陸行字 第514號 書翰

I. 申請 條件

1. 民國38年(1949)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후 작전 혹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체포된(사망한) 모든 국군 장교·사병은 대만으로 이주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과 동행하여 대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족은 그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로 제한한다.

II. 申請 方式

1. 신청인이 대륙에 있거나 홍콩·마카오 혹은 국외로 이주했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대만에 있는 그의 친지가 신분조사표(격식은 첨부 서류 3과 같음)를 각 양식당 3부씩 작성하여 국방부에 신원조사를 신청한다.
2. 대리신청인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사실이 입증된 신청표를 받은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내무부 경찰서 출입국관리국에 입국 수속을 신청한다.
 - ① 대만 귀환 신청서 1부(격식은 첨부 1과 같고 2인치의

반명합판 탈모 사진 4장을 첨부한다.)

② 보증서 1부(격식은 첨부 2와 같음)

③ 신분증 검사 신청표 각 양식당 3부씩(격식은 첨부 3과 같음)

④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중국 공산당과 그 외곽 조직, 주변 정파에 참가하고 있거나 혹은 중공 당·정·군(黨·政·軍) 기구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는 마땅히 자수해야 하며 또한 제3지역에서 원래 참가하고 있는 조직을 이탈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선언서를 동봉해야 한다(격식은 첨부 4와 같음)

⑥ 증명서 수속 비용 : 대만돈 NT 22원

Ⅲ. 其他規定

1. 국가비상총동원시기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의 제1호에서 4호까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공산당과 그 외곽 조직, 주변 정파에 참가하고 있거나 혹은 중공 당·정·군(黨·政·軍) 기구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가 만일 사실에 의거해 문서를 작성하고 또한 제3지역에서 그 조직을 이탈하겠다는 공개선언을 하였다면 반란평정조례 자수의 규정에 비추어 당 조례 제9 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대히 처리한다.

3. 신청서 중 「참가한 黨(團)과 조직」이라는 란(欄)에는 사실에 입각해 기입해야 하며, 만일 은폐 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발각되는 즉시 사법기관이 의법 조치한다.
4. 입국 후 15일 이내에 입국증 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호적(戶政) 사무소에 가서 호적설정 수속을 해야 한다.
5. 호적을 만든 후 5일이내에 입국증 사본과 호적등본(사본)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국방부로 보내 비치 참고토록 한다.(우편번호 : 대북시 북책우정(木冊郵政)사서함 90014호)
6. 만일 병문안이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일반 대륙 동포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한다.
7. 대만 이주 신청 요건에 부합한자는 먼저 대만을 일차 방문하는 신청을 하여 제반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체류기간은 3개월로 한다. 체류기간 동안 호적을 재설정하여 정착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
8. 본 규정에 만일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수정한다.

첨부 1.

서류접수번호 :

담당처리인 번호(編號)

성명 :

국군 관병 작전시 체포·노란된 군인과 가족의 대만이주 신청표												월	일									
개	성	명	원명(이명)						성	별												
	본	적	성	현	신분증명번호																	
인	출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령	학	력	직	업									
	현재부서 및 직무			참가(당·단)과 조직																		
자	거주지 주소						전		화													
	대만에 온후 주소						전		화													
신	신	청	정착	체류	<input type="checkbox"/> 처음신청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우편													
	사	유			<input type="checkbox"/> 재차신청		수령방식		<input type="checkbox"/> 대만에 있는 친구가 수령													
참	고	대만에 있는	호	칭	성	명	연	령	본	적	주소 및 전화번호											
	사	친	구																			
항	대리	신청인	호	칭	성	명	연	령	본	적	주소 및 전화번호											
대	류	의	호	칭	성	명	출생	년	월	일	生	死	동행	여부	대만에	온	경험	여부	현	재	주소	
			부																			
			모																			
			배우자																			
			자																			
녀																						
<p>주의 사항</p> <p>1. 신청인이 아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면 허가하지 않는다.</p> <p>(1) 공산당 혹은 기타 반란조직에 참가했거나 활동한 자.</p> <p>(2) 폭력 혹은 테러조직에 참가했거나 활동한 자.</p> <p>(3) 내란죄나 외환죄의 중요 혐의가 있는 자.</p> <p>(4) 대만지구외에서 중대범죄혐의가 있거나 상습범죄행위를 한자.</p> <p>2. 전항 제 1호의 상황에서 자수했거나 공산당 혹은 기타반란 조직을 이탈한다는 선언을 한 자는 입국을 허가한다. 만일 자수나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입국후 의법조치한다.</p>												<p>1. 사진은 3개월이내의 것으로 2인치 반신 정면 탈모사진 4장 제출</p> <p>2. 사진 뒷면에 성명·출생년월일을 적음</p> <p>3. 사진 1장은 붙이고, 3장은 살짝 붙임</p> <p>4. 동행자녀의 신청서는 함께 제출한다.(사진 붙여서 신청)</p>										

첨부 3.

작성시 체포·조난된 군인의 대만이주 신원조사표						
개 인 자 료	성명(원명·별명)		출생년월일		본적	
	원소속부서		체포(조난)일자			
	체포(조난)장소		체포(조난)과정			
	대만이주시주소		현재주소			
	대만에 있는 친속					
	대륙에 있는 친속					
대리신청인 자료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직업		근무부서		피보증인과의 관계	
	주소(전화)		친속성명			
주의사항	1. 본 표는 입국 신청의 증거로 삼을 뿐이다. 2. 입국 수속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시행세칙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본 표는 같은 양식으로 세통을 작성하여 모두 최근 2인치 반신 탈모의 사진을 붙이고 도장을 찍는다.					
조사결과					사	진

대리신청인 (인)

첨부 4.

선 언 서

본인은 ○○○조직에 참가하였으나, 이에 이탈을 선언하며, 입국후 중화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중화민국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에 방해되는 일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하므로 관련있는 자수의 규정에 의거해 처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공항 경찰국

基隆 항무국 경찰서

高雄 항무국 경찰서에 보냅니다.

신고인

중화민국 년 월 일

주 : 1. 본 선언서는 두 통을 작성하여, 내무부 경찰서 출입국관리국과 공항 경찰국 혹은 항만 경찰서로 각기 보낸다.

臺灣地區各級民意代表의大陸地區 親知訪問과一般訪問申請要點

○ 民國 79年(1990) 5月 16日 行政院大陸
工作會報 臺79 陸行字 第512號書翰

1. 대만지구 각급 민의대표의 대륙지구로의 친지 방문과 일반 방문의 신청은 본 요점에 의거해 처리한다.
2. 본 요점에서 칭하는 각급 민의대표는 아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① 중앙 민의대표
 - 가. 국민대회 대표
 - 나. 입법원 입법위원
 - 다. 감찰원 감찰위원
 - ② 지방 민의대표
 - 가. 省(市) 의회 의원
 - 나. 縣(市) 의회 의원
 - 다. 鄉(鎮·市) 民 대표회 대표
3. 대륙지구 친지방문에서 친지의 범위, 회수 제한 및 체류 시간 등은 모두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4. 대륙지구 친지방문과 일반방문은 휴회기간을 이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5. 대륙지구 친지방문과 일반방문은 개인의 신분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속기관을 대표해서는 아니 되고, 소속기관의 명의로 단체를 조직하여 떠나도 안된다. 또한 공비(公費) 보조를 신청해서도 아니 된다.
6. 대륙지구 친지방문은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에 신청 혹은 등기해야 한다. 대륙지구 일반방문은 내무부 경찰서(警政署) 출입국관리국에 신청 혹은 등기해야 한다. 이첩심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 출입국 신청안건에 비추어 처리한다.
7. 대륙지구 친지방문이나 일반방문을 하는 사람은 대륙에 있는 동안 국가 안전과 이익에 방해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8. 본 요점을 위반하는 자는 관계 법령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9. 내무부는 본 요점에 의거해 다른 작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10. 본 요점은 행정원의 결정을 받은 후에 시행하며 수정 시에도 역시 동일하다.

附註 ; 민국80년(1991) 5월 30일 내무부 대80 內警字 제 932034호 서한 :

현행 규정에 의거해 대륙으로 친지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의 출입국 신청등기 및 서류의 구비 보고 사항은 민국80년(1991) 7월 1일부터 간소화되어 근무 책임 기관이나 학교가 警察署 출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보내 심사 처리하며,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의 대리 수령·전달을 거칠 필요가 없다.

臺灣地區各級民意代表의大陸地區 親知訪問과一般訪問申請作業規定

○ 民國 79年(1990) 5月 31日 內務部
臺79 內警字第804762號 書翰

1. 「대만지구 각급 민의대표의 대륙지구친지방문과 일반방문 신청요점」에 의거하여 본 작업규정을 제정한다.
2. 대륙지구 친지방문은 아래의 서류들을 검토·첨부하여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로 신청해서 내무부 警察署 출입국관리국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 가. 출입국 신청서 1부(반명함판 사진 4장)
 - 나. 친지 방문 등록표 1부
 - 다. 6개월 이내의 전가족 호적 등본 1통
 - 라. 국민 신분증 사본 1통 (원본은 대조 후 반환한다)
 - 마. 증명서 수속 비용 : 대만돈(NT) 1천원
3. 대륙지구 방문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검토·첨부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청 수속한다.
 - 가. 출입국 신청서 1부(반명함판 사진 4장)
 - 나. 民意代表 재직 증명 사본 1부
 - 다. 국민 신분증 사본 1통(원본은 대조 후 반환한다)
 - 라. 증명서 수속 비용 : 대만돈(NT) 1천원

4. 대륙지구 친지방문이나 일반방문 신청 안전에서 정·부수장(正·副首長)은 행정원의 우편이첩심사를 거쳐야 하고 縣(省·직할시)의회의 정·부의장은 중앙 주관기구의 이첩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첩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대륙지구 친지방문이나 일반방문에서 이미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출입국 수속을 면제한다. 단, 출국 전 혹은 입국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에 등기기록 수속을 해야하며 소속기관은 한달에 한번 이를 모아서 출입국 관리국으로 보내 비치하도록 한다.
6. 본 사업 규정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검토 수정한다.

附註 : 民國80年(1991) 5월 30일 내무부 대80內警字

제932034호 서한 :

현행 규정에 의거해 대륙으로 친지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의 출입국 신청 등기 및 서류의 구비·보고 사항은 民國 80年(1991) 7월 1일부터 간소화 되어 근무책임 기관이나 학교는 警察署 출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보내 심사·처리하며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의 대리 수령·전달을 거칠 필요가 없다.

現段階公務員의大陸親知의 臺灣訪問申請處理作業規定

○ 民國 79年(1990) 5月 26日 行政院大陸
工作會報 臺79 陸行字第560號書翰

I. 適用對象

현행 규정에 의해 대륙으로 친지를 방문하러 갈 수 없는 공무원, 군인, 경찰의 대륙에 있는 배우자 및 삼촌 이내의 친족

II. 申請方式

1. 대만지구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 홍콩 지구를 경유하여 대만으로 와야 한다. 대만에 있는 친지의 방문대상인이 내무부 경찰서(警察署) 출입국관리국에 대리 신청한다. 기타 대만에 있는 친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는 친지 방문대상인의 위탁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해외 및 홍콩지구

①신청인이 이미 홍콩 지구에 도착해 있는 경우 홍콩 금종도(金鐘道) 89호 奔達센터 동좌(東座)사층(四層) 홍

콩 중화여행사에 신청하여야 하며(또는 구룡 하문전(何文田) 자유도(自由道) 2호 항9 구제(救濟)위원회내 대륙 동포대만방문사무처를 거쳐 신청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국에 이첩·심의하여 처리한다.

②신청인이 이미 해외 또는 기타지구에 도착해 있는 경우는 해외주재 영사관 혹은 외교부 권한위임기구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이첩·심의하여 처리한다.

Ⅲ. 具備書類

1. 여행 신청서 1부(반명합판 사진 4장)
2. 보증서 1부
3. 기한내로 대만을 출국한다는 신청인의 서약서 1부
4. 신청인과 친지 방문대상의 호적등본 등 신분과 친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친지 방문대상의 재직 증명서류
6. 제 3 지역에 재입국하는 비자 혹은 제 3 지역 거류증이나 홍콩 신분증 복사본 (신청인이 대륙에 있으면서 아직 제 3 지역 재입국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홍콩에 도착한 후에 홍콩 정부가 발급하는 홍콩으로 귀환한다는 증빙서류에 의거해 중화여행사에서 대만에 올 수 있는 여행증을 수령한다)
7. 중국 공산당과 그 외곽 조직, 주변 정파에 참가하고 있

거나 혹은 중공 당·정·군(黨·政·軍) 기구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는 마땅히 자수하고 제 3 지역에서 참가조직 이탈을 공개 선언한 선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증명서 수속비용 : 대만돈(NT) 220元

IV. 其他規定

1. 대만의 친지 방문은 各人당 매년 한 차례로 한정하고, 매회 대만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한 만료 10일 전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시·현(市) 경찰국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첩·심사하여 체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2. 국가비상총동원시기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제 1 에서 4호까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거나 원래 대만에 살았으나 범죄 행위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도주하여 대륙에 가있는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중국 공산당과 그 외곽 조직, 주변 정파에 참가하고 있거나 혹은 중공 당·정·군(黨·政·軍) 기구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가 만약 사실에 입각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 3 지역에서 서면으로 그 조직을 이탈하겠다는 선언을 한다면 반란평정조례 자수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 조례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해 관대히 처리한다.
그러나 민국 38년(1949) 이전에 참가한 사람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신청인 입국 검사시에 대만 친지방문 여행증을 검사하는 외에 또 귀환 비행기표와 제 3 지역의 유효한 재입국 비자등(유효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검사하며, 증빙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귀환 비행기표가 없다면 원래 비행기로 되돌려 보낸다.
5. 신청인이 소지한 중공 여권이나 통행증, 제 3 지역의 유효한 재입국 비자는 입국시에 출입국관리국 공항사무처에 제출 보관하며(영수증을 교부함) 출국시에 돌려 준다.
6. 신청인은 입국 후 3일이내에 거주지 경찰 파출소(派出所)에 등기 수속을 해야한다.
7. 본 사업규정 중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검토하여 수정한다.

現段階公務員의大陸地區問病· 葬禮參席申請作業要點

- 民國 79年(1990) 9月 12日行政院 大陸工作會報 台79
陸行字 第856號 書翰
- 民國80年(1991) 3월 21일 行政院 大陸委員會(80)
陸法字第0524號 書翰 修正

1. ①공무원이 문병·장례의 목적으로 대륙으로 들어가는 신청을 한다면 본 요점에 의거해 처리한다.
②전 항의 공무원이란 공무원근무법 제24조에 규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단, 아래에 열거한 사람은 그 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가. 정무관(政務官). 단, 행정직무(行政職務)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 나. 국방부, 내무부 경찰서(警正署), 국가안전국, 법무부 조사국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의 人員. 단, 군인·경찰 학교의 인문직 교원은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 다. 기타 현역 군인, 현직 경찰관
2. 제 1 조에서 정한 사람의 대륙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혹은 형제 자매가 아래 사항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병·장례 참석을 목적으로 대륙지구로 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중병이나 중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독한 경우

나. 나이가 여든이 넘었는데 병환이 났다거나 부상을 당했다든지 혹은 행동이 곤란한 경우

다. 사망한 경우

3. 문병을 목적으로 대륙입국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륙지구의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의 날짜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한다. 장례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사망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본 요점이 실시되기 직전에 사망하여 아직 매장하지 않은 경우는 본 요점의 실시 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모두 한 차례 신청에 한한다.

4. 문병·장례의 목적으로 대륙으로 들어가는 경우 체류기간은 규정에 의거 연장이 허락되는 경우 이외에는 2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5. ①문병·장례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륙지구에 있는 기간 동안 아래의 경우 중 하나를 당했다면 한 차례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중병 혹은 중상을 입어서 행동이 곤란한 경우

나. 문병 대상이 사망한 경우

다. 불가항력인 경우

- ②체류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 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검토·첨부하여 대만에 있는 친구가 대신 그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무기관이 허가한 후에 내무부 경찰서 출입국관리국에 통지한다.
6. 제 1 조에서 정한 문병·장례의 목적으로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만일 직무상 기밀을 취급하고 있다면 그 근무기관은 대륙지구 방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7. 문병·장례의 목적으로 대륙으로 들어가는 자는 대륙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공무기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국가 안전과 이익에 방해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8. 본 요점을 위반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처리한다.
 9. 내무부는 본 요점에 의거해서 다른 사업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10. 본 요점은 행정원의 심의·결정을 받은 후에 시행하며, 수정시에도 동일하다.

備註 : 공무원근무법 제24조 : 「본 법은 봉급을 받는 文武職 공무원과 기타 공영사업기관 근무자에게 모두 적용한다.」

附註 : 민국 79년(1990) 11월 20일 행정원 대륙공작회보 대
79육정자 제1508호 서한 :

「현단계공무원의대륙지구문병·장례참석신청작업요
점」규정에서 칭하는 바의 부모란 인도적·윤리적 입
장에 입각하여 「계부모」까지의 넓은 의미로 해석하
는데 동의한다.

민국 80년(1991) 5월 8일 행정원 대륙위원회(80)
陸法字 제0969호 서한 :

「현단계공무원의대륙지구문병·장례참석신청작업요
점」중에서 칭하는 바의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한다.

現段階公務員의問病·問喪參席 目的의大陸訪問申請處理規定

○ 民國 79年(1990) 9月 6日 內政部台(79)
內警字 第828639號函 修正

1. 「현단계공무원의문병·문상목적대륙방문신청업무요점」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정한다.
2. 대륙을 문병·문상의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내무부(內政部) 경찰청 출입국관리국(入出境管理局)에서 수속을 밟는다
 - 가. 출입국신청서 1장(반명합판 사진 3장 첨부)
 - 나. 대륙지구 방문신청표 1장
 - 다. 대륙지구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사망증명서
 - 라. 문병·문상 방문대상과의 친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 재직기관에서 심사이첩한다는 공문
3. 대륙지구를 문병·문상으로 방문하려는 자가 이미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입국수속은 면제된다. 다만, 진단서(사망증명서), 친척관계 증명서류 및

대륙지구 방문신청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기관의 허가를 얻은 뒤 대륙지구 방문신청표를 출입국관리국에 보내 비치한다.

4. 이미 외국이나 제3국에 가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대륙지구를 문병·문상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반드시 대만(台灣)으로 귀국하여 1개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류를 제출·비치하는 수속을 밟는다.
5. 본 규정중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검토하여 수정한다.

備註：第2條의 第1號에서 말하는 친척관계증명서류는 아래와 같다

공무원이력서, 퇴역군인에게 토지를 수여한 증서(戰士授田證), 연금증서(撫恤令), 부고(訃告), 족보, 동향주소록(同鄉通訊錄)등 친척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

함께 찍은 사진, 왕래한 서신, 대륙측에서 발급한 공증서(公證書) 등도 증명이 될 수 있다.

臺灣訪問中인大陸同胞가原來 組織離脫時이를許可하는規定

○ 民國 79年(1990) 7月 12日 行政院 大陸工作會報台 7096
行字 第857號函

본 회보 79년 6월 25일 제46차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산당 및 그 외곽조직, 주변 정파에 참가했거나, 中共의 당(黨)·정(政)·군(軍)기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륙동포가 대만 단기체류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만일 사실에 근거하여 그 조직을 이탈하겠다는 선언서(宣告書)를 작성한다면, 반란징벌조례중에서 자수(自首)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이 안건은 원장(행정원장)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한다.

不法入國한大陸住民의送還處理要點

○ 民國 80年(1991) 5月 3日 行政院 大陸委員會(80)
陸法字 第0919號

1. 불법으로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의 주민은 본 요점에 의해 압송·수용·送還을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2. ①대륙지구의 주민을 낱자를 정하여 되돌려 보내기 전에는 아래의 방식대로 압송하거나 수용(收容)한다.
 - 가. 대만지구의 해상(海上) 혹은 육상(陸上)에서 발견된 경우 발견한 기관의 조사와 심문을 받은 뒤, 즉시 현지 경비분구(警備分區) 지휘부로 보내어 조사를 받게 하고 각 지역(各地)의 처리센터에 수용시킨다.
 - 나. 자수(自首)하여 불기소(不起訴)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재정심리면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관할구역이나 본래 이송(移送)했던 경찰기관에 이첩·통고하고, 현지 경비분구 지휘부로 압송해서 조사를 받게하고 각지역의 처리센터에 수용시킨다.
 - 다. 위조·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혹은 남의 증명

서를 도용하여 입국, 검찰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기관이 관할구역이나 원래 이송(移送)했던 경찰기관에 이첩·통보하고 압송해서 각 지역의 처리센터의 지역분소(分所)에 수용한다.

라.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집행이 끝난 경우 사법기관이 관할구역 혹은 원래 이송했던 경찰기관에 이첩·통고하고 각 지역의 처리센터 지역분소에 압송하여 수용한다.

②전항 제 1 호, 제 2 호의 처리센터는 국방부에서 제 3 호, 제 4 호의 처리센터 지역분소는 내무부(內政部)에서 감독·관리한다.

3. ①아래와 같은 경우의 대륙지구 주민은 우선 관할구역 경찰서로 보낸 뒤 다시 검찰기관으로 이송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불기소처분, 판결확정 및 집행종료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용하며 내무부와 국방부가 협의하여 개별안건으로 처리한다.

가. 임신 5개월 이상 또는 출산·유산한 지 2개월 미만의 경우

나. 임신 5개월 미만 또는 공립의료기관의 진단을 거쳐 배나 비행기를 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증명을 받은 경우

다. 중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하여 공립의료기관에서

배나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증명을 받은 경우

②이상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대륙지구주민은 그 원인이 소멸된 뒤에 본 요점의 규정에 의해 송환한다.

4. 대륙지구의 부녀자(婦女者)가 대만지구에서 낳은 영아는 대만에 호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양육될 경우 송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 호적등기 신청을 하도록 한다.

5. ①대륙지구 주민 중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가치있는 자료를 제공한 자, 대만측이 대륙지구를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는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허가를 거친 경우에는 송환하지 않는다.

②전항(前項)에 속하는 대륙지구 주민이 불기소 처분, 판결확정을 받았거나 혹은 집행이 완료된 후부터 대만지구에서 4년간 계속 거주하여 불량기록이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호적등기 신청을 하도록 한다. 호적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동인구(流動人口)로 처리한다.

6. 처리센터에 부녀자가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 경찰청(警正署)에서 여자경찰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고 송환문제 등을 돕도록 한다.

7. 대륙지구 주민이 대륙지구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고 본인이나 대만에 살고있는 관계인이 비행기표를 부담하기를 원할 경우 중화민국 적십자총회 혹은 재단법인 해협

교류기금회와의 연락을 통해 대륙지구로 송환이 가능한 사람은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서 송환출국서류를 발급하여 비행기로 홍콩을 경유하여 송환하도록 한다.

8. ①대륙지구 주민중 불법으로 대만에 입국했음이 밝혀진 경우는 감독기관에서 명단을 만들어 중화민국 적십자총회나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에 보내서 송환수속에 협조하도록 한다.

②중대사고로 인하여 긴급 송환이 필요할 시에 감독기관은 전항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송환하도록 한다.

9. 대륙지구 주민은 처리센터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뒤 지문카드를 내무부 경찰청 형사경찰국에 보내 분석·비교하여 관계자료화일을 작성하도록한다. 두번이상 불법 입국한 사람의 경우는 내무부 경찰청 형사경찰국에서 원래의 감독기관에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10. 감독기관은 매번 송환을 마친 뒤 송환인원의 명단을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보내서 관계자료화일을 작성하고 통계를 내도록 한다.

11. ①대륙지구 주민의 송환작업은 중화민국 적십자총회나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에 위탁하여 연계처리및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②전항에서 언급한 위탁계약서 견본은 아래 첨부한 것

과 같다.

12. 대륙지구 주민의 송환작업 순서는 내무부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함께 결정한다.

〈見 本〉

內務部가中華民國赤十字總會와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에委託,大陸地區住民의送還問題를連絡·協議하도록하는契約書

계약인(이하 甲方으로 칭함)내무부는 중화민국 적십자 총회, 재단법인 해협교류 기금회(이하 乙方으로 칭함)에 대만지구에 불법입국한 대륙지구 주민의 송환문제를 연락, 협상하는 일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계약조례를 정한다.

제 1 조 : ① 甲方은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에 불법 진입했을 경우 乙方에 이들의 송환문제를 대륙지구 적십자회와 연락, 협상하도록 위탁한다.

② 乙方은 앞에 열거한 송환작업에 대한 증명에 책임을 진다.

제 2 조 : 전조 제 1 항의 위탁사항에 대해 乙方은「행정원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대륙사무를 처리할 경우의 요점」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하며, 국방부가 甲方의 위탁을 받아 대륙지구 주민의 송환작업을 처리하는 규정과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

제 3 조 : 乙方은 위탁받은 사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단, 甲方의 동의를 있을 경우 제 3 자가 대리 처리할 수 있다.

제 4 조 : 乙方이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 3 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할 경우 이 제 3 자의 행위는 바로 乙方 자신의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 : 재위탁을 받은 사람의 권한과 위탁기간은 본 위탁계약에 명시된 약정(約定)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 乙方이 제 3 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무를 대리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甲方은 직접 이 제 3 자에게 위탁사무의 이행을 요청한다.

제 7 조 : 乙方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약정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 乙方은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甲方에서 이러한 상황임을 알면 그 지시사항의 변경을 허락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甲方의 지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 乙方은 위탁받은 사무의 진행상황을 매달 혹은 甲方이 특별히 요구할 때 甲方에 보고해야 한다. 위탁계약의 종료시에는 그 시말(始末)을 명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 乙方이 위탁사무의 필요상 제정한 각종 규정은 반드시 甲方에게 보고해야 하며 甲方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乙方에 지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乙方이 수정했을 때 도 역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

제 10 조 : 乙方에서 위탁사무를 집행하다가 다른 이에게 손해

를 입혀서 甲方이 배상한 경우 甲方은 배상완료 후에 乙方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 甲方이 乙方의 처리를 위탁하면 乙方에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액수는 따로 정한다.

제12조 : 甲方은 언제든지 본 계약서상의 위탁사무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수 있다. 만일 甲方이 乙方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중지시킬 경우 乙方에게 필요경비를 보상해야 한다.

제13조 : 본 계약 종료시 乙方에서는 성심성의껏 일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甲方의 지시대로 뒷마무리를 해주어야 한다.

제14조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년이며, 중화민국()년()월()일에서()년()월()일 까지 이다.

계약인(甲方) : 내무부

계약인(乙方) :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중화민국 년 월 일

臺灣地區住民이大陸地區에서 送還될경우의處理要點

民國 80年(1991) 5月 7日 行政院 大陸委員會(80)
陸法字 第0953號函

1. 대륙지구에 들어간 대만지구 주민(以下 대만지구 주민으로 칭함)의 송환은 본 요점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그러나 기타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2. 치안기관에 의해 송환이 요구된 대만지구 주민은 원래 송환을 요구한 기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중화민국 적십자회총회나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협조하여 관련된 연락 및 협상을 한다.
3. 형사혐의범 혹은 형사범은 내무부 경찰청 형사경찰국의 동의를 거쳐 그 책임아래 인원을 파견하여 송환된 자를 접수한다. 송환되어 대만으로 돌아온 자는 관할구역 경찰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4. 제 3조이외의 대만지구 주민의 송환은 내무부 경찰청의 동의를 거친 뒤 金門·馬祖(金馬)지구 경찰기관이 접수하고 대만으로 송환된 뒤에는 관할지역 경찰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5. 대륙지구에서 금마지구까지의 송환접수, 압송 및 보호는 내무부 경찰청에서 모범경찰인원을 선발 파견하여 담당 하게 하고 내무부 경찰청 형사경찰국측은 금마지구 경찰 기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집행을 지도한다. 대만에서 금마지역까지 왕래하는 교통수단은 필요시에 내무부 경찰청이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6. 대만지구로 송환된 자는 접수기관에서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공문을 보내 입국수속을 밟도록한다.
7. ①대만지구 주민의 송환작업은 중화민국 적십자회총회 혹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에 위탁하여 대륙지구 적십자회와 연락 및 협상을 거쳐 실행한다.
②전항에서 언급한 위탁 계약서 건본은 아래와 같다.

〈見 本〉

內務部가中華民國赤十字總會와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에委託, 臺灣地區住民의送還問題를連絡·協議하도록하는契約書

계약인(이하 甲方으로 칭함)내무부는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이하 乙方으로 칭함)에 위탁하여 대륙지구에 들어간 대만지구 주민(이하 대만지구 주민으로 칭함)의송환과 관련된 문제를 연락, 협상하도록 하며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은 계약조례를 정한다.

제 1 조 : ① 甲方은 乙方에 위탁하여 대만지구의 형사혐의범, 형사범 및 기타 甲方의 송환동의를 얻은 대만지구 주민을 대륙에서 대만으로 송환하는 문제와 관계된 일을 대륙지구 적십자회와 연락·협상하게 한다.

② 乙方은 앞에 열거한 송환작업에 대한 증명에 책임을 진다.

제 2 조 : 전조의 제 1 항의 위탁사항은 乙方이 「행정원에서 민간단체에위탁하여대륙사무를처리할경우의요점」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 乙方은 위탁받은 사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단, 甲方의 동의를 있을 경우 제 3 자가 대리처리 할수있다.

제 4 조 : 乙方이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 3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했을 경우 이 제 3 자의 행위는 바로 乙方 자신의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 : 재위탁을 받은 사람의 권한과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에 명시된 약정(約定)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 乙方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제 3 자에게 대리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甲方은 이 제 3 자에게 위탁사무의 이행을 직접 요청한다.

제 7 조 : 乙方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해진 약정에 따라야하며 선량한 관리인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 乙方은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甲方도 이러한 상황임을 알면 그 지시사항의 변경을 허락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甲方의 지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 乙方은 위탁받은 사무의 진행상황을 매달 혹은 甲方이 특별히 요구할 때마다 甲方에 보고해야 한다. 위탁계약의 종료시에는 그 始末을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 乙方이 위탁사무의 필요상 제정한 각종 규정은 반드시 甲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甲方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乙方에 지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乙方이 수정했을 때 도 역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

제 10 조 : 乙方에서 위탁사무를 집행하다가 다른 이에게 손해

를 입혀서 甲方이 그 배상에 책임을 지게된 경우 甲方은 배상완료 후에 乙方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 甲方이 乙方에게 사무를 위탁하면 乙方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액수는 따로 정한다.

제12조 : 甲方은 언제든지 본 계약서 상의 위탁사무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만일 甲方이 乙方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중지시켰을 경우 乙方에게 필요경비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13조 : 본 계약 종료시 乙方에서는 성심성의껏 일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甲方의 지시대로 뒷마무리를 해주어야 한다.

제14조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년이며, 중화민국()년()월()일에서 ()년()월()일까지이다.

계약인(甲方) : 내무부

계약인(乙方) :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중화민국 년 월 일

IV. 財務・經濟規定

民間外換의貸出및決濟에관한法

- 民國 80年(1991) 3月 15日中央銀行(80) 台中外字第(伍)00448號令 修正公布 第4條 및 第8條
- 全文 8條 條文

제 1 조 :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환관리조례(條例) 제 5 조제 2 항, 제 4 항 및 중앙은행법 제 35 조제 2 항,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법을 정한다.

제 2 조 : ①본법에서 민간송금경비이라고 칭한 것은 민간송금인이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외환업무 처리은행(이하 지정은행이라 약칭함)을 통하여 중화민국 국경 밖의 은행에 위탁하여 중화민국 국경 밖에서 지불하는 화폐를 가리킨다.

②외화예입·외화예금 및 외화현금의 결제는 본 법에서 말하는 민간송금경비로 본다.

제 3 조 : 민간송금인이 지정은행에 외환결제를 요청하려면 민간송금경비의 외환결제신청서(신청서 양식 별첨)를 작성하여 지정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에 신청한다.

제 4 조 : ①아래 열거한 민간경비송금의 송금자는 민간경비송금의 외환결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곧 바로 결제 절차를 밟는다.

1. 물품을 수입하거나 혹은 중화민국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회사·상점 및 단체가 무형(無形)무역비용의 외환지출을 지불하는 경우 보상한다.
2. 중화민국 정부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상점단체 및 중화민국 국경내에 거주하는 만20세의 국민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외국화교 거류증을 가진 개인의 일년간 누적 외환결제 금액은 300만 US\$ 혹은 등가(等價)의 제 3 국 외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매회의 금액이 100만 US\$ 혹은 등가의 제 3 국 외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한 다음날 부터 10근무일(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수)이 경과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 2 호에서 매회의 금액이 미화 100만불 혹은 등가의 제 3 국 외환을 초과했을 경우의 신고에 관한 안건은 중앙은행이 필요시에 지정은행에 통지하여 처리를 잠시 보류 시키도록 한다.

제 5 조 : 전조의 규정 이외의 민간경비송금의 송금인은 민간경비송금의 외환결제신청서 및 아래에 열거한 서류들을 검토·첨부하여 지정은행을 통하여 중앙은행에 허가신청을 한 뒤 결제를 처리한다.

1. 경비송금이 대외투자 자금으로 정부가 허가한 경우에는 주관 기관의 허가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타 경비송금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 지정은행은 민간경비송금결제를 처리한 뒤, 아래의 규정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서류들을 중앙은행에 보내야 한다.

1. 제 4 조에 의해 처리한 경우 민간경비송금 및 외환결제 신청서

2. 제 5 조에 의해 처리한 경우 중앙은행이 인가한 서류

제 7 조 :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본 법의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 ①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법 수정조문(條文)은 중화민국 80년(1991) 3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민간경비송금의 외환 결제 신청서

1. 신고일시 : _____
 2. 신고인 : _____
 3. 회사·상점단체 혹은 개인의 통일번호 :
 - 회사·상점 : 통일번호 _____
 - 단체 : 통일번호 _____
(통일번호가 없으면) 설립 등기 주관기관의 등기
번호 _____
 - 본국민 : 신분증 통일번호 _____ 생년월일 _____
 - 외국인 : 외국인거류증번호 _____ 생년월일 _____
외국인거류증번호 _____ 생년월일 _____
거류증 발급일시 _____
 4. 결제외환의 종류
(종류가 1種을 넘는경우 매 종류당 금액을 쓴다)
 - 수입물품가격
 - 회사·상점단체의 무형무역비용의 지불(그 성질을 상세히
설명할 것. 뒷면의 설명1. 참고.)
 - 上述한 2항 이외의 경비송금(성질을 상세히 설명할것. 뒷면
의 설명2. 참고)
 5. 결제금액 _____
중앙은행 귀하.
신고인 및 책임자 서명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이하 각난은 지정은행이 기입한다.)
- 설명 : 1. 예 : 운송비 지출·보험비 혹은 배상금 지출·화교나 외국
인 고용비용·임금·대리비·기술보수·국외업무비용·기
술대금지출·해외기관경비 등
2. 예 : 외국인 및 화교의 투자원금 혹은 수익·국외 부동산
구입·국외 증권구입·채권·국외저축·국외에 대한 대출
·국외대출원금상환·증여 등
- 주의 : 본 신고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한 자리에 책임자가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大陸地區物品管理法

- 民國 78年(1989) 6月 9日經濟部經(78)貿字第09184號函發布
- 民國 79年(1990) 5月 4日經濟部經(79)貿字第019498號令 修正第 3條
- 全文 14條 條文

제 1 조 : ①대륙지구의 물품(이하 대륙물품으로 칭함)이 대만 지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② 대륙물품에 대한 관리는 법률에 따로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 본 법에서 칭하는 대륙물품이란 대륙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물품 등을 말하며 대륙물품의 표시(문자 혹은 도안)가 있거나 또는 표시가 없더라도 대륙물품으로 감정되어진 물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 ①아래 나열한 품목을 제외한 대륙물품은 일률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1. 경제부에서 수입허가를 공고한 물품의 항목
2. 경제부 국제무역국(이하 무역국이라 칭함)에서 수입을 허가한 의료용 한약재

3. 재무부가 심사결정하고 세관에서 입국여행객들이 휴대하여 들여올 수 있음을 허가하여 공고한 물품
4. 무역국에서 수입을 허가한 골동품·예술품·종교관계 물품
5. 무역국에서 수입을 허가한 연구용 샘플
6. 무역국에서 수입을 허가한 학교·연구기관 및 동물원에서 쓰일 동물

②전항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물품은 대륙 이외의 나라 및 지역에서 구입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한하여 수입한다. 선원(船員)이나 항공기 승무원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륙물품을 휴대하여 들여올 수 없다.

제 4 조 : 경제부에서 수입허가를 공고한 대륙물품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것에 한한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2. 관계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3. 상품의 수출경쟁력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경우

제 5 조 : ①업체에서는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의하여 대륙물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무역국에 신청을 하여야하며 가공수출구역내의 업체는 직접 각자 해당 가공수출구역 관리처에 신청한다.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 의해 의료용 한약재를 수입할때는 무역국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발금은행에 신청해야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모두 일반 수입규정에 따라 비자를 처리해야한다.

제 6 조 : 수입이 허가된 대륙물품에 대한 수입서류상에는 분명하게 「대륙(CHINESE MAINLAND)제품」이라고 써야한다. 물품자체에 혹은 안팎에 대륙제품의 표지(문자 혹은 도안)가 있는 경우 통관이 진행되기 전에 모두 지워야한다. 그러나 표지가 새겨져 있는 것은 지우지 않아도 된다.

제 7 조 : 무역국은 대륙물품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비경비제도(預警制度)를 수립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경제부에 보고하여 비자정지심사를 하도록 한다.

제 8 조 : 대륙물품을 밀수해 들어온 경우 세관밀수체포조례 및 밀수징계조례 혹은 기타 관계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군사 혹은 치안에 방해가 되거나 금융상황을 크게 어지럽히는 문제를 일으킨 자는 관계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 대륙물품의 밀수에 대한 조사 및 체포는 통상(通商)이 행해지는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이 책임진다. 그리고 군경(軍警) 및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를 청할 수 있다. 비통상지역 및 내륙지역에서는 군경기관에서 직접 조사 체포하며, 조사·체포결과와 함께 밀수품도 세관에 移送하여 처리한다.

제 10 조 : 업체에서 규정된 순서를 밟아 수입한 화물(貨物) 가운데 허가되지 않은 대륙물품이 있으면 그러한 물품이 섞

여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케하여 기록하고 통관을 철회케하는 동시에 경고를 한다.

제11조 : 밀수된 대륙물품을 공개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하다가 경찰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에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

제12조 : ①어민(漁民)이 해상(海上) 작업도중 대륙어선이나 대륙어민의 협박에 의해 대륙물품을 물물교환했을 경우 항구로 돌아와 자진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물품을 반납하면 벌금을 면해준다.

②전항의 대륙물품은 관계기관에서 세관으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

제13조 : 대륙물품에 대한 감정(鑑定)은 재무부 세관 총세무사서(總稅務司署)에서 처리한다.

제14조 :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本人使用目的으로入國旅行客이搬入 할수있는大陸土産品の制限量表

○ 民國80年(1991) 2月 23日 財政部台財關
第800058090號函修正

1. 說 明

(1) 본 표(表)는 「입국여행객휴대품세금신고방법」 제 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

(2) 본 표에서 정한 품목 및 수량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 및 가정에서 늘 볼 수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본 표의 품목에 들어있지 않은 대륙토산품은 본 표에 들어있는 유사한 물품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입국 여행객들이 휴대하는 대륙담배·술 종류는 「입국여행객휴대품세금신고방법」 제 9 조에 규정한 제한량에 의거하여 면세를 결정한다.

(3) 입국여행객이 휴대한 대륙물품이 본 표의 품목범위와 「입국여행객휴대품세금신고방법」의 제 9 조제 2 항의 제한량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을 때에는 면세를 허락하며 수입허가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앞에 정한 범위 및 제한량을 초과하였으나 「입국여행자휴대품

세금신고방법」 제12조제 1 항에 규정된 제한량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규정된 세금을 물어야 한다.

- (4) 입국여행자가 휴대한 대륙토산품이 「입국여행자휴대품 세금신고방법」 제12조제 1 항에 규정된 수량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본국적(本國籍) 여행자중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반송(返送)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 경우는 일률적으로 몰수한다. 외국인이나 화교(華僑)인 경우에는 「외국인및화교입국자가휴대한다대륙물품 의보관사무세칙」의 규정에 의해 통과여객(transit) 화물창고에 무료로 보관했다가 출국시 다시 인수해서 나가도록한다.

- (5) 본 표는 재무부의 심사결정을 거친 뒤 시행한다.

2. 制限量表

품 명(品 名)	수량(數量)	비 고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국악기 (國樂器)	2件	
붓	30자루	
벼 루	2개	
떡	4개	
진 주 가 루	4병	(화장품)
인 주(印 朱)	4곽	
의 류	6벌	
자 수 품	3점	
도 자 기(다 기(茶 器)포 함)	4개(셋트)	
밥 공 기 · 접 시 · 화 병	각48개	
등 자리 · 대 나무 자리(돛 자리)	각 4 장	
수 공 예 품	6점	
기 념 품	6점	
말 린 조 갓 살	1.2kg	
말 린 전 북	1.2kg	
제 비 집	1.2kg	
상 어 지 느 러 미	1.2kg	
표 고 버 섯	1.2kg	
통 조 립	각 6 개	
차(茶)	1.2kg	
기 타 식 품	6kg	
한 약 재 및 한 약 품	合計 12種 (한약재는 한종류당 0.6kg), 한약품은 한종류당2 병	세 금 합 계 가 NT 10,000\$ 을 넘을수 없음

外國人 및 華僑 入國者가 携帶한 大陸物品의 無料保管業務細則

- 民國 79年(1990) 9月 11日 財政部台財關
第790786130號令修正
- 全文 7條 條文

제 1 조 : 외국인 및 화교 입국자가 휴대한 대륙물품의 무료보관을 위해서 특별히 본 세칙을 정한다.

제 2 조 : 본 세칙에서 칭하는 대륙물품이란 「대륙지역물품관리법」 제 3 조에서 규정한 물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 대륙물품에 대한 판단은 세관에서 한다.

제 4 조 : ① 대륙물품은 세관 검사를 거친 뒤 본인의 입회하에 다시 봉(封)하여 공항 화물보관창고에 무료 보관시킨다.

② 전항의 무료보관 물품중에서 여행자가 손수 운반하거나 위탁운반 방식을 통해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 술·담배·기타잡품 및 깨지기 쉬운 물건외에 나머지 물품들은 일률적으로 위탁운반방식으로 출국 처리해야하며, 보관시는 이 두가지 종류로 미리 구분지어 보관증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제 5 조 : ① 전조에서 규정된 무료보관 대륙물품은 여행자의 입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송하여 출국시킨다. 기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것은 세관에서 관세법 제55조의 1호의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② 전항의 반송 출국 물품중 위탁운반을 하는 물품은 원래 보관을 신청했던 자 또는 위탁인이 출국할 때 그 영수증(보관증)을 항공회사에 제출하여 공항화물 보관창고에 인수여부를 확인한 뒤 비행기에 실어서 출국시킨다. 항공회사는 위탁운반 화물표를 원래 보관을 신청했던 자 또는 그 위탁인에게 발급해 주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표로 물건을 인수 할 수 있게 한다.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은 원래 보관을 신청했던 자 또는 위탁인이 공항화물 보관창고에 가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물건을 인수한 뒤 휴대하여 출국한다.

제 6 조 : ① 민간항공국(民用航空局)은 무료보관한 대륙물건의 훼손·유실에 대해 보상 책임을 진다. 단, 민용항공국에서 그 훼손이나 유실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혹은 보관물의 성질에서 비롯된 또는 원래 보관을 신청한 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보상액의 표준은 항공여객화물 손해배상법 제 4 조 제 1 호 및 제 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大陸撤收前國家行政機關의一切의債務에대한 一律的인支拂保留를公布하는電文

○ 民國 40年(1951) 1月 5日 財務部台財錢發(40)
第00059號

1. 原 因

재무부앞으로 보낸 중앙은행의 전문을 살펴보건대 본점·지점이 각 해당지역에서 철수할 당시 시국의 돌변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인원과 장부를 미처 철수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각 항목의 채권·채무에 관해 갑자기 정리할 도리가 없게 되었는데 요즘 일부 채권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은행에 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는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법적 소송을 걸기까지 하여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 (1) 중앙은행은, 대륙에서의 군사적 실패로 인해 다시 대만으로 避難 이전하고 70여 곳의 은행지점이 속속 함락되어 정리되지 않은 채권·채무도 상당량에 이르며, 한두건의 정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할지라도 일단 그러한 전례가 한번 생기고 나면 기타 함락지역에 흩어진 인원·장부들이 이미공산당 측에게 빼앗긴 증거를 위조함으로 해서 대만측에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고,

- (2) 본 은행의 대륙에서의 손실은 막심하여 정부 입체금은 물론 각 지역 군정(軍政) 기관에 대여한 금액도 회수(回收)가 어려우며 특히 부채방면은 일시에 정리하기가 더욱 힘들며
- (3) 본 은행의 현재 자금 능력은 군사 반란 평정 비용을 지지해 주는 것도 부족할까 우려될 정도로 더 이상 다른 일에 분산시킬 수 없는 실정이므로 전술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자금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각종 증거를 제시하여 본 은행에 보상을 요구하는 여러 폐단의 발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포(公布) 시행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심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2. 根 據

은행업의 전쟁전(前) 예금 상환조례와 보충조례를 검토하면, 이미 행정원39년(1950) 5월 9일 台39(財)字 제1905호 지령의 공문에 따라서 입법원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고, 중앙은행의 모든 각종 외환예금에 대하여는 결제증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와 외환이전(移轉)증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지불을 일률적으로 잠시 보류하여, 대륙 광복(光復) 후에 이자를 참작·합산하여 각 안건 별로 보상한다는

행정원39년(1950) 6월 17일 台39(財)字 제2880호 및 1881호 두개의 지령에 따라 各案이 계류중임.

또한, 중앙은행에 따르면 철수이전에 있었던 모든 각종 채무는 일시에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더구나 국가 기관마다 철수 전에 지니고 있었던 채무의 상환 역시 똑같은 곤란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외환채무를 확정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 기관이 대륙에서 철수하기 전 지니고 있던 모든 채무는 국가총동원법 제16조 「본 법의 시행 후 정부가 필요시에는 화폐유통과 換의 區域 및 국민 채권의 행사,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원에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잠시 보류할 수 있으며 대륙광복 후까지 기다렸다가 따로 처리 방법을 정하였으며 이는 행정원39년(1950) 12월22일 台39(財)字 제7011호 지령의 「제출한 청원의 열람을 畢하고, 그대로 처리할 것을 비준함. 본 行政院 164次회의에 보고하는 외에 즉시 알려 시행하기 바람.」 등의 근거를 거친 것임.

3. 通知事項

별도의 電文을 보내는 외에 滬電도 함께 보내니 이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臺灣企業體職員의大陸展示會參加 및視察에關聯한業務處理要點

○ 民國 79年 (1990) 8月 21日 行政院大陸工作會報 台79
陸行字第1080號函修正

1. 대만지구 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대륙에 직원을 파견하여 시찰 및 전시회 참가를 하려면 본 요점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본 요점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요점에서 칭하는 대만지구 업체란 회사법, 상업등록법에 의해 조직 설립된 회사, 합자 및 단자 사업, 관련있는 동업公會 및 상공업 업무와 관련있는 재단 혹은 사단법인을 말한다.
3. ① 대만지구의 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사원을 대륙에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각 행위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가. 상업업무상의 시찰
 - 나. 국제적 전문 전람회에 참가하는 회사, 외국 혹은 제 3지역이 대륙에서 개최하는 상업전시회에의 참가
- ② 전항 제가호의 신청은 직접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한다. 제나호의 신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허가를 받은 뒤 다시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 관리국에 신청한다.

4. 제 2 조에 규정된 「관련있는 동업 公會 및 상공업 업무와 관계있는 재단 혹은 사단법인」 등의 민간단체에서 인원 및 단체를 대륙지구에 파견할 경우 반드시 먼저 서면(書面)으로 시찰계획서와 단원의 명단을 갖추어 중앙의 해당사업 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다시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신청을 한다.
5. ①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4 조에 의거하여 대륙지구로 가는 것을 신청할 경우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각 개인의 매회 체류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 의거하여 대륙에 가는 것을 신청한 자의 체류기간은 경제부 국제무역국이 실제수요를 살펴 심사 결정한다.
6. 대만지구의 업체가 허가를 거쳐 대륙지구에 들어갔을 때 허가된 목적과 다른 일에 종사하거나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7. 대만지구 업체 및 그 업체에서 파견된 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제반 증명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기타 허위사실이 있을 때 사법기관에 보내 처리한다. 또한 해당 업체는 본 요점에 의해 1년간 대륙지구에 인원파견 신청을 할 수 없으

며 파견된 인원 역시 1년간 대륙지구에 가지 못한다. 그 위반 사항이 엄중한 경우 대륙지구에 인원파견을 금지하도록 기한(時限)을 연장시킨다.

臺灣企業體職員의大陸展示會參加및視察에關聯한 業務處理規定

○ 民局 79年(1990) 5月 11日 內政部台警字
第801762號函

1. 「대만기업체직원의 대륙전시회참가및시찰에관련한업무처리
요점」(이하 업무요점이라 칭함)에 의거하여 본 업무규정
을 정한다.
2. 대만지구 업체가 대륙지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그 직원
이 현역군인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겸하고 있다면 본 규정
을 적용시키지 아니한다.
3. 「업무요점」 제 3 조에 규정된 회사법, 상업등록법에 의해
조직·설립된 회사, 합자 및 단자 사업체에서 대륙지구에
시찰인원을 파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한다.
 - ① 출입국신청서 1부(반명함판사진 4장 첨부)
 - ② 대륙지구 방문신청서 1부
 - ③ 대만지구 업체관계 증명서류 : 회사등록증(혹은 공장등
록증), 영리(營利) 사업 등록증 및 납세증명서류 등
4. 「업무요점」 제 3 조에 규정된 「관련있는 동업公會 및 상공

업 업무와 유관한 재단 혹은 사단법인」 등의 민간단체에서 직원이나 단체를 대륙지구로 시찰차 파견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① 출입국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4장 첨부)

② 대륙지구 방문신청서 1부

③ 중앙 목적사업주관기관의 허가서 1부

5. 대만지구의 업체가 직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국제적인 전문 전람회(전람회)에 참가하거나 외국 혹은 제 3 지역이 주최하는 상업전시회에 참가할 때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한다.

① 출입국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4장 첨부)

② 대륙지구 방문신청서 1부

③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허가서 1부

6. 대만지구의 업체가 대륙지구로 파견하는 직원이 이미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수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제3·4·5조의 규정에 의해 업체관계 증명서류 혹은 중앙 목적사업주관기관의 허가서류 또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허가서류 및 대륙지구 방문신청서를 구비하여 출입국관리국에 등기(登記) 수속을 해야한다.

7. 대만지구의 업체가 특수 상황으로 이미 외국이나 제 3 지역에 가있는 직원을 대륙지구로 파견할 경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대만으로 돌아오게한 뒤 1개월 이내에 등기 수속

을 한다.

8. 본 업무규정중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여 수정한다.

大陸地區로間接輸出하는貨物의管理法

- 民國 79年(1990) 8月 21日 行政院大陸工作會報 台9
陸行字第1081號函
- 全文 8條 條文

제 1 조 : 업체에서 대륙에 물건을 간접수출하고자 신청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타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조 : 업체에서 대륙지구로 물건을 간접수출 하려면 아래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

1. 그 수출방식은 반드시 국외(國外) 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한다.
2. 그 구입자는 반드시 대륙지구 이외의 지역에 있어야 하며 또한 정부에서 직접수출을 허가한 국가나 지역의 업체여야한다. 단, 대륙지구의 법인체·단체 혹은 기타기관의 지점(支店) 이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 ① 대륙지구에 간접수출을 하는 업체는 일반물품의 수출비자 심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원래 수출허가증 발급을 면제받은 물품이라도 여전히 권한있는 수출비자은행에서 비자를 수속해야 한다. 加工輸出區域의 업체는 직접 각 해당 加工輸出區域 관리처에 신청한다. 과학공업단지 구

역내의 업체는 직접 그 관리국에 신청한다.

② 업체에서 대륙에 고급 과학기술산품을 간접수출하려고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수출관계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 4 조 : 대륙지구에 물품을 간접수출하려면 그 수출서류에 기입하는 목적지는 반드시 「대륙(CHINESE MAIN LAND)」이라고 써야한다.

제 5 조 : 대륙지구에 간접수출하는 물품중에 국가안전 혹은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으면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는 이 물품의 수출정지를 공고하도록 경제부에 보고·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 대륙지구에 물품을 간접수출하는 업체가 본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제무역국에서는 그 업체의 1년간의 수출입 신청을 정지시킨다.

제 7 조 : 업체가 아닌 자가 대륙지구에 물품을 간접수출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무역국에 신청해야 하며 본 법의 업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大陸地區로間接投資하거나技術合作을 하는경우그事業者들에대한管理方法

- 民國 79年(1990) 10月 6日 經濟部經(79)
投資 046549號令 公布
- 全文 10條 條文

제 1 조 : 대만지구의 주민·법인 또는 단체 및 기타 기구에서 대륙지구에 투자 혹은 대륙지구와의 기술합작에 종사할 경우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조 : 본 법의 주관기관은 경제부이며 경제부 투자심의 위원회(이하 투심회로 부른다)가 집행기관이 된다.

제 3 조 : 대만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및 기타 기구는 직접 대륙에 투자 하거나 기술합작을 해서는 안되며 간접투자 및 기술합작도 반드시 주관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제 4 조 : ① 전조에서 언급한 대만지구 주민·법인·단체 및 기타 기구의 대륙지구에의 간접투자는 반드시 제 3 지역에 투자·설립된 회사·사업체를 통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대륙지구의 단독 혹은 연합출자(出資) 대륙지구의 주민

- 법인·단체 및 기타 기구와의 공동투자로 현지(當地) 새 사업체의 창설, 자본을 늘려 원래 현지에 있던 사업체를 확장 혹은 현지 사업체의 주식 매입, 기타 방식으로 출자한다.
2. 대륙지구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지사를 확장한다. 혹은 기타 영업장소를 개설한다.
 3. 제 3 지역에서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및 기타 기구가 국외에 투자 설립한 회사·사업과 연합출자하여 새 사업을 창설, 자본증자로 본래 있던 사업을 확장 혹은 현지 사업체의 주식 매입 기타 방식으로 출자한다.
- ② 전조에서 말한 대만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및 기타 기구의 대륙지구에 대한 간접 기술합작은 반드시 제 3 지역에 투자설립된 회사·사업체를 통해야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및 기타 기구에 전문기술·전매특허권·상표전용권·저작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식자본으로 일정한 보수금을 취득하는 합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2.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혹은 기타 기구가 국외에 설립한 회사·사업체에 전문기술·전매특허권·상표전용권·저작권 등을 제공하려면 주식자본으로 일정한 보수금을 취득하는 합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 5 조 : 대만지구의 주민·법인·단체·기타 기구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 대륙지구에 간접투자하거나 기술합작에 종사하는 경우 그 산업이나 생산품 및 기술합작 항목은 국가 안전 및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이 목적사업주관기관과 의논하여 결정·공고하며, 그것의 침삭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 6 조 : ① 대만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및 기타 기구가 전 2 조의 규정에 의해 대륙지구에 간접투자 혹은 대륙지구과의 기술합작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투심회에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외환을 주식자본으로 하여 투자할 경우 매 투자사업당 투자금액이 100만 US\$ 이하인 것은 투자실행 개시이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신청한다.

② 대만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및 기타 기구가 본 법이 시행되기전에 이미 대륙지구에 간접투자나 기술합작을 실행하였고 그것이 전 2 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반드시 본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간접투자 혹은 기술합작의 허가 안건(案件)은 주관기관이 관계기관 또는 관련(關聯) 공회(公會)에 보도(輔導) 조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심사를 신청한 안건 중에

서 허위 기재한 것은 주관기관에서 취소시킨다.

제 9 조 :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투자나 기술협작은 주관기관
에서 상관기관에 의뢰하여 관계 법령대로 처리한다.

제 10 조 :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V. 文 教 規 定

現段階國際會議나活動이大陸과 關聯된境遇의業務處理要點

○ 民國 79年(1990) 3月 26日行政院 大陸工作會報 台79
陸行字 第290號 書翰

I. 會議나 活動이 大陸地區에서 開催 되는 境遇

1. 국제조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활동에 우리측 學術機構나 民間團體, 個人의 출석이나 참여가 요청된 경우에는 해당 기구나 단체, 개인은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리측 政府機關의 인원 파견, 출석 및 참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개별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국제조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활동에 우리측 學術기구나 民間단체, 個人의 출석이나 참여가 요청된 경우가 아닐 때에는 개별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단, 중공이 단독으로 발기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는 우리측 정부기관의 인원은 참가할 수 없다.
3. 상술한 국제회의나 활동을 만약 대륙과 유관한 법인이나 단체, 기구가 단독으로 개최하거나 다른 국제조직과 연합으로 개최한 경우에는 우리측 피초청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공히 발기나 주최, 협찬에 참여할 수 없다.

4. 우리측에서 회의나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이 대륙지구에 머무는 기간은 회의활동 일정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으로 한한다.
5. 회의나 활동에 참가하는 우리측 인원의 언행은 우리나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우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6. 회의나 활동에 참가하는 우리측 인원이 대륙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입국시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에 심의 기준을 신청해야 한다.
7. 회의나 활동에 참가하는 우리측 인원이 명칭이나 旗, 國歌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모두 주관기관에서 이미 정한 규정이나 일반적인 국제관례 및 평등한 원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우리 측에게만 단독으로 불리한 중공이나 주관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II. 會議나 活動이 第三地域에서 舉行되는 境遇

8. ①우리측 학술기구나 민간단체, 개인은 제3지역에서 중공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나 활동에 출석하거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나 활동을 중공이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공동으로 주관(협찬)하는 경우에는 개별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중공과는 제3지역에서 어떠한 회의

나 활동도 연합으로 주관하거나 공동주관할 수 없다.

②전항의 회의나 활동이 만약 정부기관 인원의 참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개별안건으로 처리한다.

③우리측에서 전 2 항의 회의나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지위가 대등한 기타 참여자와 동등한 권익을 누려야 한다. 아울러 국호나 국기, 국장(國章) 및 國歌의 사용을 최대한 쟁취하도록 한다.

Ⅲ. 執 行

9. 본 요점의 각 규정의 집행은 각기 그 회의나 활동의 성질에 부합하는 주관기관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외무부(外務部)에 고지한다. 다만, 회의나 활동이 회원자격이나 명칭, 기(旗), 國歌 및 기타 권익문제에 관한 것 등과 관련될 때에는 각 해당 주관기관에서 먼저 외무부와 협의한 후 심의 결정한다.

Ⅳ. 附 則

10. 본 요점은 行政院의 심의 결정후 실시한다. 수정할 때도 같다.

現段階文教機構・民間團體人員의 大陸地區派遣・訪問業務處理要點

- 民國 79年(1990) 5月 16日政府
行政院 大陸工作會報 台79
陸行字第511號書翰
- 民國 80年(1991) 5月 16日政府
行政院大陸委員會(80) 陸文字
第1093號 書翰修正

1. 법에 의해 입안된 아래의 학교, 기구, 단체는 법령에 의거하여 대륙에 들어갈 수 없는 인원(이를테면 공무원, 현역군인, 현직 경찰 및 대학 전문학교의 총, 학장 등) 및 국방에 관련되거나 기밀을 요하는 고급 과학기술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중앙목적사업 주관기관에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를 방문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각급 공·사립학교

②사회교육기구

③학교연구기구

④직업, 사회단체 및 재단법인을 포함한 민간단체

2. 전조의 학교, 기구, 단체가 파견한 인원이 대륙지구를 방문하려면 먼저 서면으로 방문계획 및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

은 뒤, 다시 내무부 경찰국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은 각 학교, 기구, 단체가 대륙지구를 방문하기 전에 적당한 방식으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요점에 의거하여 대륙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각 사람마다 매번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대륙지구를 방문하는 인원이 대륙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6. 본 요점을 위반하는 자는 관련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7. 각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은 본 요점에 의거하여 따로 처리규정을 두어야 한다.
8. 본 요점은 정부의 심의 결정을 거친 뒤 시행하며 수정할 때도 똑같다.

現段階文教機構·民間團體派遣 人員의 大陸地區訪問業務處理規定

- 民國79年(1990) 7月 5日政府
大陸工作會報 台78 臺陸文字
第832號書翰
- 民國80年(1991) 6月 7日教育
部 臺(80) 文字 第28860號
書翰修正

1. 根 據

「현단계문교기구·민간단체인원의 대륙지구파견·방문업무처리요점」의 제 7 조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申請條件

이미 입안된 아래의 학교, 기구 및 단체는 법령상 대륙에 갈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그 소속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를 방문할 것을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다.

- ①각급 공, 사립학교
- ②사회교육기구
- ③학술교육기구
- ④교육, 문화, 체육 및 연예업무와 관계있는 민간단체
(직업, 사회단체 및 재단법인을 포괄)

3. 申請方式

- ①각급 공·사립학교 :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교육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②사회교육기구·학술연구기구 및 민간단체 : 중앙부회(中央部會)는 입안자의 신청을 심의 비준하거나 교육부에 보고하고, 지방정부가 심의 비준한 안건들은 행정절차에 따라 교육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4. 具備書類

- ①신청서 : 신청기관이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정식으로 배포한 서류
- ②입안증명 : 법에 의거한 입안의 증명문건 사본(학교 및 공립기구, 단체는 제출을 면제)
- ③서면방문계획 : 방문목적, 기간, 예정일정, 방문대상 및 경비출처 등
- ④방문자 명단 : 성명, 성별, 본적(貫籍),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근무처, 현직, 병역상황 및 호적소재지 등
- ⑤초청장(초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제출을 면제)
- ⑥신분증명사본(공립기구는 제출을 면제)
- ⑦근무처동의서(공립기구 및 학교 종사자는 반드시 제출)

5. 注意事項

①현행 법령상 대륙에 갈 수 없는 사람

가. 공무원

나. 현역군인이나 현직 경찰관

다. 군, 경찰학교 인원

라. 대학교, 전문대학의 총학장, 독립 단과대학의 학장

마. 국방이나 기밀을 요하는 고급과학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 정부기관의 연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신분의 인정을 위탁기관에서 한다.

전술한 인원이 만약 다른 법령에 의거해 대륙지구에 가는 것을 신청하거나 특별한 건으로 심의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교육기구는 재직중인 연구인원중에서 선발 파견하는 것에 한하며 초빙기구의 책임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학교의 강의나 수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교에서 파견하거나 민간단체에 참가하여 대륙지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또는 기타 휴가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경기 및 정식 선수권대회의 참관, 시찰이나 특수한 필요로 인하여 개별안건으로 비준을 신청한 자 이외에는 재학중인 학생의 선발 파견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학술연구기관은 휴가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않지만 청구의 경우는 휴가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④대륙지구를 방문하는 경비는 일률적으로 스스로 부담한다.

⑤교육부는 대륙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필요로 할 때 안내를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방문인원이나 단체가 대만으로 돌아온 뒤에는 교육부에 방문경과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대륙지구의 방문 신청에 관한 사항은 여권조례, 여권조례시행세칙, 대만지구이민입출국관리업무규정, 현단계 국제회의나활동이대륙과유관한문제에관련된업무요점, 공공교육인원의출국신청안건심의요점 및 현단계공립학교교직원의대륙지구친지방문신청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現段階宗教團體의派遣人員이大陸地區 에서 宗教活動에 從事할境遇의 業務에관한規定

○ 民國 79年(1990) 10月 15日 內政部
臺(79) 內民字 第840294號 書翰

1. 根 據

「현단계문교기구·민간단체에서파견인원의 대륙지구방문
업무처리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2. 申請條件

이미 법에 의거해 입안되거나 등록된 종교단체(사찰, 교
회단체 및 재단법인을 포함)는 법령상 대륙에 갈 수 없
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중앙의 주관기관에 그 소속인원을
대륙지구로 파견하여 종교활동에 종사할 것을 신청하여
야 하며, 허가를 얻은 뒤, 다시 내무부 경찰국 출입국관
리국에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申請方式

이미 법에 의거해 입안되거나 등록된 종교단체(사찰, 교
회단체 및 재단법인을 포함)는 해당 종교단체의 사찰이
나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성(省)이나 시(市)정부에

서 먼저 심의하여 잘못이 없을 때 다시 내무부에 계통보고하여 처리한다.

4. 具備書類(각 3장씩)

- ①신청서 : 종교단체 명의의 정식서류에 신청
- ②입안이나 등록증명 : 종교단체가 법에 의거하여 입안하거나 등록한 증명문건 사본
- ③활동계획 : 활동시간, 목적, 방문대상, 내용, 예정일정 및 경비
- ④활동참가 인원명단 : 성명, 성별, 호적(貫籍),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근무처, 현직, 병역상황 및 호적소재지 등의 자료
- ⑤초청장 : 초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제출을 면제
- ⑥신분증명사본
- ⑦근무처 동의서

5. 注意事項

- ①현단계 법령에 의거하여 대륙에 갈 수 없는 사람
 - 가. 공무원
 - 나. 현역군인이나 현직 경찰관
 - 다. 군, 경찰학교 종사자
 - 라. 대학, 전문대학의 총장, 독립단과 대학의 학장

마. 국방이나 기밀을 요하는 고급과학기관의 연구 위탁을 받은 자 그 신분의 인정은 위탁기관에서 한다.

전술한 인원이 만약 다른 법령에 의거해 대륙지구에 가는 것을 신청하거나 특별안건의 심의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종교단체에서 그 소속인원을 대륙에 파견하여 종교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생을 파견해서는 아니되며, 이로써 학교수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
- ③대륙지구에 가서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비는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스스로 부담한다.
- ④내무부(內政部)에서는 대륙에 가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본 업무규정에 의거해 대륙지구에 가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것에는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각 사람마다 매회 머물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대륙지구를 방문하는 인원이 대륙에 있는 기간동안에는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방해가 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본 업무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계법령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 ⑦종교단체가 대륙지구에 가서 종교활동에 종사하고 대

만에 돌아온 뒤에는 일개월 내에 주관기관에 방문경과의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대륙지구에 가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신청하는데 관한 사항은 여권조례, 여권조례시행세칙, 대만지구 주민출입국관리업무규정, 현단계국제회의나활동이대륙과 관련된경우의업무요점, 공공교육종사자출국신청안건심의요점및 현단계공립학교교직원대륙지구친지방문신청업무규정, 징집대상연령의남자¹⁾의출국처리법 등의 법규와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 만18세에서 45세까지의 남자

現段階大陸人士의臺灣參觀 및訪問申請業務處理要點

○ 民國 79年(1990) 7月 12日 行政院
大陸工作會報 台79 陸行字 第855號
書翰

1. 申請資格

대륙의 인사로서 아래 자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만의 참관,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 ①전문적 조예를 갖고 있는 학술, 문화, 체육 및 연예인사
- ②각 주요 대중언론방송사업사 소속의 관련 전문인사
- ③현재 해외의 자유국가·지역에서 연구하거나 연수하고 있으면서 학술적 위치나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륙의 학자나 유학생
- ④대륙이나 해외에서 민주운동을 지도하면서 뛰어난 활동을 보여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

2. 申請方式

- ①학술, 문화, 체육, 연예인사, 해외학자 및 유학생
해외의 자유국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우리측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을 수리한 뒤 신청문건을 교육부로 전달하고 대륙에 거주하는 자는 대만에 있는 유관기관, 학교, 단체가 대신하여 교육부에 신청한다.

②대륙전파인사

해외의 자유국·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우리측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을 수리한 뒤 신청문건을 行政院 新聞局으로 전달하고, 대륙에 거주하는 자는 대만에 있는 대중언론사업사가 行政院 新聞局에 대신 신청한다.

③민주운동인사

우리측 주재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문건을 내무부(內政部)로 전달한다.

④교육부, 내무부(內政部), 行政院 新聞局은 전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심의한 뒤 신청문건을 내무부 경찰국 출입국 관리국 (이하 경관국(境管局)으로 약칭한다)으로 이첩하여 심의 비준한 뒤 여행증을 발급하여 해외대사관, 영사관(기구)이나 대만에 있는 대리신청단체(사업사)로 보내야 한다.

3. 具備書類

- ①참관방문계획서 1부
- ②여행증신청서 1부 (2인치 반신사진 4장 첨부)
- ③보증서 1부

- ④ 제 3 지역 재입국비자나 제 3 지역 거류증 혹은 홍콩신분증 사본
- ⑤ 대리신청위탁서 1부(단, 대리신청 경우에만 적용함)

4. 其他規定

- ① 신청인 가운데 국가비상총동원시기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제 1 항에서 제 4 항까지(1. 공산당이나 기타 반란 조직에 참가하거나 활동한 자 2. 폭력이나 테러조직에 참가했거나 활동한 자 3. 내란죄, 외환죄와 관련하여 중대한 혐의가 있는 자 4. 대만지구밖에서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거나 상습범죄자)의 규정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② 공산당 및 그 외곽조직 또는 주변정파에 참가하였거나 당, 정, 군기구의 직무를 책임진 자 가운데 사실에 입각하여 문서로 보고하고 해당조직의 이탈을 선언한 자는 반란징벌조례 가운데 자수의 규정을 참작하여 해당조례 제 9 조제 1 항제 1 호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 ③ 대만에 있는 대리신청단체는 신청인의 배경을 확실히 파악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대만에 온 뒤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이 입국시에는 대만입국 여행증명서를 검사하는 외에도 귀환 비행기표 및 제 3 지역에서 유효한 재입국비

자(그 효력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증명서가 완전치 않거나 귀환 비행기표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비행기로 돌려 보내야 한다.

⑤신청인이 소지한 중공 여권이나 통행증 및 제 3 지역에서 유효한 재입국비자는 입국시에 출입국관리국 공항사무처에 제출 보관하였다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출국시에 반환해 준다.

⑥신청인이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은 2개월로서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허가를 받은 자는 체재기간 및 회수를 연장·증가시킬 수 있다. 단, 매년 총체재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⑦신청인이 대만에 체재하는 동안 법령이나 국가안전, 이익에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면 법에 의해 처리하고 아울러 강제송환시킨다.

⑧신청인이 대만에 체재하는 동안 주관기관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그가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업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다시 대만에 올 수 없다.

現段階大陸人士의臺灣參觀 및訪問申請業務處理規定

- 民國79年(1990) 7月 12日 行政院
大陸工作會報 台 79 陸行字第855
號 書翰
- 民國80年(1991) 2月 22日 教育部
臺(80) 文字 第08311號 書翰
修正

1. 申請資格

①대륙의 인사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중 하나를 가진 자는 교육부에 대만의 참관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전문적 조예를 갖고 있는 학술, 문화, 체육 및 연예인사

나. 현재 해외의 자유국가·지역에서 연구하거나 연수하고 있으면서 학술적 지위나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륙의 학자나 유학생

②신청인이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교육부가 심사조직을 만들거나 관련인사를 초빙하여 심사한다.

2. 申請方式

①신청인이 해외의 자유국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리측 주재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한다.

②신청인이 대륙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만에 있는 관계 기관, 학교, 단체가 교육부에 대리신청한다.

③주의사항

가. 신청원칙 : 신청인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체신청은 받지 아니한다.

나. 신청기한 :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대만에 오기 2개월전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接待機關

신청인은 반드시 대만에 있는 접대기관이 접대사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사전논의하여야 하며, 원래 그 신청을 접수한 해외기관은 연계된 국내기관이 직접 나서서 접대하는 데 협조하고 또 접대기관은 신청인의 전문영역과 상관있는 기관, 학교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4. 具備書類 및 作成說明

①참관방문계획서

신청인이 예정하고 있는 대만 참관방문의 구상, 개인적인 흥미 및 희망(참관기구, 참가하고자 하는 장소 및 면담하고자 하는 인물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접대기관을 통해 작성하면 그 희망을 반영하여 적당한 활동을 안

배한다.

②여행증신청서

신청인마다 모두 신청서 1부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산 업무에 맞추기 위해, 검은색이나 파란색 펜을 사용한문 정자로 작성하되, 가능하면 簡體字 사용을 피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작성방식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람.

- 가. 성명 : 한문성명을 쓰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나 통행증에 기재된 대로 쓴다.
- 나. 영문성명 :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나 비자상의 대문자 정서 표기에 따라 쓴다.
- 다. 원명 : 바뀌기 이전의 성이나 이름, 별명, 별호 등 이전에 사용했던 성명을 모두 기입한다.
- 라. 신분증명번호 : 사실대로 기입하되 없는 사람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 마. 생년월일 : 중화민국 기원으로 환산하여, 곧 서기에서 1911년을 뺀다. 이를테면 서기 1949년은 민국 38년이다.
- 바. 학력 : 대륙, 해외를 나누어 최고 학력을 기입한다.
- 사. 경력 : 대륙, 해외를 나누어 가장 최근에 종사했던 일을 기입한다.
- 아. 참가학술단체명칭 : 대륙 및 해외를 나누어 사실대

로 기입한다.

자. 참가정당명칭 : 사실대로 기입하되, 이미 탈퇴했거나 포기 상태라도 상세한 설명을 붙인다. 어떠한 정당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자는 「無」라고 쓴다.

차. 여권자료 : 현재 갖고 있는 여권자료에 따라서 기입한다.

카. 외국비자자료 : 소지하고 있는 제 3 지역의 유효한 입국비자의 자료에 따라 기입하되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아도 좋다.

타. 대만내 주소 : 고정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된 처소나 여관 또는 접대기관의 주소나 명칭을 기입하여도 좋다.

파. 기술자료 : (한문으로 기입 할 것)

(i) 대륙의 전문인사는 개인경력의 요점을 기입하며, 아울러 뛰어나거나 전문적인 업적 및 공헌 등의 사항을 서술

(ii) 대륙의 해외학자는 말았던 강의연구나 전문적인 직무의 요점을 기입하며, 아울러 그가 해외에서 연수, 연구 또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자비인지 공비 또는 외국의 장학금의 도움인지 또 초청강의에 응한 것인지 초청방문인지 등을 서술

(iii) 대륙의 해외유학생은 구학경력(求學經歷)에서 대륙에서 공부한 학교나 참가한 훈련 및 해외 연수 또는 자비·공비·외국장학금의 보조여부 등을 분명히 서술

하. 친척상황 : 사실대로 기입하되, 기혼여성이라도 결혼전의 부모성명을 기입

가. 접대기관 :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주소, 전화 및 연락인의 성명을 기입

③보증서

가. 보증서는 신청인이 현재 국내에 적을 두고 있는 보증인에게 위탁하여 보증인이 기입하고 친필서명한다. 외국인이나 국외에 교포로 거주하는 우리나라 인민 또는 교민단체는 공히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나. 만약 피보증인이 대만으로 떠나기 전에 가고자 하는 제 3 지역의 유효기간 6개월짜리 비자를 미처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보증서를 낼 때 잠시 기입을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피보증인이 소지한 제 3 지역의 유효기간 6개월짜리 비자는 반드시 도착하기 전에 취득하고 아울러 입국심사때 확인이 되어야 입국할 수 있다.

④대리신청위탁서

신청인은 대만의 접대기관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때 반드시 친필서명의 위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초청받아 대만에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필서명의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위탁서나 동의서 없이 대리 제출한 신청안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⑤전문적인 조예나 학술적 지위 또는 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전문인사·해외학자는 자신이 얻은 영예나 훈장 및 전문적인 조예 또는 면허증이나 저작(저작이 많은 경우에는 저작연표를 부가해주시기 바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학생은 재학증명이나 성적표 또는 교수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방문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각 항의 항목을 기입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본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기재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책임을 모두 신청인 스스로가 진다.

5. 其他規定

①해외의 자유국가에 체재하는 대륙의 학자, 유학생이 대만에 참관, 방문하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상황을 보아 대만참관·방문인원의 숫자를 제한한다.

②대륙의 인사가 연로하여 행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대만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배우자나 자녀 1인의 대동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조건과 순서는 신청인과 신청표준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며 특별안전으로써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③상업행위의 제한

가. 「현단계대륙인사의 대만참관 및 방문신청업무처리요점」 제 4 항제 8 호의 이른바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허가증이 필요한 전문적인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은 신청인이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i)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

(ii)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

다만, 대륙의 인사가 초청을 받아 외국국적의 예술단체인원을 따라 대만에 와서 공연하거나 우리나라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대만에 와서 해당단체의 공연에 참가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자의 인원수는 전체단원의 총원의 1/5을 넘어서는 안되고, 후자의 인원수는 전체단원의 총원의 1/3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연출시간, 장소, 입장

권의 가격 및 선전방식은 교육부의 심의 기준을 거쳐야 한다.

(iii) 계약에 서명하고 면허증이 필요한 직업적인 공연에 종사하는 것

(iv) 문서, 도화를 완성하고 레코드를 취입하거나 비디오를 촬영하고 광고가 직접적으로 대만에서 판매되거나 방송되는 것

나. 신청인은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범, 견학 및 공익적인 활동의 연출에 종사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자는 원신청인의 경우 다시 대만방문 신청을 할 수 없고, 국내의 접대기관이나 신청기관의 기타 대만참관방문 신청안건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④대륙의 인사가 대만을 참관·방문하는 기간은 중화민국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아울러 대륙인사는 참관·방문과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위반자는 상황의 경중을 보아 구두경고, 참관·방문허가 취소, 관련기관의 의법처리 및 필요시 강제송환할 수 있다.

⑤대만에 참관·방문을 신청하는데 관한 사항은 「대륙지구물품관리법」·「합락지구출판물·영화필름·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본국자유지구반입관리요점」 등의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現段階在海外大陸科學技術人士를 臺灣에招聘,科學技術研究發展 作業에參與시키는業務處理要點

○ 民國 80年(1991) 6月 28日 行政院
大陸委員會(80) 陸文字 第1467號
書翰

1. 招聘資格

해외의 자유국가·지역에 체재하는 대륙의 인사가 다음의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으면 대만에 초빙되어 과학기술연구 발전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①이, 공, 의, 농학의 기초 및 응용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학술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 ②특수한 영역의 응용공학기술상 뛰어난 업적을 갖고 있어 대만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2. 招聘方式

①대만에 있는 공, 사립대학, 전문대학이나 연구기구가 行政院 國家科學委員會에 초빙신청을 한다.

②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는 전조에서 정한 초빙자격을 심의한 뒤 신청문건을 내무부 경찰국 출입국 관리국에

보내 심의 비준을 받은 뒤, 여행증을 발급하여 해외대사관, 영사관(기구)이나 대만에 있는 신청학교 또는 기구를 경유하여 발송한다.

3. 具備書類

- ① 과학기술연구발전작업 참여계획서 2통
 - ② 학력, 경력증명서류 사본 및 최근 5년내에 발표한 중요저작 각 1부씩
 - ③ 여행증 신청서 1통(2인치 반신사진 4장)
 - ④ 보증서 1통
 - ⑤ 제 3 지구 재입국비자(거류증), 홍콩신분증, 대륙여권이나 홍콩 마카오 통행증 사본
 - ⑥ 초빙이유설명서
- ※ 이상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4. 其他規定

① 대륙의 과학기술인사가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인 경우에는 신청학교나 기구가 대리로 行政院 國家科學委員會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가. 연구업적이 양호하여 계속 연장 하면 더욱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자

나. 연구계획을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창

할 수 있는 자

②대륙의 과학기술인사의 배우자 및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청을 같이 하여 대만에 올 수 있다.

③대륙의 과학기술인사 및 그 가족은 입국한 뒤 유동인구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 호적등록은 할 수 없다. 만약 병역문제가 제기 되면, 신청학교나 기구를 통해 行政院 國家科學委員會에 병역주관기관이 징(소)집을 연기하는 수속을 처리해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대륙의 과학기술인사 및 그 가족이 입국할 때에는 다음의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증명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원래의 비행기(배)로 되돌려 보낸다.

가. 대만여행증

나. 제 3 지구 재입국비자(거류증), 홍콩신분증, 대륙여권이나 홍콩 마카오 통행증.

※ 이상 증명 문건의 유효기간은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⑤대륙의 과학기술인사 및 그 가족이 소지한 제 3 지역 재입국비자(거류증), 홍콩신분증, 대륙여권이나 홍콩 마카오 통행증은 입국시에 출입국관리국 공항사무처에 보관(영수증을 발급한다)하였다가 출국할 때 돌려준다.

⑥대륙의 과학기술인사 및 그 가족 가운데 국가비상총동원시기국가안전법(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시행세칙 제

12조제 1 호에서 동 4호까지의 상황 가운데 하나인 자는 허가받을 수 없다.

⑦초빙기관은 대륙의 과학기술인사의 배경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가 대만에 온 뒤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대륙의 과학기술인사 및 그 가족이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에 만약 법령이나 국가의 안전,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법처리하고 아울러 강제송환한다.

⑨대륙의 과학기술인사 및 그 가족이 대만에 체재하는 동안에 사정에 의하여 단기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초빙기관이 출입국관리국에 출입국수속을 신청 처리하며, 아울러 출입국관리국이 3개월 유효기간의 출입국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이 기간을 넘어 대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대만에 들어오고 싶으면 본 요점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⑩본 요점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원국가과학위원회국외인재초빙귀국사무처리요점」, 「행정원국가과학위원회특약강좌초빙처리요점」, 「현단계대륙인사의대만참관 및방문신청업무처리요점」 및 기타 관계규정의 전례에 비추어 처리한다.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國外 人士招聘歸國事務處理要點

○ 民國 79年(1990) 5月 2日 行政院
國家科學委員會 修正 通過

1.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이하 본회로 약칭함)는 국가건설의 필요에 부응하여 학술 및 기술상 특수한 조예를 갖춘 국외의 인재를 초빙, 단기적으로 귀국시켜 과학발전작업에 참가토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처리요점을 정한다.
2. 외국국적을 가진 학자의 초빙은 본 처리요점의 규정 전례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3. 인재의 초빙은 본 처리요점 제 4 조 규정의 필요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일반적인 강의 및 비학술적인 행정업무 종사자는 초빙의 대상에 넣지 아니한다. 신청서는 공·사립대학 및 독립단과대학과 공립연구기구가 제출하고 본 회의 심의 결정을 거친 뒤 초빙한다.
4. 본 처리요점에서 칭하는 초빙인재는 두 가지로 나뉜다.
① 객원연구강의인재 - 국외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자가 귀국하여 연구를 시도하거나 국내에 아직 강의 인재가 없는 새로운 학술을 전수하는 자가 이에 속한다. 그 자

격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가. 객원연구정교수

현재 외국 저명대학의 교수로 최근 5년 이내에 가치 있는 저작을 발표한 자

나. 객원연구부교수

(i) 현재 외국 저명대학의 부교수로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 가치있는 논문을 발표한 자

(ii) 현재 외국 저명대학의 조교수로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 가치있는 저작을 발표한 자

②객원전문가-외국 기술전문가로 그 특수한 기술과 경험으로 귀국후 국내의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거나 국내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인재를 훈련시킬 자가 이에 속한다. 그 자격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 외국에 있는 저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계속적으로 전문직업에 4년 이상 종사하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자

나.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으나 특수한 기술상의 독보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 국내외에 회소가치가 있는자

5. 전조의 국외인재를 초빙하는 신청수속은 특정 과학기술

연구항목, 담당학과 및 특정 문제에 대해 본 회가 정하는 계획서식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초빙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본 회에 제출하여 심사토록 한다.

6. 초빙기간은 계획상의 필요를 보아가며 정하되 최단 3개월미만이어서는 안되고, 최장 1년을 기한으로 하되 만기가 되어서도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거나 계획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을 연장한다. 특수한 필요가 있어 다시 초빙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을 거쳐 1년의 재연장을 하여야 한다. 중도에 근무기관을 바꾸는 자는 전후의 초빙기간이 3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7. 대우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여비

가. 초빙기간이 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 회가 그 본인의 왕복직행 2등 비행기표를 부담한다.

나. 초빙기간이 6개월이상 10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본 회가 그 본인 및 배우자의 왕복직행 2등 비행기표를 부담한다.

다. 초빙기간이 10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본 회가 그 본인 및 배우자의 왕복직행 2등 비행기표를 부담하고, 따로 18세이하 자녀의 직행 2등 비행기표를 보조하되 최대 두장의 편도 성인금액으로 한한다.

②주거보조금

가. 이미 근무기관을 통해 숙사를 제공받았거나 공동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보조하지 아니한다.

나. 각 기구가 객원전문가, 객원연구 정·부교수를 초빙할 때는 최대한 숙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숙사를 제공할 방도가 없거나 공동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독신으로 대만에 온 사람은 매월 NT 5천원을 보조하고, 가족이 따라 온 사람은 매월 NT 1만원을 보조하며, 기타의 주거보조금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그 부족한 차액을 보조한다.

다. 부부가 함께 본 처리요점의 보조를 받는 학자거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본 회의 「해외중국인귀국강의연구보조처리요점」의 보조를 받는 학자인 경우에는 모두 NT 1만원을 보조한다.

③본 위원회는 어떠한 형태의 봉급도 지급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가 대만에서 연구 강의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다. 근무기관은 중화민국 세법규정에 따라 매월 피초청인의 소득세를 공제하되, 소득세의 신고는 피초청인 스스로 처리한다. 단, 근무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가. 객원정교수 : 매월 NT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나. 객원연구부교수 : 매월 NT 6만원에서 9만원까지

다. 객원전문가 : 매월 NT 5만 8천원에서 12만원까지

위 항의 대만체재 연구장의비용은 본 회에서 상황을
참작하여 액수를 심의 결정한 뒤, 초빙계약증에 명시한
다.

8. 계획을 집행하는 기간동안 본회는 수시로 사람을 파견하여 관찰하고 실제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아울러 신청기관과 의견을 교환하여 적시에 협조 추진하여, 업무를 개선하는 데 참고한다.
9. 신청기구는 집행종료 된 뒤 2개월 이내에 보고서 3매를 본회에 제출한다.
10. 본 요점은 본회 위원회의를 통과한 뒤 실시하고,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特約講座招聘處理要點

○ 民國 79年(1990) 5月 2日 行政院
國家科學委員會 修正 通過

1.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이하 본 회로 약칭함)는 국가건설의 필요에 부합하여 국외의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단기간 귀국시켜 과학발전작업에 참가시키기 위해 특별히 본 요점을 정한다.
2. 외국국적의 학자를 초빙하는 것은 본 요점의 규정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3. 본 요점에 의거하여 초빙하는 강좌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 전문가의 학식 및 경험으로 축적된 핵심적인 과학지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거나 중요한 과학기술의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또는 고급 지도 연구인재를 훈련시키는 등 모두 국내의 절박한 필요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자격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가운데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①일찌기 국외의 저명대학 교수를 역임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저작발표가 있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자
 - ②학술상 저명한 위치에 있어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그와 같은 분야가 없는 자

③응용과학이나 기술에 있어 특수한 업적이 있고, 아울러 국외에서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2년간 책임진 적이 있는 자

4. 본 강좌의 초빙은 공, 사립대학, 독립단과대학 및 공립 연구기구가 신청을 제출하고 맡고 있는 과목 및 특정의 문체에 대해서 본 회가 정하는 계획서식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초빙개시일 4개월전에 본 회로 송부하여 심사한다.
5. 초빙기간은 계획상의 필요에 따라 정하되 최단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안되고, 최장 1년을 1기로 하여 만기가 되어서도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거나 계획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을 연장한다. 특수한 필요가 있어 초빙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을 거쳐 1년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중도에 근무기관을 바꾸는 자는 전후의 초빙기간이 합계 3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대우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여비

가. 초빙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의 왕복직행 2등 비행기표를 부담한다.

나. 초빙기간이 6개월이상 10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본 회가 본인 및 배우자의 왕복직행 2등 비행기표를

부담한다.

다. 초빙기간이 10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본 회가 그 본인 및 배우자의 왕복직행 2등 비행기표를 추가부담하고, 따로 18세이하 자녀의 직행 2등 비행기표를 보조하되 최대 두 장의 편도 성인표 금액으로 제한한다.

②주거보조금

가. 이미 근무기관을 통해 숙사를 제공받거나 공동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보조하지 아니한다.

나. 각 기관이 객원전문가, 객원연구 정·부교수를 초빙할 때에는 최대한 숙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숙사를 해결할 방도가 없거나 공동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독신으로 대만에 온 사람은 매월 NT 5천원을 보조하고, 가족이 따라 온 사람은 매월 NT 1만원을 보조하며 기타의 주거보조금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그 부족한 차액을 보조한다.

다. 부부가 함께 본 처리요점의 보조를 받는 학자거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본 회의 기타 보조안내를 받는 학자인 경우에는 모두 NT 1만원을 지급한다.

③초빙기간 동안 본회는 어떠한 형태의 봉급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가 대만에서 연구 강의하는 비용

을 부담하며, 매월 NT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본 회가 사정을 참작해 액수를 정하고 초빙계약에 명시한다. 근무기관은 중화민국 세법규정에 따라 매월 피초청인의 소득세를 공제하되, 소득세의 신고는 피초청인 스스로 처리한다. 단, 근무기관은 협조를 해야 한다.

7. 계획을 집행하는 기간동안 본회는 수시로 사람을 파견하여 계획이 집행되는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청기관과 의견을 교환하여 적시에 협조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
8. 계획의 집행이 완성된 뒤 2개월 이내에 신청기구는 매 보고서식의 3매씩을 본회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9. 본 요점은 본회 위원회의를 통과한 뒤 실시하고 수정할 때에도 동일과정을 거친다

現段階大衆言論放送事業社의大陸 地區探訪·攝影·프로그램製作 具備報告業務處理規定

○ 民國 79年(1990) 3月 20日 行政院
新聞局(79) 銘秘字 第04237號
書翰

1. 報告對象

법에 의해 입안·설립된 통신사,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의 뉴스 종사인원, 대만지구 영화, 텔레비전 방송 및 기타 시청(視聽)사업에 종사하는 인원 또는 「홍콩 구룡영화·희극사업 자유총회주식회사」(香港九龍影戚事業自由總會服分有限會社)의 회원은 대륙지구 탐방, 촬영 및 프로그램 제작을 신청함에 있어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報告方式

①법에 의해 입안·설립된 통신사,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의 뉴스 종사인원이 대륙지구를 탐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업사(事業社)를 통하여 사전에 정부 신문국(行政院新聞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에 의해 입안·설립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 및 기타 시청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륙지구에 가서 촬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업사(事業社)를 통하여 사전에 정부 신문국(行政院新聞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홍콩 구룡영화·희극사업 자유총회주식회사〉의 회원이 대륙지구 탐방, 촬영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당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대중언론방송사업사가 대륙지구를 탐방, 촬영하거나 시청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 중공측의 자금을 받거나 중공과 공동으로 탐방, 제작, 출판, 발행이나 중공과 기타 합작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상의 필요로 해서 해당지역의 기술적 측면의 지원을 받거나 해당지역의 임시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대륙지구를 탐방하여 얻은 뉴스보도 내용이나 대륙지구에서 찍은 필름, 녹화 제작한 현지의 텔레비전 방송이나 기타 시청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①반란평정조례(懲治叛亂條例)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의 상황이 들어 있는 것

- ②출판법, 영화법, 텔레비전 방송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
- ③중공을 대표하는 도안을 적극 표현하거나 간체자(簡體字)를 사용하는 것. 단, 내용이나 극의 전개과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 들지 않는다.
5. 대만 및 홍콩 구룡지구 영화 텔레비전 방송 및 기타 영화예술인이 대륙지구에서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6. 국제적 조직의 회원자격을 갖고 있는 신문, 영화, 텔레비전 방송 및 시청(視聽)민간단체는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따로 해당조직이 대륙에서 거행되는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7.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8. 본 규정의 실시요항은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現段階뉴스從事者의大陸探訪에 관한報告業務實施要項

○ 民國 79年(1990) 6月 5日 行政院
新聞局(79) 銘內一字 第07408號
書翰 修正

1. 본 요항은 「현단계대중언론방송사업사의대륙지구탐방, 촬영, 프로그램제작에관한제반보고업무규정」(이하 보고업무규정이라 약칭) 제 8 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2. ①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발행되며, 등록·설치된 통신사,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텔레비전 뉴스종사자는 대륙지구 탐방을 신청함에 있어 본 요항에 따라 구비보고를 처리한다.

②전항의 종사자가 만약 공무원이나 군인신분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제반 보고를 신청할 수 없다.

3. ①통신사,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이 구비보고 업무규정 제 2 조제 1 항에 따라 행정원 신문국에 구비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사가 구비기재한 보고서 3매에 구비보고 인원의 최근 반명함판 사진 3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②동일한 사업에 2인 이상의 구비보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비보고인원 명부 1건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4. 법에 의해 등록·인가된 해외 화교 신문사업체가 국내에 파견한 신문종사자가 취재의 필요로 인해 구비보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화교업무위원회가 행정원 신문국에 이첩 심의하고 본 요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법에 의해 등록인가된 외국의 駐대만 대중언론방송사업사가 고용한 중화민국 국적의 신문종사자가 취재의 필요에 의해 구비보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근무기관이 증명을 갖추어 제출해야 하고, 서한으로 행정원 신문국에 보고하여 본 요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구비보고인원이 대륙지구를 취재하는 것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각각의 사람이 매번 머무는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7. 통신사,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은 대륙지구로 분·지국이나 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주재원을 파견할 수 없다.

8. 대륙지구를 취재하여 얻은 뉴스성의 보도나 프로그램을 대만지구로 보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제 전신설비나 제3국지역의 설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

9. 구비보고인원이 만약 본 요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원 신문국은 1년 이내에 그 구비보고의 신청을 받아 들

이지 않는다. 구비보고기구가 1년 이내에 본 요항 규정을 3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現段階映畫事業社의大陸地區에서의 撮影具備報告業務實施要綱

○ 民國79年(1990) 6月 6日 行政院
新聞局(79) 銘影一字
第07433號 書翰 修正

1. 영화사업사로 하여금 대륙지구의 자연환경,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영화를 찍어 국내의 관중들에게 제공·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현단계대중언론방송사업대륙지구탐방·촬영·프로그램제작구비보고업무규정」(이하 구비보고업무규정) 제 8조에 따라 본 요강을 정한다.
2. ①법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된 대만지구 영화사업의 종사자나 홍콩의 「홍콩 구룡 영화·희극사업 자유총회 주식회사」의 회원이 대륙지구에 가서 영화를 찍는 경우, 본 요강에 따라 구비보고를 처리한다.
②전항의 종사인원이 공무원이나 군인신분을 겸한 경우에는 구비보고를 신청할 수 없다.
3. 대만지구의 영화사업종사자는 구비보고업무규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행정원 신문국에 구비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사가 구비보고서 3장을 갖추어 기재하고, 구비보고 인원의 최근 반명합판 사진 3장, 신분증 사본, 제작계획 및 일정

표 각 3 장씩을 첨부한다.

4. 홍콩 구룡지구는 구비보고업무규정 제 2 조 제 3 항에 따라 「홍콩, 구룡 영화·회극사업 자유총회 주식회사」에 구비보고하는 경우 그 구비보고 서식은 해당공사가 정한다.
5. 구비보고인원이 대륙지구에 가서 영화를 찍는 것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 각 사람마다 머무는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6. ①구비보고업무규정 제 3 조의 이른바 「기술측면의 지원」은 장소, 기재, 도구 및 복장 등의 지원을 포괄하며, 「현지의 임시고용인」은 대륙지구의 영화예술사업의 종사자나 중공 당, 정, 군간부를 제외한다.
②임시고용인이 우리측 영화에 출연할 경우 주·조연을 맡을 수 없고, 영화필름 및 그 광고물 가운데 이름을 넣을 수 없다. 이로써 대만지구 영화예술사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7. 구비보고기구가 대륙지구에 영화를 찍으러 갈 때에는 그 구비보고 인원을 감독, 통제해야 하고, 구비보고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대만지구 영화사업사가 대륙지구에 분·지국 또는 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주재원을 파견할 수 없다.
9. 구비보고기구 및 구비보고인원이 구비보고업무규정 제 2 조 제 2 항이나 제 3 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영

화필름 검열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0. 영화필름이 구비보고업무규정 제 3 조나 제 4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심의할 때 수정을 명령하여 곧 바로 삭제하거나 방영을 금한다.
11. 구비보고인원이 구비보고업무규정 제 5 조나 본 요강의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화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 구비보고인원이 본 요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원 신문국은 1년 이내에 구비보고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구비보고기구가 1년 이내에 본 요강규정을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3. 구비보고업무 규정이 공포, 실행되기전 2년이내에 대륙지구에 가서 촬영한 영화필름은 특별 안전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영화사업사는 구비보고업무를 보충 실행한 뒤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수입증명자료를 검토 첨부 해야한다.

現段階텔레비전放送事業社및 프로그램 供給事業社의大陸地區에서의 프로그램 製作具備報告業務實施要項

○ 民國 79年(1990) 6月 6日 行政院
新聞局(79) 銘廣一字第07412號
書翰 修正

1. 텔레비전방송사업사,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공급사업사가 대륙지구의 자연환경, 문화, 자산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 국내의 관중에게 제공하여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현단계대중전파사업사의대륙지구탐방, 영화촬영, 프로그램제작에관한구비보고업무규정」(이하 구비보고 업무규정으로 약칭) 제 8조에 따라 본 요강을 정한다.
2. ①법에 의거하여 설립 인가된 텔레비전방송사업사,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공급사업사의 종사자가 대륙지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본 요강에 따라 구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업, 텔레비전 방송광고업 및 비디오프로그램 테이프제작업에만 적용한다. 그 종사자가 만약 공무원이나 군인의 신분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비보고를 신

청할 수 없다.

3. 텔레비전방송사업사, 텔레비전프로그램 공급사업사가 구비보고업무규정 제 2 조제 2 항에 따라 행정원 신문국에 구비보고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업 주체가 구비하여 기재한 계획서 3장과 구비보고인원의 최근 반명합판 사진 3장, 신분증 사본, 제작계획 및 일정표 서식 3장을 첨부 한다.
4. 동일사업체에서 2인 이상이 구비보고하는 경우에는 구비보고하는 인원명단 1매를 더 첨부해야 한다. 구비보고인원이 대륙지구에 가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각각의 사람이 매번 갈 때마다 체류하는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5. 대륙지구에 가서 제작한 프로그램, 광고가 대만지구에 들어올 경우, 뉴스를 제외하고는 우선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송국에 공급하여 사용하거나 발행할 경우에는 뉴스 이외에는 심의증명을 첨부하여 행정원 신문국으로 보내 심사를 요청해 비준을 얻거나 증명을 발행한 뒤, 방송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의 발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6. ①구비보고업무 규정 제 3 조의 이른바 「현지의 임시고용인」은 대륙지구의 공연예술사업종사자나 중공 당, 정, 군 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②임시고용인이 우리측 영화나 광고에 출연할 경우 주·

조연을 맡을 수 없고, 프로그램·광고나 그 선전물에 이름을 넣을 수 없다. 이로써 대만지구 영화예술사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7. 구비보고업무를 거쳐 대륙지구에 가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심사할 때, 제작에 관한 자료를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만약 구비보고업무규정 제3조의 전단(前段)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용·표절·복사하거나 비디오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대만지구에 돌아와서 다시 편집하는 경우에는 방송이나 발행을 하지 못한다. 이미 비준을 얻은 경우라도 판매를 취소해야 한다.
8. 대륙지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횟수는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은 한 방송국마다 매주 3시간을 넘을 수 없고, 매일 최장 1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단, 대륙의 실제 배경만을 촬영하여 제작한 드라마 프로그램은 이 제한에 들지 아니한다. 만약 프로그램 내용이 대륙의 정보자료에 관한 것을 소개할 때, 그 시간은 1회방송분량으로 그것을 계산한다.
9. 홍콩지구 텔레비전방송사나 프로그램공급사가 대륙에 가서 제작한 텔레비전극이나 비디오 프로그램을 구매할 경우, 행정원 신문국 駐홍콩사무처에서 증명을 얻고, 아울러 구비보고업무 제3,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0. 대륙지구에 가서 제작한 프로그램, 광고가 우편을 통해

대만지구로 부쳐질 경우, 행정원 신문국은 공항, 항구 또는 우체국 주재 심의센터에서 구비보고통지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의하여 반입을 허가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휴대해 돌아올 경우에는, 세관통과시에 확실히 신고하여 심의하고, 아울러 세관통과 증명을 받는다.

11. 텔레비전방송사업사 및 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사는 대륙지구에 분·지국 및 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주재원을 파견할 수 없다.
12. 대륙지구에 탐방하여 얻은 뉴스성 보도와 제작된 프로그램이 대만지구로 전달될 경우에는 국제전신설비나 제 3국(지역)의 설비를 거쳐 전송되어야 한다.
13. 대륙지구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중공 당·정(中共黨·政) 각급 기구 간부와의 인터뷰를 내용으로해서는 아니된다. 문화, 예술, 체육, 직업적인 공연단체를 인터뷰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표현은 그 일부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다.
14. 공익성 프로그램은 대륙의 동포가 대만에 있는 친지를 찾거나 대만에 있는 동포가 대륙의 친지를 찾는 내용을 제작해서는 아니된다.
15. 구비보고인원이 구비보고업무 규정 제 5 조나 본 요항의 제 2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텔레비전방송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6. 구비보고된 인원이 본 요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원 신문국에서는 1년 이내에 그 구비보고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구비보고한 기구가 1년 이내에 본 요항의 규정을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7. 구비보고업무 규정이 공포 시행되기전 2년 이내에 대륙지구 에 가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특별안건으로 처리한다. 단, 법에 따라 설립된 텔레비전방송사업사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공급사는 구비보고업무를 보충 실행한 뒤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수입증명자료를 검토 첨부한다.

陷落地區歸還學生의學力審議및就學指導處理法

- 民國 77年(1988) 教育部 臺(77)參字
第18943號令 修正
- 全文 11條 條文

제 1 조 : 교육부(이하 본부로 약칭한다)는 함락지구 歸還학생의 학력심의 및 취학지도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처리법을 정한다.

제 2 조 : 본 처리법의 이른바 함락지구 귀환학생은 대륙이 함락된 뒤 각급 각류의 학교를 졸업 및 수료하고 義據歸還한 학생을 말한다.

제 3 조 : 함락지구 귀환학생이 학력검정이나 취학지도를 신청할 경우, 일률적으로 입학전의 보도(輔導)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학전 보도교육은 관련기관이 처리를 책임진다.

제 4 조 : 함락지구 귀환학생이 취학에 뜻이 있는 경우, 소학교 학생이 다음의 제 1 호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학생은 중국대륙재포구제총회(中國大陸災胞救濟總會) 등의 관련기관에 본부로 심의 이전해줄 것을 신청하여 심사에 합격한 뒤에는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라 구별하여 처리한다.

1. 국민학교 학생

가. 국민학교 학생은 그가 함락지구로부터 귀환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서류에 의거하여 거주지의 구, 읍, 면, 동사무소(鄉·鎭·市·區·公所)에 심사 소개된 학구의 국민학교나 기타 다른 국민학교에서 선별시험을 거친 뒤 편입학한다.

나. 국민학교 정도에 상당하는 기타 함락지구 학교의 학생은 그 연령이 국민학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령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 전목의 규정대로 국민소학(國民小學)이나 기타 소학(小學)에 입학하여 이수케 하고 규정연령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학교보충학습학교(國民小學輔習學校)에 선별시험입학을 신청한다.

2. 중등학교 학생

가. 중등학교학생은 심사소개된 국민중학이나 고등중학의 선별시험을 거쳐 편입학한다.

나. 중등전문학교 학생은 그 原履修學校의 성질에 따라 심사소개된 그에 상당하는 직업학교에 선별시험을 거쳐 편입학한다. 각 전문학교 부설의 단기기술훈련반이나 기술보충학습반의 학생은 심사 소개된 공·사립 보충학습반이나 기예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중등학교 정도에 상당하는 기타 학교 학생은 그 原履修學校의 성질, 종류에 따라 심사소개된 국민중학,

고급중학 및 직업학교나 기타 상당하는 학교를 구별하여 선별시험을 거쳐 편입학한다.

라. 중등학교 학생의 입학연령은 현행 학령에 따라 2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계산하되 그 초과자는 심사 소개된 국민중학보충학습학교 및 각급 연수보충학습학교를 구별하여 선별시험을 거쳐 편입학하거나 심사 소개된 직업보충학습반 및 기예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는다.

3. 고등학교 학생

가. 전문학교이상 학교의 이수학생은 그 原履修學校의 학과(전공)의 성질에 따라 심사 소개된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의 편입학시험을 거친 뒤, 그 학력에 따라 성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의 상당한 학년을 이수케 하고, 그가 원이수학교에서 닦은 과정과 부과된 전공과정이 서로 부합하는 경우 학교 선별시험을 거쳐 합격한 뒤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필수임에도 이수하지 않은 과정은 입학후 모두 보충이수해야 한다.

나. 대학 및 전문단과대학 졸업생은 본부의 검정을 거쳐 그 대학졸업자격을 인가한 뒤, 각 연구소의 신입생입학시험에 참가하여야 한다.

4. 함락지구의 각급 정치학교 및 훈련반 학생은 그 정도, 연령, 체격, 지원 등의 조건을 보아 심사 소개된 관련

훈련기구에서 훈련받는다.

제 5 조 : 함락지구의 각급 각류의 학교 학생이 심사 소개된 선별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경우(연구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재량껏 관대하게 입학시켜야 한다. 졸업후의 진학지도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귀환할 때 심사 소개된 국민중학 졸업후 고급중학이나 5년제 전과학교(轉科學校)에 응시하되, 귀환한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자는 본부에 증명문건의 심의 발행을 신청하여 고급중등학교나 5년제 전과학교의 입학생모집시험에 참가하되 총성적의 20퍼센트를 가산하는 우대를 누린다.
2. 귀환할 때 심사 소개된 고급중학 졸업후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응시하되 귀환한 기간이 아직 3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함락지구의 고급중등학교에서 졸업하되 유관기관을 거쳐 증명을 갖추어 내고 본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하여 그 귀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자는 본부에 증명문건의 심의 발행을 신청하여 대학, 전문학교 입학생 모집 시험에 참가하며 그 추가점수 우대기준은 본부가 상황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 6 조 : 함락지구 귀환학생이 본부에서 심사 소개한 선별시험을 거쳐 입학한 뒤, 각 학교는 필요에 따라 그 학업, 품덕, 생활 등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 각급 각류학교의 졸업생은 심사나 검정고사를 거친 뒤, 이에 상당하는 학력(學歷, 學力)증명을 부여 받을 수 있다.

1.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 졸업생은 본부의 심사 인가를 거친 경우, 본부를 통해 졸업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전문학교 이상 학교의 졸업생은 본부의 검정고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 본부를 통해 이에 상당하는 학교의 졸업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검정고사에 불합격한 경우 2차에 걸쳐 재신청을 하거나 그 정도에 따라 적당한 학교의 상당하는 학년에 편입해 이수할 수 있다.

제 8 조 :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졸업생의 검정고사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검정고사위원회가 위원을 초청하거나 관계위원을 파견하여 관련있는 검정사항을 처리한다.
2. 수검자는 본 처리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정고사의 참가를 통지하며, 해당 항목의 검정은 안건을 모았다가 매년 1차에 걸쳐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인이 대학전문학교나 학술연구기관에서 강의나 연구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검정은 면접으로 행한다. 면접위원의 인선은 본부가 관련학과의 교수 2내지 3인을 초빙하여 맡게 한다.

4. 신청인이 아직 동조의 3호에 규정된 강의나 연구작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그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검정과목은 공통과목 1과목(國父思想), 전공과목 2과목 및 일반상식, 구두시험으로 나누어 행한다. 그 출제, 채점 및 구두시험 위원은 본부가 초빙하거나 관련 학과의 교수 및 본부의 관계인원을 지정 파견하여 맡긴다.

제 9 조 : 각급 각류의 학교 학생이 본부의 심사소개나 선발시험을 통해 중등이상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만약 직계존속의 친지가 대만(기타 자유지구)에 없거나 그 직계존속이 동시에 귀환하여 생활력이 없을 때에는 정부의 국비지급규정에 따라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0 조 : 함락지구에서 귀환한 중등이상 학교의 이수 또는 졸업학생의 취학지도나 심사, 졸업자격검정의 등록신청에는 다음의 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매
2. 자술서 1매
3. 최근 반명함판 사진 2장
4. 함락지구 학교의 이수 또는 졸업증명문건이나 관련기관이 내준 증명
5. 신분증명 사본 1매
6. 관련기관이 발급한 함락지구 귀환학생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11조 : 본 처리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陷落地區出版物・映畫필름・텔레비전放送 프로그램의本國自由地區搬入管理要點

- 民國 77年(1988) 7月 27日政府臺(77)
文字 第213112號 書翰 審查 決定
- 民國77年 8月 8日 行政院新聞局(77)
銘綜一字 第10969號 書翰 公布

1. 함락지구의 출판물, 영화필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본국 자유지구로의 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요점을 정한다.
2. ①본 요점에서 칭하는 함락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은 함락지구에서 출판, 발행되거나 제작한 것을 가리킨다. 중공의 기관 또는 인원이 자유국가나 지구에서 출판,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물·영화필름이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은 함락지구에서 출판, 발행되거나 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 요점에서 칭하는 출판물은 출판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 요점에서 칭하는 영화필름은 영화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본 요점에서 칭하는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은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광고 및 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를 포함하며, 그 정의는 텔레비전방송법 제2

조 제 8 호에서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3. 본 요점에서 칭하는 본국 자유지구로의 반입은 함락지구 출판물, 영화필름이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 휴대, 우편이나 기타 방식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것을 가리킨다.

4. ① 함락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본국 자유지구로 반입될 수 없다.
단, 정부기관, 학술연구단체나 대중전파매체가 업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특별안건으로 행정원 신문국에 신청하여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이런 제한에 들지 아니한다.

가. 중공 기관이나 인원이 출자, 출판, 발행하거나 제작한 것

나.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것

다. 중공을 상징하는 도안이나 표지가 들어간 것

라. 반란평정조례(懲治叛亂條例) 제 6 조 및 제 7 조 규정의 상황에 드는 것

마. 출판법, 영화법, 텔레비전방송법이나 기타 관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

② 출판물 가운데 전항의 제 1 호, 제 3 호의 상황에 드는 경우, 행정원 신문국은 그 문자, 도안, 표지 또는 기타 부당한 부분을 처리한 뒤, 그것의 본국 자유지구로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5. ① 함락지구의 출판물, 영화필름이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램의 본국 자유지구로의 반입은 심의결과를 거쳐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과 相違없는 것으로 간주되면 통과시킨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하여 심사한다.

② 전항의 유치 심사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6. 함락지구 출판물, 영화필름이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 본국 자유지구로 반입된 뒤에 출판, 발행, 제작, 상영 또는 방송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원 신문국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7. 행정원 신문국은 제 6 조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드는 경우 비준을 내리지 않는다. 단, 드라마 내용전개의 필요에 따라 중공의 도안, 표지가 드러나는 경우는 이러한 제한에 들지 아니한다.

나. 간체문자(簡體文字)를 쓰는 경우, 그 정정이나 수정을 통지한뒤 다시 심사에 부친다.

8. 동일한 함락지구의 출판물, 영화필름이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을 2이상의 업자가 본국 자유지구에서 출판, 발행, 제작, 상연이나 방송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원 신문국은 신청안 접수 순서에 따라 그것을 결정한다. 만약 소유권의 분쟁이 있게 될 경우 업자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해결

을 모색한다.

9. 함락지구의 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이 허가된 출판업자에 한한다.
10. ① 함락지구 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갖추고 아울러 수권계약서(授權契約書)를 제출하여 심사한다. 단,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 제판권(製版權)의 기간이 만료된 함락지구 출판물은 증명이 될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수권계약의 제출·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전항의 수권계약은 출판업자나 그 수권인이 저작권자, 제판권자나 그 수권인과 자유국가나 지구(본국 자유지구를 포함하여)에서 서명 결정한다. 단, 그가 저작권자나 제판권자 및 그 수권자와 자유국가나 지구(본국의 자유지구를 포함하여)에서 서명 결정하는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거친다. 그가 우리나라측의 駐外國公館이나 대표지구에 있다면 반드시 해당기관이나 대표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11. 함락지구의 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하는 것은 매회 10종에 한하고, 인쇄 제본이 완성된 뒤에야 계속 신청할 수 있다.
12. 함락지구 출판물이 비준을 거쳐 본국의 자유지구에서 출판되는 경우에는 출판법의 규정상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백히 기재해야 하고, 아울러 발행할 때 관계기관에 모두 발송한다.
13. 함락지구의 영화필름의 검사 신청은 영화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며, 행정원 신문국의 검사 기준을 거치지 않은 함락지구의 영화필름은 공개적으로 상연하거나 발행할 수 없다.

14. 함락지구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의 발행·제작이나 공개방송 신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 텔레비전사업사와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공급사업사에 한한다.

15. 함락지구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의 발행·제작이나 공개방송(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근원, 명칭, 내용, 규격 및 수량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6. ① 제 4 조 제 1 항에서 정한 본국 자유지구에 반입할 수 없는 함락지구의 출판물, 영화필름이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은 그 소유인이나 소지인이 되돌려 보내거나 삭제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출판물, 영화필름이나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은 행정원 신문국에 30일 동안 유치하였다가 소유인이나 소지인이 기간을 넘겨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 신문국에서 그것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17. 근원이 명확치 않거나 본 요점에 의하지 않고 출판·발행·제작·상연하거나 방송을 신청한 함락지구의 출판물,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陷落地區出版物審查業務熟知事項

- 民國 76年(1987) 11月 7日 行政院 新聞局(76)
銘版四字 第14190號 書翰 公布
- 民國77年(1988) 8月 8日 行政院 新聞局(77)
銘綜一字 第10969號 書翰 修正 公布

1. 본 속지사항은 「함락지구출판물,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본국자유지구반입관리요점」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2. 행정원 신문국은 출판사업사가 함락지구의 출판물을 출판함에 대비하여 특별히 자문위원회를 설치, 출판물을 심사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아울러 관련된 문제에 회답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문국이 초빙한 학자, 전문가가 맡는데, 초빙기간은 1년이고,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교통비, 자문비나 심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소조를 둔다.
 - ① 문학, 역사, 철학
 - ② 정치, 경제, 법률
 - ③ 과학기술, 의학, 체육
 - ④ 사회, 심리, 교육

⑤ 희극, 음악, 미술

5. 함락지구의 출판물이 「함락지구출판물, 영화필름,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본국자유지구반입관리요점」의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제 4 호나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6. 함락지구 출판물이 수리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심사방식으로 처리한다.
 - ① 행정원 신문국에서 초심(初審)하여 내용가운데 타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서명하여 결재를 올려 심사결정을 거친 뒤, 즉시 원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② 초심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면 관계 자문위원에게 보내 심사를 요청하여 의견을 내게 하고, 아울러 서명 결재를 올려 심사 결정한 뒤에 원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심사의견에 의거하여 확실하게 처리한다.
 - ③ 원신청인이 만약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자문위원이 따로 재심을 청하되 단 1차에 한한다.
7. 본 숙지사항의 이른바 함락지구의 출판물의 정의는 「함락지구출판물,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본국자유지구 반입관리요점」 제 2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다.
8. 본 숙지사항은 심의 결정일로부터 실시한다.

大陸主要大衆言論放送社所屬의關係專門 人士의臺灣參觀訪問申請熟知事項

○ 民國 79年(1990) 7月 27日 行政院 新聞局(79)
銘秘字第09756號 書翰

1. 申請資格

- ① 대륙의 인사로 다음의 사항 가운데 하나를 갖춘 경우, 다만 참관 및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각 주요신문사업사 소속의 편집, 취재기자 및 중요 행정인원과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 방송국, 텔레비전방송의 취재·촬영기자, 편집, 수필 및 취재에 참여하는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중요 행정인원
 - 나. 출판, 영화, 텔레비전방송,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공급 등의 사업사 주관인원
 - 다. 전문적인 조예나 업적이 있는 출판, 영화, 텔레비전 방송사업,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공급 등의 사업 인사
 - 라. 중국의 대중언론방송사업사의 자유국가나 지역의 전문작업인원
- ② 신청인이 전항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는 행정원 신문국에서 심사조직은 만들거나 관계기관을 초빙하여

심사한다.

2. 申請方式

① 취재안건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신청한다.

가. 신청인이 자유국가나 지구에 있는 경우 우리측 주재대사, 영사관(기구)에 신청한다.

나.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 대만에 있는 대중언론 방송사업사가 대리로 행정원 신문국에 신청한다.

다. 신청인은 소속신문기구의 파견 명령 및 그 신분을 증명할 만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이 대만에 온 뒤에는 입국허가를 가지고 행정원 신문국에 등록하고 취재증을 신청한다.

마. 취재증은 본인의 성명, 소속기관, 취재사유, 취재지(地點), 대만의 접대기관 및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휴대하였다가 제시한다. 취재증은 해당 기한동안만 유효하고, 기한을 넘기면 폐기한다.

② 취재의 성격이 아닌 안건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신청한다.

가. 신청인이 자유국가나 지역에 있는 경우 우리측 주재대사, 영사관(기구)에 신청한다.

나.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 대만에 있는 대중언론 방송사업사가 대리로 행정원 신문국에 신청한다.

③ 주의사항

- 가.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그가 대만에 오는 예정일자 2개월전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신청인이 대만에 있는 대중언론방송사업사에 대리신청을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친필서명한 위탁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위탁서가 없는 경우 대리제출한 신청은 모두 되돌려 보내며 수리하지 않는다.

3. 人員數 制限

- ① 취재를 신청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인원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가. 일반적인 취재활동은 행정원 신문국에서 필요에 따라 그 총인원수를 제한한다.
 - 나. 특정의 의제로 인한 취재활동, 이를테면 중요한 정치, 학술·문화·체육·과학기술 등의 활동같은 경우에는 특별안건으로 처리하고, 행정원 신문국이 주관기구와 협의, 장소의 수용량을 참작하여 취재인원수를 결정하고, 아울러 신청시기의 선후를 참고하여 비준한다.
- ② 취재의 성격이 아닌 신청안건은 행정원 신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출판, 영화, 텔레비전방송사,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공급사업사의 4종류의 대만입국 참관

방문 총인원수를 제한한다.

4. 接待機關(台灣側)

① 취재안건

가. 일반적인 취재활동은 각 관련신문이나 공공관계기관에서 접대를 책임진다.

나. 특정의 의제로 인한 취재활동은 주관기관에서 접대를 책임진다. 행정원 신문국에서 심의 발급한 취재증 외에 반드시 주관기관에서 해당활동의 취재증명을 더 발급해야 하고, 취재를 조정하여 그 취재활동이 원래 신청의 범위를 넘지 않게 한다.

② 취재의 성격이 아닌 방문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대만에 있는 접대기관과 접대사안의 수리여부를 의논하거나 원래 그 신청을 접수한 해외기관(駐外單位)을 통해 국내기관과 연계하여 국내기관이 직접 나서서 접대할 것을 협조하되, 상술한 사전안배가 없는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5. 商業行爲의 制限

①「현단계대륙의저명인사의대만참관방문신청업무요점」 제 4 조제 8 호의 「그가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면허증이 필요한 전문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신청인이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 보수를 받는 것

나. 순수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

다. 계약을 맺고 영업면허증이 필요한 직업적인 공연에 종사하는 것

라. 문서·도화(文書圖畫)를 완성하고, 레코드를 취입하고, 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광고·영화필름을 촬영하여 대만에서 판매하거나 방송(영)하는 것

②신청인이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에는 시범, 참관이나 공익적인 활동의 공연에 종사할 수 있다.

6. 신청인이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에는 방송, 텔레비전방송국과 인터뷰할 수 있다. 그가 방송에 나가는 시간과 횟수는 행정원 신문국이 공포시행한 「현단계텔레비전방송사업사,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사의대륙지구에서의프로그램제작구비보고업무실시요항」 제 8조 규정의 시한에 따라 계산한다.

7. 신청인이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중에는 중화민국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아울러 신청할 때 기재했던 참관방문계획서 및 예정일정표에서 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위반한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의법처리하고 필요한 때에는 송환한다. 국내의 신청기

관이나 접대기관의 기타 대만참관방문 신청 안건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8. 신청인이 대만을 취재하고 발표한 소식이 실제 상황을 왜곡한 경우, 행정원 신문국은 해당 신청인 및 그 소속사업사의 후속신청안건에 대해 엄중한 심사를 해야 한다.
9. 대륙의 신문기구는 대만에 분·지국을 설립할 수 없고 대만지구의 거주민을 특약기자나 통신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0. ①신청인이 입국할 때 휴대한 대륙지구의 출판물, 광고, 영화필름, 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는 행정원 신문국이 공포 시행한 「함락지구출판물·영화필름·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본국자유지구로의반입관리요점」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신청인이 취재목적으로 휴대한 방송, 텔레비전, 촬영 등의 설비기재는 입국할 때 행정원 신문국의 심의 비준공문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온다. 출국할 때에는 그 숫자대로 휴대하여 돌아가야 하고, 판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②신청인이 입국할 때 휴대하는 대륙물품은 재무부(財政部)의 심사 결정을 거쳐 세관이 공고 허가한 입국여객 휴대 반입 물품에 한한다.

11. 具備書類의 記載

①참관방문계획서

본 계획서는 신청인이 예정하고 있는 대만참관방문의 구

상, 개인의 흥미 및 희망(참가하는 기구, 참가하고자 하는 모임 및 대담하고자 하는 인물 등)을 서술하여 접대 기관의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여행증신청서

신청인은 모두 신청서 1통씩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산기 업무에 알맞게 하기 위해 검은색 펜이나 파란색 펜을 사용 한문 정자로 표기하되, 가능한한 간체자(簡體字)의 사용을 피하며,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해 증명서 발급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며, 작성방식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한다.

가. 성명 : 한문성명을 쓰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나 통행증에 기재된 대로 쓴다.

나. 영문성명 :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나 비자상의 영문성명을 타자나 대문자로 표기한다.

다. 원명 : 바뀌기 이전의 성이나 이름, 별명, 별호 등 이전에 사용했던 성명을 모두 기입한다.

라. 교포거주지역 신분증명번호 : 사실대로 기입하되 없는 사람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마. 생년월일 : 중화민국 기원으로 환산하여, 곧 서기에서 1911년을 뺀다. 이를테면, 서기 1945년은 민국34년이다.

바. 학력 : 대륙, 해외를 나누어 최고학력을 기입한다.

- 사. 경력 : 대륙, 해외를 나누어 가장 최근에 종사했던 일을 기입한다.
- 아. 참가학술단체명칭 : 대륙과 해외를 나누어 사실대로 기입한다.
- 자. 참가정당명칭 : 사실대로 기입하되, 이미 탈퇴했거나 포기상태라도 상세한 설명을 붙인다. 어떠한 정당에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無」라고 쓴다.
- 차. 여권자료 : 현재 갖고 있는 여권상의 기재사항을 기입한다.
- 카. 외국비자자료 : 소지하고 있는 제 3 지역의 유효한 입국비자의 자료에 따라 기입하되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 타. 대만내 주소 : 고정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된 처소나 호텔 또는 접대기관의 주소나 명칭을 기입하여도 된다.
- 파. 자술자료 : 개인의 경력을 요점을 추려 기재하되, 전문적인 조예나 업적이 있는 인사는 관련업적을 서술할 것.
- 하. 친척상황 : 사실대로 기입하되 이미 결혼한 여성이라도 결혼전의 부모성명을 기입할 것.

③ 보증서

- 가. 보증서는 신청인이 부쳐와서 현재 대만지구에 적어

있는 보증인이 기재하고 친필서명한다. 외국인이나 국외에 교포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 또는 교민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나. 만약 피보증인이 대만에 오기 전에, 아직 제 3 지역으로 가는 유효기간 6개월의 비자를 얻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보증서를 제출할 때, 잠시 기재를 보류하여도 좋다. 다만, 피보증인이 소지한 제 3 지역에서 유효한 6개월의 비자는 반드시 도착 전에 취득하여야 하고, 아울러 입국시 검사에 하자가 없어야 입국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은 반드시 각각의 서식과 제출하는 관련서류들을 상세하게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한다. 만약 본 숙지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 그 책임은 신청인 스스로가 지고 대리신청인은 아울러 연대책임을 진다.

12. 其他規定

- ① 신청인이 제기한 신청은 참관 방문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 ② 신청인이 방문을 시작하고 마치는 일자 및 그 참관방문일정은 모두 접대기관이 일정을 총괄하고 적시에 신청인에게 필요한 여행준비를 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3. 본 숙지사항은 중화민국 79년(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VI. 交通規定

大陸地區로의郵便物郵送節次改善措置

○ 民國 78年(1989) 6月 15日 行政院 大陸工作會報台 78
陸行字 第270號函

1. 現在狀況

대만지역의 민중들이 대륙의 친지들에게 부치는 우편물은 현재 중화민국 적십자회 총회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다. 보내는 이는 반드시 두개의 편지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깥 봉투에는 NT 3원짜리 우표를 붙이고, 수신인(受信人)은 적십자회 전용 台北우체국 사서함 50,000호로 쓴다.

안에 넣은 봉투에는 대륙쪽 수신인의 성명·주소를 쓰고 그 안에 편지를 넣어 봉하여 NT 10元 상당의 우표를 첨부한다. 적십자회에서 그 우편물을 받으면 바깥 봉투를 뜯어내고 다시 항공편으로 홍콩에 보낸 뒤 홍콩우표로 바꿔 붙여 대륙으로 부치게 되어있는데 그 수속이 번거로워서 국민들은 절차의 간소화를 여러차례 희망했던 바이다.

2. 改善措置

정부의 「3不」정책에 의거 중공 우정(郵政) 기구와 직접

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현재 대륙으로 부치는 우편물 처리방식의 개선책을 아래와 내놓는다.

- (1) 대륙으로 부치는 보통 항공우편은 직접 우체통에 넣는다.
- (2) 보통 항공우편의 요금은 기본 중량 20g에 9元짜리 우표를 붙이고, 20g이 가중될 때마다 6元짜리 우표를 한 장씩 더 붙인다.
- (3) 봉투에는 반드시 수신인의 성명 및 대륙의 省(市) · 縣 등 상세한 주소를 기입해야 하고, 부치는 이 역시 대만의 주소를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大陸地區로보내는郵便物の處理要點

○ 民國 79年 (1990年) 3月 27日 交通部
交參字 第008598號函

1. 通 則

- (1) 대륙지구로 보내는 우편물은 각 지방우체국으로 부터 받아서 부치고 처리한다.
- (2) 처리범위 : 항공보통우편, 봉함엽서, 우편엽서, 인쇄물, 신문지류와 맹인문건(점자책류).
단, 우편물 한건당 무게는 2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 우편요금 : 국제우편물 요금표에 의해 정해진 홍콩과 마카오 항공우편요금에 따라서 우편요금을 받는다. 편지의 무게가 20g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우편요금은 대만돈 9원이고, 20g을 초과할 때마다 6원을 가산한다.
- (4) 대륙지구로 보내는 우편물은 각 우체국에서 지정한 전용자루에 넣고 봉하여 「타이베이항공우편센터」에 보내 처리한다. 반드시 「대륙우편물」이라고 쓴 꼬리표를 매 단다. 그러나 대륙우편물이 많지 않은 1等乙級이하의 우체국은 우편물을 한다발로 묶어 「대륙우편」이라고

날인하여 봉한 후 우편물집중처리센터에 보내 전용자루에 넣고 봉하여 「타이베이항공우편센터」로 보낸다.

2. 郵便物 處理

- (1) 우편봉투에 직접 대륙지구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대만쪽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쓴다. 그러나 겹봉투에 수취인의 주소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쓰여진 경우에는 발신인에게 되돌려 보내 다른 봉투로 바꾸어 보내도록 한다.
- (2) 우편물을 보낼 때는 그 중량에 따라 우편요금을 계산하고, 우리나라 우표를 우편물에 붙이며 국내소인을 깨끗하게 찍어서 이미 우편요금이 계산되었음을 표시한다.
- (3) 항공우편은 직접 항공우편함에 넣는다.

3. 處 理

- (1) 각 우체국은 대륙우편물을 받아서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국내소인을 찍고 전용자루나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항공우편물센터」로 보내며 「항공우편물센터」는 동일 대륙의 동일 우체국으로 보내는 자루를 취합, 항공회사를 통해 홍콩으로 운반하고, 홍콩에서 대륙행 비행기에 옮겨 싣는다. 그리고 국제관례에 따라 꼬리표에는 타이베이에서 운반하는 항공기의 번호와 홍콩에서

- 바꾸어 운반하는 항공기의 번호를 분명히 써야 한다.
- (2) 우편낭은 따로 구입하여 표면에 「타이베이항공우편물센터」(TALPEI IAMF)를 인쇄하여 항공우편낭으로 사용하게 한다.
 - (3) 운송하는 우편물의 목록, 이정표, 꼬리표 등은 세계우편행정공약에서 정한 격식에 따르되 중국어로 인쇄하여 만들고, 왼쪽 상단에 있는 원래의 발신지 소인란은 「타이베이항공우편물처리센터」로 고쳐 찍은 후에 사용한다.
 - (4) 항공회사가 대륙으로 부치는 소포를 운반할 때 필요한 비용은 해당 항공회사가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을 운반할 때의 국제항공우편물의 경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단독으로 결산하고 일반 국제우편물과 함께 계산하지 않는다.

4. 調査와 補償

- (1) 보통우편은 일체 조사를 받지 않는다.
- (2) 대륙으로 부치는 우편물이 대륙의 우체국에 운반된 후에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체국은 일체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臺灣·大陸住民間電報(間接通話)開放措置

○ 民國 78年(1989) 6月 7日 行政院大陸工作會報
臺78陸行字第270號函

1. 現 況

정부가 대만주민의 대륙친지방문을 개방하고 대륙의 농업, 공업원료를 간접수입하는 것을 허락한 뒤로부터 대륙에서 제 3 국을 통해 대만으로 전송되어 오는 전보, 텔렉스(TLX), 전화량이 매우 많은 실정임.

2. 改善措置

(1) 기본원칙

「3不政策」(답판하지않고 협상하지 않고 통신하지 않는다)을 채택하고 중공의 전신, 전화기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2) 제 3 국을 통한 수신방법

① 제 3 국의 전신, 전화기구를 통하여 수신하는 방법

가. 전화 : 대만지구에서 대륙지구에 전화를 걸 때 국제선 자동전화방식으로 제 3 국의 전신, 전화기구에 설치된 전용전화번호를 돌리면 제 3 국의 담당자가 기록한 후에 대륙의 상대방에게 연결

시켜 준다.

나. 전보와 텔렉스(TLX) : 앞에서의 전화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대륙에 직접 국제전화를 걸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통신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스스로 다이얼을 돌려 제 3 국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

가. 전화 : 대만지구 사용자가 대륙지구 사용자를 전화로 부를 때, 우선 국제번호 002를 돌리고 나서 다시 86을 돌리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돌리면 제 3 국을 통해 자동으로 연결된다.

나. 전보와 텔렉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臺灣·大陸住民間電報(間接通話)實施方法

○ 民國 78年(1989)行政院大陸工作會報臺78
陸行字第712號函

1. 基本處理原則

정부의 「3不政策」을 존중하여 중공의 전신, 전화기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간의 주민간접통화(전보)를 시행한다.

2. 電氣回路 連結方式

제 3 국의 전신, 전화기구를 통해서 연결한다.

3. 改善된 業務의 種類와 相對方을 電話로 부르는 方式

(1) 전화

- ① 직접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 : 대만지구의 사용자가 대륙지구의 상대방을 전화로 부를 때 먼저 국제번호 002를 돌리고 다시 86을 돌린 뒤 계속해서 상대방의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돌린다.
- ② 수동으로 연결시키는 전화 : 대만지구의 사용자가 국제자동전화방식으로 제 3 국의 전신, 전화기구에 설치된 전용전화번호를 돌리면 해당기구의 담당자가 기록한 후에 대륙의 상대방에게 연결시켜준다.

- ③ 상대방이 전화요금을 지불하는 전화 : 대륙지구 사용자가 대만지구 사용자의 요금 지불 방식으로 전화를 걸고 싶을 때, 대륙쪽의 전신, 전화기구 담당자를 통하여 제 3 국의 전화, 전신기구를 불러 내어 상대방(수화자)이 요금을 지불한다는 동의를 대신 얻은 후에 전화로 통화할 수 있다. 제 3 국과 교섭하여 업무대행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는 임시로 대륙지구 전신, 전화기구 담당자로 하여금 전신, 전화기구가 업무대행을 위탁한 민간회사의 담당자를 전화로 불러 상대방의 요금지불 동의를 얻은 후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 (2) 텔렉스(TLX) : 대만지구 사용자가 대륙지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 우선 085를 돌리고 다시 상대방의 텔렉스번호를 돌리면 제 3 국의 전신, 전화기구를 통해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 (3) 팩시밀리(FAX) : 대만지구 사용자가 팩시밀리를 보낼 때에는 직접 돌리는 전화와 같은 방법으로 대륙의 사용자에게 팩시밀리를 보낸다.
- (4) 전보 : 대만지구 사용자가 대륙으로 전보를 치고 싶으면 각 지방 전신국 영업소에 접수하여 처리한다. 전신국에서는 제 3 국의 전신, 전화기구를 통해 자동적으로 접수된 전보를 대륙에 발송한다.

4. 통화료 계산처리

대만과 대륙은 상호간에 제 3국의 전신, 전화기구를 통해 전화, 전보, 텔렉스 등을 전송해서 주고 받고 있으므로 그 통신비용은 상호 분담하는 국제관례에 따라서 제 3국의 전신, 전화기구를 통해 처리된다.

外國商船·民間航空機의 中華民國 國際港口·空港出入管制法

- 民國 78年(1989) 5月 17日 交通部
交航癸字第7820號令修正公布
- 全文 12條 條文

第 1 章 通 則

- 제 1 조 : 외국상선과 민간항공기의 중화민국 국제항구및 국제공항 출입은 본 관제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관제한다. 긴급대피(비상착륙)나 위험한 경우에 그 선원이나 여객을 검사하고 보호하는 것은 별도의 해당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 2 조 : 외국상선에 대한 관제는 중화민국 국제항구의 항만사무국(港務局)에서 집행한다. 외국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는 교통부 민간항공국(民航局)에서 집행한다.

第 2 章 商 船

- 제 3 조 : 외국상선은 중공이 점거한 지역이나 정부가 직접항해를 금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중화민국 국제항구

에 직접 항해할 수 없다. 또한 중화민국 국제항구로부터 중공이 점거한 지역이나 정부가 직접항해를 금지시킨 국가나 지역으로 직접 항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선박은 다음부터 중화민국 국제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제 4 조 : ① 중화민국 국제항구에 입항한 외국상선은 반드시 관계당국으로부터 항해일지와 관계서류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만일 해당 선박이 앞에 제시한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 항만사무국(항만청)에 알린다.

② 항만청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되면 그 상선이 물건을 싣는 것에 대해 교통부를 통해 심사비준하도록 알리는 한편 그 배의 하역을 금하고 즉시 출항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화민국국제항구에 재입항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선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서 검열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항목의 규칙에 의해서 처리된다.

제 5 조 : 중화민국 공·민영 무역생산기구가 외국상선을 임대하여 수출입상품을 운반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 관제법 제 3 조의 금지사항을 임대차계약 안에 명기시켜야 한다.

제 6 조 : 선박대리점이 외국상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때도 반드시 서면(電文포함)으로 본 관제법 제 3 조의 규정을 선박소유민이나 그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선박대리점은 업무대행을 받은 외국상선이 중화민국의 국제항구를 떠나기 전에 본 관제법 제 3 조

의 규정을 선박출항보고서안에 첨부하여 선장이 서명하도록 하여 확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第 3 章 民間航空機

제 7 조 : 중화민국 국제공항에 출입하는 외국인간항공기가 비정기적인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사용자나 대리인이 「외국민간항공기 국경비행신청서」를 써서 비행하기 5일전까지 민간항공국(民航局)에 신청하여 심사비준을 거쳐 비행장의 관계검사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 외국인간항공기의 출·입국비행에 대한 허가는 예정된 비행기 이·착륙시간을 전후해서 24시간내에 유효하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먼저 민항국에 신청해서 고치도록 한다.

제 9 조 : 중화민국 국제비행장을 출입하는 외국인간항공기는 반드시 비준된 항공노선을 지켜서 비행하고 중화민국의 민항법규와 관계법령의 규칙을 준수한다.

제 10 조 : 중화민국 국제공항을 출입하는 외국인간항공기가 본 관제법의 규칙을 위반하면 상황의 경중(輕重)을 보아 법에 의해 처분하거나 허가를 취소한다.

第 4 章 附 則

제11조 : 본 관제법의 실시는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대륙지구
의 영해, 항구, 공항 등의 개폐(開閉)등에 관련하여 이미
선포한 각종 관제법의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2조 : 본 관제법은 공포당일로부터 시행한다.

VII. 其 他 規 定

大陸民主化運動支援對策

○ 民國 78年(1989) 6月 15日 行政院 大陸工作會報臺78
陸行字 第271號函

1. 目 標

- (1) 전세계의 중국인을 결합하고 일체의 정신과 물질적 역량을 동원하며 대륙의 민주화운동을 전력으로 지원하여 중공의 폭정에 저항한다.
- (2) 「밭은 대만에 붙이고, 시야는 대륙을 향하며, 가슴에는 전중국을 품고」라는 공동의식을 지니고 대만과 중공의 민간교류활동을 계획하고 「대만경험」을 확대시켜 대륙의 민주정치와 자유경제, 사회평등 및 여론의 개방을 촉진하여 중국통일의 기초를 다진다.

2. 方 法

- (1) 중공의 신문봉쇄를 돌파한다.
 - ① 대 중공방송을 계속 강화하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공의 피비린내나는 진압의 진상을 전달하고, 전세계 모든 중국인과 자유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도 전달한다.(국방부, 공보부)
 - ② 대륙을 향해 전단, 신문, 녹음기, 라디오, 식품, 약

품 등을 바람을 이용한 氣球을 통해 날려보내는 것을 계속 강화한다.(국방부)

③ 대만과 중공간의 전화(팩시밀리포함), 전보(텔레그램포함) 등을 중개방식에 의해 간접연락하는 형식으로 개방하고, 양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편물 전달방식도 간소화한다.(교통부)

(2) 대륙과 국외에서 활동하는 대륙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긴급히 구원하고, 민주화운동에 몸바친 동포들을 추도한다.

① 반공활동으로 중공여권을 포기하거나 해외반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중국대륙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학생, 학자 등의 반공 인사들이 관계당국에 우리나라(대만)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때 상황을 참작해서 적극 고려한다.

② 반공활동으로 인해 중공여권을 포기하거나, 해외반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생활이 곤란해진 중공유학생이나 학자들에게 적극 협조한다.(민간단체, 문교부 협조)

③ 적십자회나 기타 민간단체는 각종 기관을 통해 약품, 식품, 경비, 의료인을 제공하여 대륙의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과 민중을 긴급히 구조한다.(적십자회나 기타 민간단체)

- ④ 민간단체로 하여금 세계 각국의 주요신문에 광고를 내게 하여 중공이 인민을 살육하는 진상을 폭로하게 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을 호소하여 대륙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한다.(민간단체, 공보부)
 - 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몸바친 대륙의 동포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추도집회를 열고 당일날 반기(半旗)를 걸어 애도를 표시한다.(민간단체, 내무부)
- (3) 국내외의 힘을 모은다.
- ① 국내외에서 대형 회의를 소집하여 대륙의 민주화운동, 반공정세 및 장기적인 대책 등을 연구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만, 홍콩, 대륙 및 해외 반공민주인사들을 초청하여 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한다.
(민간단체, 정치대학 국제관계센터)
 - ②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륙의 민주화운동인사, 학자,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륙학자와 유학생 등을 초청하여 방문하게 한다.(민간단체)
 - ③ 관계인사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이번 반공 항의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문하도록 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국시(國是)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민간단체)

現段階民間團體의海外大陸學者 學生및民主化人士支援實施條項

○ 民國 78年(1989) 8月 5日 行政院大陸工作會報臺78
陸行字第427號函

1. 본 실시조항은 행정원대륙공작회보(行政院大陸工作會報)가 조사하여 결정한 「대륙민주화운동지원조치」에 따라 정한다.
2. 본 실시조항의 지원대상은 대륙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하다가 생활이 곤란해진 대륙학자와 유학생으로 하고, 기타 해외에서 대륙민주화운동에 종사한 사람들은 상황을 참작해서 처리한다.
3. 지원방법과 금액은 각 민간단체가 접수된 민간인 기부금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한다.
4. 본 실시조항에서 정해진 사항은 각 민간단체가 스스로 방법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돈과 물자를 공급하고 결산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고 심사하여 정기적으로 교육부에 보내서 심사에 대비하도록 한다.
5. 본 실시조항의 실시일자는 따로 정한다.

行政院이民間團體에委託한大陸事務의處理要點

○ 民國 79年(1990) 11月 26日 行政院大陸工作會報臺79
陸行字第1523號函

1. ①행정원(行政院)과 소속기관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간의 민간인 왕래에 대한 사무(이후부터는 대륙사무라고 함)는 본 요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전항(前項)의 위탁을받은 민간단체와 위탁할 사무는 반드시 행정원을 통해서 조사, 결정한다.
2. 본 요점이 칭하는 민간단체는 법에 의해 성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기타 민간단체를 가리킨다.
3. 위탁기관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대륙사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위탁계약을 맺어야하며 위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명기해야 한다.
 - ①위탁사무
 - ②위탁기간
 - ③비용의 수입, 지출과 관리사항
 - ④위탁의 중복여부와 그 효력
 - ⑤제 3 자의 권익과 관계된 주의해야 할 사항
 - ⑥위탁을 받은 민간단체가 준수해야할 사항과 위반했

을 때의 책임

⑦기타 관계사항

4. 위탁기관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대륙사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의 지원에 대한 것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 ①연구 사무는 위탁기관이 순번대로 배열한 예산지원으로부터 그 연구경비를 충당한다.
 - ② 서비스(봉사) 사무는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봉사료를 받는 것으로 지원을 대신한다. 필요시에는 위탁기관에서 보조해 준다.
5. 위탁받은 민간단체는 위탁계약을 확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감독지도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에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잘못이 있어 기한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위탁기관은 계약을 종료(終了)할 수 있다.
6. 위탁기관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위탁받은 민간단체들을 초청해서 협조회의를 거행하고 학자나 전문가를 초청, 의견을 제공받는다.
7.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우수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표창을 한다.

行政院大陸委員會와財團法人海峽交流 基金會가調印한委託契約및附錄

계약서를 제정한 행정원대륙위원회는 대만과 대륙간의 민간인 왕래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대륙에 대한 사무요점을 처리하고,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에 위탁하여 중개사무에 관한 것을 처리하기로 하며 쌍방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맺는다.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委託事項)

행정원대륙위원회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에 위탁하여 처리한 중개사무는 부록과 같다. 쌍방이 합의하여 그 항목을 증감(增減) 시킬 수 있다.

제 2 조(分店設立)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제 3 국이나 대륙지구에 분점을 설립할 때에는 우선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서면동의(書面同意)를 구한다.

제 3 조(自體處理)

①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위탁사무를 자체처리해야 하며 사전에 행정원 대륙위원회측의 서면동의를 통하지 않고

서는 제 3자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제삼자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위탁사무는 비장기적인 것으로 제한한다.

제 4 조(第三者의 行爲에 對한 責任)

①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삼자로 하여금 위탁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경우 재단법인은 제삼자의 선임 및 하는 일의 지시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질 뿐이다.

②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제 3 조의 규칙을 어기고 제삼자로 하여금 위탁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제삼자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利他約定)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행정원대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삼자로 하여금 위탁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원대륙위원회가 직접 제삼자에 이행하도록 부탁하여야 한다.

제 6 조(指示權)

①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행정원대륙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또한 관리를 잘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행정원대륙위원회의 구체

적인 지시에 의해서 위탁사무를 처리할 경우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긴박한 사정이 아니고 또한 행정원대륙위원회가 만일 이런 사정을 안다면 지시를 변경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여도 행정원대륙위원회의 지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 7 조(報告義務)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위탁사무의 진행상황을 계절에 따라 또는 행정원대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보고한다. 위탁관계가 끝날때는 그 경과를 보고 한다.

제 8 조(調査하여 具備할 事項)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 정하거나 수정한 각종 세칙이나 방법 등은 행정원대륙위원회에 보내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원대륙위원회가 타당치 않다고 여기면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에 수정하도록 지시한다.

제 9 조(手數料)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탁기관이외의 제 3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때는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고 행정원대륙위원회에 보내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수정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 10 조(約束違反에 對한 責任)

①위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의 고의나 과실 또는 월권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는 동 재단법인이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만일 이로 인해서 행정원대륙위원회가 제삼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제삼자에게 배상해준 뒤에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측에 보상을 요구한다.

②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그 자체와 사무원들이 위탁사무의 책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행정원대륙위원회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도록 한다.

제11조(賞罰에 關한 建議)

해협교류기금회는 그 회원중에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성적이 우수자에게는 적당한 표창을 하도록 하고 사무처리에 소홀한 사람은 적당한 징벌을 내리도록 행정원 대륙위원회 측에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經費補助)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쌍방이 서로 의논해서 따로 결정한다.

제13조(終止條項)

①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정책변경으로 인해 또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측 사유에 대해 책임을 물어 언제든지 본 계약의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지(終止)할 수 있

다.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정책변경으로 인해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측에 불리하게 종지계약을 하면 그쪽에 필요한 경비를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②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종지계약을 할 때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다음 일을 계속 처리한다.

제14조(契約期間)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중화민국 80년(1991년) 4월 9일부터 81년(1992년) 4월 8일까지의 일년으로 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쌍방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일년이 연장된다. 두번째 기한이 만료되어도 마찬가지다.

행정원 대륙위원회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대북시 충효동로 1단 1호

대북시 돈화북로 201호 10층

대표인 : 施啓揚

대표인 : 辜振甫

중화민국 80년(1991년) 4월 9일

附 錄 1

각 기관이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요청하여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대륙지구문서(신문을 포함)에 대한 검증사항 일람표

위탁사항

1. 대륙지구 주민들의 신분증명서류나 그 위탁서, 위임서의 검증과 대만지구 주민들의 대륙으로의 강제피납여부(또는 자의로 대륙에 다녀왔는지 여부)의 검증 및 그 위탁서, 위임서 또는 사망증명서류의 검증
청구기관 : 內務部, 法務部, 外務部, 國防部
2. 대륙과 대만지구 주민들의 친척관계 검증
청구기관 : 內務部, 法務部, 行政院 國軍退除役官兵補專委員會
3. 대만지구 주민과 대륙지구 주민의 양자관계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內務部
4. 대륙지구 공·사 문서의 검증(외국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할 목적인 것은 반드시 외무부나 외국주재 우리나라 공관을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함) 및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신청한 여권에 서명할때의 서류 검

증

청구기관 : 外務部

5. 민국 38년(1949년) 10월 25일 이후 대만으로부터 대륙에 파견되어 작전이나 특수임무를 집행하다가 포로로 잡혀 대륙에 체류하고 있는 이전 국군신분보유자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國防部

6. 대륙지구의 배우자로서 허락을 받고 대만에 와서 가족을 방문하고 일시 거주하면서 동시에 월급의 반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경우 다시 대륙으로 돌아간 후 그 생사여부의 검증

청구기관 : 國防部

7. 대륙지구의 과세자료에 대한 것과 대륙주민들의 신분에 관한 조사검증

청구기관 : 財務部

8. 대륙지구의 후계자, 유증자(遺贈者) 또는 채권자가 재무부 국유재산국이 관리하는 아무도 재산상속을 신청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신청하고 유증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채권을 신고한 경우 그 상속서류나 유족및 채권 증명서등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財務部

9. 보험 처리 및 상속인이 은행저금을 찾거나 保管箱을 열

때 필요한 증명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財務部

10. 교육, 문화 공문서와 대륙학 경력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教育部, 法務部, 銓敍部(관리를 선임하는 부서)

11. 대만과 대륙간의 간접무역, 간접투자, 기술합작과 회사의 등기를 접수하는 등 대륙에 상관되는 서류의 진위와 그 효력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經濟部

12. 교통부 초상국(招商局) 소속의 기선회사의 선원이 재직중 사망할 경우 법정 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이 대륙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신청인의 신분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交通部

13. 대륙내 몽고·서장지역에 사는 몽고인, 서장인의 족적(族籍)증명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蒙藏委員會(몽고·서장위원회)

14. 공무원·교원의 각종 생활수당, 보조금 및 사망시의 공무원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장례보조금과 복리상조회의 사망, 장례시의 상호협조 문제 등에 있어서 그 수혜자가 정책상 대만, 팽호, 금문, 마조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륙지구에서 사는 전술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각종 수당과 보조에 관

한 원인을 사실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銓敍部, 行政院 人事行政局

15. 퇴직이나 휴직한 사람 또는 사망자에 대해 대륙에 있는 法定 공동유족이나 수혜자가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때 그 신분과 증명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銓敍部, 行政院 人事行政局

16. 공무원·교원이 대륙지구에서 문병차 또는 문상(問喪)하러 간 기간중에 결혼을 하거나 분만, 유산, 질병, 부상 등을 당하였거나 재난사고로 인하여 대륙지구에서 체류하여 휴가를 얻을 경우에 필요한 증명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銓敍部, 行政院 人事行政局

17. 공무원·교원의 법정 후계자 또는 수혜자가 생명보험을 타려고 신청할 때 필요한 증명서류와 공무원이 보험금을 탈 때 필요한 대륙지구에서 만든 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銓敍部

18. 대륙지구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진단증명서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銓敍部, 行政院 勞工委員會

19. 대륙노동자의 유족이 사망보상금이나 노동보험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친족관계와 수혜를 받는 순서 등에 대한 서류의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勞工委員會

20. 노동보험의 피보험인이 대륙에 거주하는 친족의 장례보조금이나 생육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친족관계증명, 사망증명 그리고 출생증명 등의 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勞工委員會

21. 법에 의해서 대륙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대륙지구에 파견되어 연구·작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노동보험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혜택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대륙지구에서 구비된 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勞工委員會

22. 대륙의 방송사업, 출판물, 영화, 텔레비전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新聞局

23. 병사에게 전답을 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대륙지구에 있는 상속자의 신분에 대한 眞僞의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國軍退除役官兵輔專委員會

24. 대만에서 사망한 영민(榮民 : 조국을 위하여 싸웠던 군인출신의 민간인)의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인이 대륙지구에 살아있는 경우 그 신분의 眞僞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國軍退除役官兵輔專委員會

25. 퇴역군인이 가족을 만나러 대륙으로 돌아갔다가 사고로 인해 돌아오지 못할 경우 그 生死에 관한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國軍退除役官兵輔專委員會
26. 대만에 와서 재혼한 군인일 경우 대륙에 있는 본부인과 그 자녀의 신분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國軍退除役官兵輔專委員會
27. 농·어민 단체가 대륙에 가서 활동할 경우 공비(公費)로 지출한 일정 부분에 대한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農業委員會
28. 대륙의 농, 어민 단체나 농업정책과 관계있는 단체가 우리나라의 농, 어민 단체를 초청하여 대륙에서 회의, 시찰, 연습, 참관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서류의 검증
 청구기관 : 行政院 農業委員會

附 錄 2

각 기관이 요청하여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수립한 전면적인 계획에 의해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위탁받아 처리하도록 한 분류와 범죄방지에 관한 사항 일람표

위탁사항

1. 분류에 대한 처리

- (1) 현단계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대륙사람(漁民을 포함)을 돌려보내는 경우 또는 국군이 그들을 축출하면서, 필요한 방위조치를 취했을 경우의 인명피해로 인한 분류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國防部

- (2) 金門, 馬祖를 포함한 대만지구 어민과 대륙지구 어민들이 해상작업을 할 때 일어나는 분류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國防部, 行政院 農業委員會

- (3) 민국 38년(1949년)이후 자유를 찾아 대만에 왔던 반공의사(원래는 공산당 군인)의 대륙에 남아있는 가족이 가족방문, 유산상속, 손해배상을 신청하거나 또는 중혼죄로 반공의사를 고소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國防部

- (4) 대만지구 여행단에 참여, 대륙에 가서 가족방문을 하던 여행객이 대륙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청구기관 : 交通部

- (5) 대만지구 여행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륙에 가서 가족방문을 할 때 제 3국 여행업자의 업무중개를 통한 뒤에 파생되는 민사분규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交通部

- (6) 대륙선원이 외항선을 타고 대만지구의 항구에 입항했을 때 발생하는 분규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交通部

- (7) 대만과 대륙에 관련된 해상인명구조, 해상분규 및 해상안전 사항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交通部

- (8) 대만과 대륙 민간 농산품의 매매분규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行政院 農業委員會

- (9) 어선과 선원의 긴급사고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行政院 農業委員會

- (10) 대만과 대륙의 간접무역, 간접투자, 기술합작 분규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經濟部

- (11) 대만과 대륙의 지적소유권 분류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內務部, 經濟部

- (12) 대만쪽의 신문, 출판,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대륙지구에 진출하여 발생하는 분류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行政院 新聞局

- (13) 대만과 대륙, 내몽고 및 서장사람들간의 권익분류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蒙藏委員會

- (14) 대륙지구에 가서 가족방문을 하거나 정착해서 사는 사람(퇴역 직업군인을 포함)들에게 일어나는 분류에 대한 처리

청구기관 : 法務部, 行政院 國軍退除役官兵輔專委員會

- (15) 사람들이(퇴역 직업군인 포함) 본래 대륙지구에 있는 사유재산을 처리하는 데 협조한다

청구기관 : 法務部, 行政院 國軍退除役官兵輔專委員會

2. 범죄의 방지

- (1) 대륙지구에서 반입이 금지된 물품(무기, 마약, 금지된 약품 포함)을 대만으로 밀수하여 대만의 사회질

서와 국민건강을 위해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협조·
해결

청구기관 : 內務部

- (2) 대륙지구 주민이 불법입국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협조·해결

청구기관 : 內務部

- (3) 대만과 대륙간의 불법밀수문제에 대한 협조·해결

청구기관 : 財務部, 行政院農業委員會

- (4) 대륙지구의 주민이(어민을 포함) 대만쪽의 어선을
약탈하고 뿐만아니라 어민이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문제에 대한 협조·해결

청구기관 : 行政院 農業委員會

본 부록은 행정원 농업위원회(行政院農業委員會)가 민국
80년(1991년) 4월 23일까지 (80)陸法字第0804號函으로 재단
법인 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에 통지하고,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민국 80년(1991년) 4월 25일까지
(80)海文(法)字第0425號函으로 이에 동의함으로써 발효한다.

附 錄 3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각 기관의 요청을 받아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한 송환, 문서송달 및 조사증명에 관한 사항일람표

위탁사항

1. 송환사항

- (1) 대만지구 주민이 대륙으로부터 송환된 때의 연락·협조사항

청구기관 : 內務部

- (2)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으로부터 송환될 때의 연락·협조사항

청구기관 : 內務部, 法務部

2. 문서송달과 조사증명사항

- (1) 대륙지구에 관계되는 문서송달과 증거조사사항

청구기관 : 司法院, 法務部

- (2) 인증사건(認證事件)속에 제기된 대륙지구 사문서(私文書)의 조사증명

청구기관 : 司法院

- (3) 공탁사건에서 수취인이 대륙에 사는 사람일 경우 그 신분서류에 대한 조사 증명

청구기관 : 司法院

- (4) 대륙사람이 대만지구에서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거나 징역을 살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자료의 수집 ; 중병이나 사망(사형집행도 포함)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륙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지에 관계된 건 ; 감옥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자가 남긴 채무에 대한 처리 등의 사항

청구기관 : 法務部

본 부록은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민국 80년(1991년) 6월 20일까지 (80)陸法字第1386號函으로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에 통지하고,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민국 80년(1991년) 6월 26일까지 (80)海文(法)字第0741號函으로 이에 동의 함으로써 발효한다.

VIII. 附 錄

李登輝大統領就任式致辭「中華民族的 新時代創立」중 大陸政策에 관한內容

○ 民國 79年(1990年) 5월

전국에 계신 동포와 귀빈 여러분,

중화민국 40년이래의 각종 건설은 비록 대만, 팽호(澎湖), 금문(金門), 마조(馬祖)지구에 국한되었으나 계획한 바로는 중국의 모든 전역에 착안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대만과 대륙은 양분할 수 없는 중국영토이며, 모든 중국인은 혈맥상통한 같은 동포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인류가 평화를 기구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모든 중국인도 평화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통일의 공동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소련을 포함한 전세계 공산국가들이 모두 일당 전제정치와 공산경제체제의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공은 실제 이러한 조류를 오랫동안 저항할 아무런 이유와 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진심으로 중공이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발걸음을 넓히고 용감하게 정치민주화, 경제자유화와 사회다원화의 목표에 매진할 것을 희망합니다.

본인은 여기서 정중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만일 중공당국이 세계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 중국

인의 보편적인 기대를 인식하여 대만해협에서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하에 대외관계를 전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등한 지위에서 쌍방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학술, 문화,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의 교류를 전면 개방하고 서로간에 상호존중하여 평화공영의 기초를 다질 것이며 객관적 조건이 성숙한 시기에 이르면 대만과 대륙 양쪽 중국인 전체의 의견에 근거해서 국가통일의 문제를 연구 토론할 것입니다.

중국의 통일과 부강은 모든 중국인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이를 위해 대만해협을 가운데 두고 있는 양쪽 주민들이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음은 물론,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내내 애국충정을 바쳐온 전체 교포들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도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교포들의 경제 및 문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동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공당국이 그들의 정치와 경제적 자유·권리를 충분히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화민국 정부는 장차 홍콩과 마카오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기구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홍콩과 마카오지구의 안정과 번영을 수호하고 전체 중국인의 복지를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합니다.

國家統一綱領

- 民國 80年(1991年) 2月 23日 國家統一委員會
第 3次會議通過
- 民國 80年(1991年) 3月 14日 行政院
第2223次會議通過

1. 序 言

국가의 부강과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의 통일은 국내외 모든 중국인의 공통된 소망이다. 대만과 대륙 양측은 이성과 평화, 대등, 호혜(互惠)의 전제하에 적당한 시기에 솔직담백한 교류, 합작, 협상을 통하여 민주, 자유, 부의 균등에 대한 공통된 식견을 세우고 다함께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재건하여야 한다. 이런 인식을 기본으로 하여 특별히 본 강령을 제정하는 바 국내외 모든 중국인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다함께 본 강령을 철저히 실행할 것을 기약하자.

2. 目 標

민주, 자유, 균등한 부의 중국을 건립한다.

3. 原 則

(1) 대만과 대륙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며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중국인의 공통책임이다.

- (2) 중국의 통일은 모든 사람의 복지를 귀착점으로 하며 당파의 싸움에 그쳐서는 안된다.
- (3) 중국의 통일은 중화문화를 발양(發揚)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기본인권을 보장하며 민주법치를 중지(宗旨)로 삼아 실천하는 것이다.
- (4) 중국의 통일은 그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대만지구 주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시키고, 이성과 평화, 대등, 호혜의 원칙하에서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달성한다.

4. 進行過程

(1) 제 1 단계

- ① 교류를 통해 이해를 촉진시키고, 호혜로서 敵意를 해소시키며, 교류중에 상대방의 안전에 위협이 미치지 않게 하고, 호혜중에 상대방의 정치실체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다.
- ② 대만과 대륙의 교류질서를 세우고 교류규칙을 정하고 중개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양쪽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여러가지 제한을 조금씩 완화하고 양쪽 민간인들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쌍방의 사회번영을 촉진시킨다.

- ③ 국가통일의 목표아래서 양쪽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대륙지구는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조금씩 여론을 개방하여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대만지구는 헌정개혁을 가속화시켜 국가건설을 추진하고 균부사회(均富社會)를 건립한다.
- ④ 양측은 적대관계를 버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국제관계에서 상호존중하고 서로 배척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믿고 돕는 단계로 나아간다.

(2) 제 2 단계

- ① 양측은 대등한 지위에서 정부측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 ② 대만과 대륙간에 직접 우편이 통하고, 항공로와 해로가 개통되고 통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하여 공동으로 大陸東南沿海地區를 개발시키고, 나아가서 기타 지구도 점차 개발해 나감으로써 양쪽 주민들의 생활의 격차를 줄인다.
- ③ 대만과 대륙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국제조직과 활동에 참가한다.
- ④ 양측의 고위층 인사들이 상호방문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협상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3) 제 3 단계

양측에 협상통일기구를 성립하여 양쪽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정치, 자유경제, 평등사회 및 근대국가화(近代國家化)의 원칙을 견지하고 통일대업을 함께 의논하고 헌정체제를 연구·결정함으로써 민주, 자유, 균부(均富)의 중국을 건립한다.

臺灣・中國間 交流關係 法規集 (I)

초판 1992年 3月 10日 印刷
재판 1993年 8月 7日 印刷

發行處 統 一 院
交 流 協 力 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720-2145

印刷處 금 강 문 화 인 쇄

통협 93-8-49

《非賣品》

臺灣·中國間 交流關係 法規集(I)

초판 1992年 3月 10日 印刷
재판 1993年 8月 7日 印刷

發行處 統 一 院
交 流 協 力 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720-2145

印刷處 금 강 문 화 인 쇄

통협 93-8-49

《非賣品》

